

2024. 3. 13.(수)
제 35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

1.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11
3.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3
4.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5
5.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191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4년 2월 19일 편삼범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4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735호
- 제 출 자: 편삼범 의원
- 제출일자: 2024년 2월 19일
- 회부일자: 2024년 2월 26일

2. 개정 이유

-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는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기간을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수당 지급기간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안 제6조)

4. 검토 의견

○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충남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선발의 기회를 확대하여 건전하고 능동적인 활기찬 조직문화에 기여하고 있는 바 상위법령인 모범공무원 규정의 수당 지급기간(3년)과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참고 사항

- 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 나. 관련법규: 모범공무원 규정
-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2024.2.14.,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2024.2.14., 감사관)
- 마. 규제심사: 해당되지 않음(2024.2.14., 정책기획과)
-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2024.2.7., 예산정책담당관-475)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2년간” 을 “3년간” 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생 략)</p> <p>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u>2년간</u>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p> <p><u>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u></p>	<p>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3년간</u> ----- -----.</p> <p><u><삭 제></u></p>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대상) ①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교사 및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표창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1.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
2. 이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정부 모범공무원 포함)
3. 징계의결 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제3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본청의 각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고등학교장·특수학교장·각종학교장,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 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하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서 정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선발한다.

제5조(증표의 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 별

지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7조(수당 지급의 중단)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교육감 관할 이외의 기관으로 진출된 때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제8조의2(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 수당 지급기간 확대(현행2년 → 개정안3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44,000천원(연평균 28,8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44,000천원으로 연평균 28,8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2024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부터 적용(27년부터 수당 지급)
 - 선발인원은 동 조례에 따라 매년 20명으로 가정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44,000천원(연평균 28,8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추가 소요액은 24,000천원(연평균 12,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안 제6조	전체비용	24,000	24,000	24,000	36,000	36,000	144,000
		추가비용	0	0	0	12,000	12,000	24,000
	소계(b)	24,000	24,000	24,000	36,000	36,000	144,000	
□ 총 비용(b-a)		24,000	24,000	24,000	36,000	36,000	144,000	

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4년 2월 16일 윤희신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4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733호
- 제 출 자: 윤희신 의원
- 제출일자: 2024년 2월 16일
- 회부일자: 2024년 2월 26일

2. 제정 이유

-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살해하거나 쉽게 유기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의한 동물학대도 나타나고 있음
이에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추진목표와 동물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나. 교육(안 제5조)

- 학교 실정 및 여건에 맞게 동물학대 예방교육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동물학대 예방교육 사업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에서는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동물학대 예방교육 실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시행)에서는 교육감은 ①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② 동물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③ 동물학대 예방활동 등이 포함된 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5조(교육)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 및 교육 여건에 맞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6조(지원)에서는 교육감은 학교에서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생명 존중에 대한 감수성을 함양하고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동물보호법」과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에서도 동물 복지 수준과 동물 보호 및 생명존중에 관한 감수성 향상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시행되고 있어 어려서부터의 동물학대 예방교육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학교에서 교육 목적으로 사육하던 동물을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보호 및 관리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유아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 동물보호법

나.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2024.2.15.,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다.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2024.2.15., 감사관)

라. 규제심사: 해당되지 않음(2024.2.15., 정책기획과)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2024.2.16., 예산정책담당관-578)

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동물학대 예방교육 실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동물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3. 동물학대 예방 활동

4. 그 밖에 교육감이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 및 교육 여건에 맞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교육감은 학교에서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유아교육법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9738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동물보호법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 가. 포유류
 - 나. 조류
 -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피학대동물”이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 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6. “봉사동물”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8.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9.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기질평가”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11.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반려동물의 행동분석·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12.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13.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시행)
 -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충남 인성교육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음

- 안 제5조(지원) 및 제6조(교육 실시)
 -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실정과 교육 여건에 맞는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안 제4조는 충청남도교육청 소관부서에서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제외
- 안 제5조 및 제6조는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관한 교육 대상 범위 및 교육 시행 횟수, 교육 방법(식), 교재개발 여부, 전문강사 운영 여부와 그에 따른 운영 방안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예산분석팀장

주 무 관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박재용

이광복

☎ 041-635-5207(budget20@korea.kr)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4년 2월 19일 박미옥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4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736호
- 제 출 자: 박미옥 의원
- 제출일자: 2024년 2월 19일
- 회부일자: 2024년 2월 26일

2. 제정 이유

- 학생들이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 가치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문화유산교육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계획(안 제4조)

-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나. 지원(안 제6조)

- 각급 학교 실정에 맞게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위탁(안 제7조)

-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협의회 설치(안 제8조)

-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문화유산교육 지원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책무)**에서는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활성화 하고, 학생들에게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각급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추진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4조(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계획)**에서는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①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③ 교직원 역량 강화 및 학생 디지털문화유산교육 참여 확대 ④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⑤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⑥ 관련기관 협력 체계 구축방안 등이 포함된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역사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5조(교육)**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는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학습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6조(지원)**에서는 교육감은 각급 학교 실정에 맞게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7조(위탁)**에서는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8조(협의회 설치)에서는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전문가, 디지털문화유산 전문가, 관련학회 또는 지역유관단체인사 등으로 디지털문화유산교육 지원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9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디지털기술 활용으로 생생하게 재현하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미래교육의 일환으로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통해 우리 역사의 유물, 유적, 문화재 등에 대한 자긍심 향상과 나아가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향후 관련 계획과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또한, 학교의 실정에 맞는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추진 시 디지털 기반에 따른 시설과 장비, 예산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계획과 시행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문화재보호법

○ 초·중등교육법

나.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2024.2.8.,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다.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2024.2.8., 감사관)

라. 규제심사: 해당되지 않음(2024.2.8., 정책기획과)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2024.2.16., 예산정책담당관-582)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 가치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문화유산교육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과거의 유물, 유적, 문화재를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생생하게 재현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생”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에게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각급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계획) ①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지털

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3. 교직원 역량 강화 및 학생 디지털문화유산교육 참여 확대
4.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5.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7. 그 밖에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활성화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단,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역사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는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학습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교육감은 각급 학교 실정에 맞게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위탁)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설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

여 교육 전문가, 디지털문화유산 전문가, 관련학회 또는 지역유관단체인사 등으로 디지털문화유산교육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 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 ② 이 법에서 “문화재교육”이란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객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하며, 문화재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9738호, 2023. 9. 27., 시행]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4조(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계획)
 - 충청남도교육청 소관부서에서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제외
- 안 제5조(교육) 및 제6조(지원)
 - 디지털문화유산교육에 관한 교육대상 범위, 교육방법(식), 교육 인프라 구축 방향, 콘텐츠 및 교재 개발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인 추계 곤란
- 안 제8조(협의회 설치)
 -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협의회 구성에 따른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32,000천원(연평균 6,4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32,000천원으로 연평균 6,4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안 제8조는 민주시민교육활성화 자문위원회 협의회를 준용하여 추계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32,000천원(연평균 6,4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안 제8조	6,400	6,400	6,400	6,400	6,400	32,000
	소계(b)	6,400	6,400	6,400	6,400	6,400	32,000
□ 총 비용(b-a)		6,400	6,400	6,400	6,400	6,400	32,000

○ 세부 산출 내역

구분	금액	산출기초	비고
안 제8조	6,400천원	자문위원 10명, 2회 이상	

※ 민주시민교육활성화 자문위원회 협의회 준용하되, '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사업설명서를 참조함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이광복

☎ 041-635-5207(budget20@korea.kr)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4년 2월 22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769호
- 제 출 자: 충청남도교육감
- 제출일자: 2024년 2월 22일
- 회부일자: 2024년 2월 26일

2. 제안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변경

(단위: m², 백만 원)

순	안 건 명	재 산 현 황				비 고	
		구 분	면 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1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기숙사 및 급식실 증축 변경 안	건물	변경 전	1,496.0	3,690	3,690	기준가격 : 155.2% 증
			변경 후	2,715.6	9,417	9,417	

○ 취득

(단위: m², 백만 원)

순	안 건 명	재 산 현 황				비 고
		종류	면 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1	가칭 탕정 8 초 등 학 교 안 신 설	토 지	14,279.0	1,774	18,325	
		건 물	20,032.0	46,840	46,840	
2	가칭 탕정 4 중 학 교 안 신 설	토 지	14,000.0	2,687	19,404	
		건 물	13,886.0	32,909	32,909	
3	가칭 한 여 을 학 교 안 신 설	토 지	16,000.0	14,742	23,768	
		건 물	17,518.0	41,251	41,251	
4	충청남도 교육청 특수 교육 원 안 설 립	건 물	8,630.0	38,212	38,212	
5	천안가람 초 등 학 교 안 교사 동 증 축	건 물	1,938.1	6,861	6,861	

순	안 건 명	재 산 현 황				비 고
		종류	면 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6	천안용곡중학교 교사동 증축	토지	1,382.0	323	719	
		건물	1,911.8	5,872	5,872	
7	서산중앙고등학교 보통교실 증축	건물	945.0	2,337	2,337	
8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삼봉초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	건물	978.3	4,153	4,153	
9	천안지역 교직원공동숙소 매입	건물	4,562.4	6,244	10,500	
10	아산지역 교직원공동숙소 매입	건물	2,179.8	5,440	5,440	
취 득 계		토지	45,661.0	19,526	62,216	
		건물	72,581.4	190,119	194,375	
		계	118,242.4	209,645	256,591	

○ 처분

(단위: m², 백만 원)

순	안 건 명	재 산 현 황				비 고
		종 류	면적/수량	기준가격	추정금액	
1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설립	건물	3,360.0	824.2	3,114.6	
		공작물	23종	251.8	251.8	
		입목죽	4종	3.1	3.1	
2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삼봉초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안	건물	916.4	112.1	371.6	
3	신창중학교 이전 처분	토지	35,995.0	2,857.0	6,717.0	
		건물	5,174.9	2,701.0	6,173.0	
4	화양초등학교 울타리 밖 매각	토지	13,830.0	211.9	419.8	
처분계		토지	49,825.0	3,068.9	7,136.8	
		건물	9,451.3	3,637.3	9,659.2	
		공작물	23종	251.8	251.8	
		입목죽	4종	3.1	3.1	
		계	59,276.3	6,961.1	17,050.9	

※ 기준가격 및 추정금액

종류	구분	기준가격	추정금액(소요액)
토지	취득, 처분	◦ 개별공시지가	◦ 가감정, 감정가격, 보상가격 등
건물	매입, 매각	◦ 주택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 가감정, 감정가격, 보상가격 등
	신축, 증축 등	◦ 건축비 등 사업비	◦ 건축비 등 사업비

4. 검토 의견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근거

○ 근거

- ▶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¹⁾과 처분²⁾에 관한 계획 수립

○ 심사 대상

- ▶ (취득·처분)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 1건당 기준가격 취득 20억 원, 처분 10억 원 이상인 재산
 - 토지의 경우 1건당 취득 6,000㎡, 처분 5,000㎡ 이상인 재산
- ▶ (변경) 의회 의결을 받은 후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업목적 또는 용도 변경
 - 취득·처분 공유재산의 위치 변경
 - 토지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 초과 증감된 경우

1) 취득 :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

2) 처분: 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

1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기숙사 및 급식실 증축 변경안

- 사업기간: 2021. 9. ~ 2026. 2. (4년 6개월)
- 위 차: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351번길 21
- 규 모: 건물 2,715.62㎡ (지상 4층)
- 학교현황: 학급수 12학급(특수 1학급 포함), 학생수 181명(특수 4명 포함)
- 사 업 비: 총 9,417백만 원(건축비 9,417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68.2%, 국고보조금 23.8%, 지자체지원금 8%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계	9,417	129	240	9,048	
보통교부금	6,419	129	0	6,290	
국고보조금	2,240	0	240	2,000	
지자체지원금	758	0	0	758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4.03.04. 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증축	177	4	11	1	2026.02.	0	2,715.62	0	9,417	9,417

※ 총사업비 9,739백만 원(증축비 9,417백만 원, 비품구입비 322백만 원)

※ 당초면적: 1,496㎡, 증가면적: 1,219.62㎡, 변경면적: 2,715.62㎡

○ 필요성

- ▶ 현재 급식실은 '97년 구축된 노후 급식시설로 급식종사자의 안전 사고 우려 및 대량의 식재료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조리·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 현대화 필요
- ▶ 기존 기숙사생 정원(92명)에서 마이스터고 전환에 따른 학생 전원 (14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며, 우수학생 유치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이 요구됨

○ 추진경과

- ▶ 2021.06.28. 기숙사 확충 사업 계획 제출(예산전자공업고-8535)
- ▶ 2021.09.30. 예산전자공업고 기숙사 증축 관련 예산군 대응투자사업 예산편성 확정 알림(예산군 교육체육과-18862)
- ▶ 2021.10.18.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 2021.12.16. 2022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가결)
- ▶ 2022.04.26. 2022년도 대응투자 사업계획서 수정 제출(예산전자공업고-5406)
- ▶ 2023.07.04. 제18차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동의 신청에 대한 교육부 의견 통보(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2726)
- ▶ 2023.08.08. 마이스터고 지정에 따른 기숙사 증축[변경안] 9차 설계 협의회 실시
- ▶ 2023.08.18. 마이스터고 지정에 따른 기숙사 증축[변경안] 10차 설계 협의회 실시
- ▶ 2023.08.18. 2023학년도 기숙사 증축 사업계획서 수정(예산전자공업고-11494)
- ▶ 2023.11.14. 2023년도 정기4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조건부승인)
 - 보고 후 추진: 종합계획배치도 수립, 남녀공간 분리, 모듈러 공법 제시
- ▶ 2024.02.07. 2024년도 정기1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 보고(적정)
 - 보고결과: (적정) 모듈러 건축 반영 검토 결과, 급식실 환경개선 설계 기준 부적합 및 사용자 안전성 및 편의성 미검증, 철근콘크리트 공사 대비 공사비 높음
- ▶ 2024.02.14.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검토의견

- ▶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는 2023년도 9월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로 선정되어 2025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음
마이스터고 전환으로 기존 기숙사생 정원이 92명에서 144명으로 증가하여, 학생 전원이 동시 급식(조·석식)이 가능하도록 급식실 증축 변경(당초 536㎡ → 변경 671.47㎡)이 필요하고 기숙사도 학생 전원 수용을 위해 25실(3인 1실), 추가 여유실 5실 등 총 30실을 확보하기 위해 증축 변경(당초 3층, 960㎡ → 변경 4층, 2,044.15㎡)하는 것으로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의 기숙사 및 급식실 증축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 다만, 급식실 이전 증축으로 기존 급식실 건물에 대한 활용 계획과 기존 기숙사(구축)와 신규 기숙사(신축) 사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다수의 인원이 신축 기숙사 사용 희망 예상)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② 가칭 탕정8초등학교 신설안

- 사업기간: 2023. 10. ~ 2027. 2.(3년 5개월)
- 위 차: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산61-1 일원
- 규 모: 토지 14,279㎡, 건물 20,032㎡(지하주차장 조성)
- 학교현황: 학급수 50학급(특수 3학급 포함), 학생수 1,232명(특수 18명 포함)
※ 개교 예정일: 2027년 3월 1일
- 사 업 비: 총 65,165백만 원(토지매입비 18,325백만 원, 건축비 46,840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86%, 지자체지원금 14%

(단위: 백만 원)

구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비고
계	65,165.0	8,340.0	47,199.0	9,626.0	
보통교부금	56,002.5	8,340.0	38,036.5	9,626.0	
지자체지원금	9,162.5	0	9,162.5	0	토지매입비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m², 백만 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모		소요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계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신축	1,214	18	47	3	2027.02.	14,279	20,032	18,325	46,840	65,165

※ 총사업비 66,451백만 원(부지비 18,325백만 원, 건축비 46,840백만 원, 개교경비 1,286백만 원)

※ 토지매입(9필지 14,279m²):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 예정

○ 필요성

- ▶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869번지 일원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총 4,670세대(A1~A4블럭 공동주택, 단독주택 262세대 포함)의 주택건설 사업이 계획되었으며, 이중 A2~A4블럭 공동주택 3,517세대와 단독주택 67세대 등 총 3,584세대 입주로 인한 유입학생은 신설학교로 배치해야 하며, 사업지 내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가칭) 탕정8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경과

- ▶ 2021.10.14. 교육환경평가 승인 [학교지원과-7372(2021.10.15.)]
- ▶ 2023.02.2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탕정포스코 A2블럭]

- ▶ 2023.03.2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탕정포스코 A3, A4블럭]
- ▶ 2023.11.10. 2023년도 정기4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적정)
- ▶ 2023.11.14. 2023년도 제5회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 2024.01.25. 2024년도 정기1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적정)

○ 검토의견

- ▶ 가칭 탕정8초등학교(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산61-1 일원)는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이순신대로 남쪽으로 총 3,584세대(공동주택 3,517세대, 단독주택 67세대)의 주택 건설사업이 추진되는 구역 내에 있으며, 완공 시 2026년 12월 입주로 대략 1천여 명 내외의 유입학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 인근 1.5km 이내 아산갈산초 외 2개 초등학교가 있으나 이마저도 유입학생을 배치할 시설이 부족하고, 왕복 6차로인 대로를 횡단해야 하는 상황으로 분산배치가 불가능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가칭 탕정8초등학교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③ 가칭 탕정4중학교 신설안

- 사업기간: 2024. 1. ~ 2027. 2. (3년 2개월)
- 위 치: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863 일원
- 규 모: 토지 14,000㎡, 건물 13,886㎡(지하주차장 조성)
- 학교현황: 학급수 31학급(특수 2학급 포함), 학생수 789명(특수 12명 포함)
※ 개교 예정일: 2027년 3월 1일

○ 사업비: 총 52,313백만 원(토지매입비 19,404백만 원, 건축비 32,909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81%, 지자체지원금 19%

(단위: 백만 원)

구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비고
계	52,313	6,582	39,149	6,582	
보통교부금	42,611	6,582	29,447	6,582	
지자체지원금	9,702	0	9,702	0	토지매입비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m², 백만 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모		소요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계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신축	777	12	29	2	2027.02.	14,000	13,886	19,404	32,909	52,313

※ 총사업비 53,386백만 원(부지비 19,404백만 원, 건축비 32,909백만 원, 개교경비 1,073백만 원)

※ 토지매입(13필지 14,000m²):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 예정

○ 필요성

- ▶ 탕정면 갈산리, 매곡리, 호산리 일원 탕정학구 내에는 2023년 입주한 탕정일반산업단지 공동주택 3,027세대 외에, 2028년까지 13,579세대가 추가 입주 예정이며, 2030년 이후에는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약 22,151호 세대 개발계획이 있음

※ 탕정일반산업단지(2023년/3,027세대),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2026년~2027/3,040세대)
 탕정도시개발사업(2026년~2028년/4,670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2027년/1,712세대)
 아산신도시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2028년/4,157세대)

- ▶ 2026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입주가 예정된 탕정도시개발사업 4,670세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1,712세대가 유입될 경우,

탕정학군 완성학급 기준 보유교실* 대비 2027년 24실, 2028년 31실, 2029년 37실 부족에 따른 학생배치가 불가하여 (가칭) 탕정 4중학교 신설이 필요함

* 완성학급 기준 보유교실 현황: 총72실 (탕정중학교 36실, 아산갈산중학교 36실)

○ 추진경과

- ▶ 2021.10.15. 충청남도교육청교육환경평가 승인(학교지원과-7372)
- ▶ 2022.09.2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공공지원민간임대 S-1BL]
- ▶ 2023.02.2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포스코 2BL]
- ▶ 2023.03.2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포스코 3BL, 포스코 4BL]
- ▶ 2024.01.29. 2024년 제1회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 2024.02.07. 2024년도 정기1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적정)

○ 검토의견

- ▶ 가칭 탕정4중학교(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863 일원)는 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구역에 있으며, 탕정면 갈산리, 매곡리, 호산리 일원 탕정학구 내에 2023년 입주한 3,027세대 외에 2028년까지 13,579세대가 추가 입주 예정으로 많은 인구 유입에 따라, 학생수도 대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인근에 2025년 3월 개교 예정인 아산갈산중학교가 신설 추진 중이나 탕정학군(탕정중, 아산갈산중) 완성학급* 기준으로 보유 교실 대비 약 25%가 부족한 상황이며, 이후에도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생 분산배치가 불가하여 학생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가칭 탕정4중학교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2027년 완성학급 기준 보유교실 현황: 총 72실(탕정중 36실, 아산갈산중 36실)

4 가칭 한여울학교 신설안

- 사업기간: 2024. 1. ~ 2027. 2.(3년 2개월)
- 위 치: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647 일원
- 규 모: 토지 16,000㎡, 건물 17,518㎡(지하1층, 지상4층)
- 학교현황: 학급수 29학급(유 1, 초 12, 중 6, 고 6, 전공학급 4), 학생수 166명
 ※ 학교설립 예정일: 2027. 3. 1.
- 사 업 비: 총 65,019백만 원(토지매입비 23,768백만 원, 건축비 41,251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10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 고
계	65,019	1,542	32,063	24,886	6,528	
보통교부금	65,019	1,542	32,063	24,886	6,528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7.03.01. 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 급 수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유	초	중	고	전 계							
신축	166	1	12	6	6	4	29	2027.02.	16,000	17,518	23,768	41,251	65,019

※ 총사업비 66,786백만 원(부지비 23,768백만 원, 건축비 41,251백만 원, 개교경비 1,767백만 원)

※ 토지매입(3필지, 16,000㎡): 조성원가로 매입 예정

○ 필요성

- ▶ 최근 5년간 충남지역 전체 학생수는 3.8% 감소하고 있으나 특수교육대상 학생수는 21.6%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천안·아산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수는 천안시 23.9%, 아산시 25.5%가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용을 위한 특수학교 신설이 필요함

○ 추진경과

- ▶ 2023.07.17.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LH 미매각토지 용도변경 및 매각요청→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일원(학교지원과-5541)
- ▶ 2023.08.31.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 매각 협의→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일원 조성원가 매입 제안(LH)
- ▶ 2023.10.12. 특수학교 설립부지 협의→향후 진행절차, 토지매입비, 추가 구입 가능 여부, 학교진입로 개설 등 협의
- ▶ 2023.10.20. 특수학교 설립 관련 유관기관 협의→특수학교 설립 관련 인허가, 토지매입비 등 협의(아산시청, LH)
- ▶ 2023.10.25. 특수학교 설립 관련 협조 요청→LH 미매각토지(휴대리 일원) 매각 가능 여부 회신 요청(학교지원과-8792)
- ▶ 2023.10.31. 특수학교 설립 관련 회신→인허가변경 선행을 전제로 매각 가능, 준공일로부터 2년 경과 이후부터 민법상 이자 가산(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충남판매부-5430)
- ▶ 2024.01.11. 학교 신설 용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 실시(승인) (충청남도교육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5)
- ▶ 2024.01.15. (가칭) 한여울학교 학교설립 계획 수립(학교지원과-380)

- ▶ 2024.02.07. 2024년도 정기1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적정)
- ▶ 2024.02.14.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 2024.04. 2024년도 정기2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예정)

○ 검토의견

- ▶ 지난 5년간 충남지역 학생수는 3.8% 감소했지만 특수교육대상 학생수는 21.6%가 증가하였고, 특히 천안·아산지역으로 많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유입되어 특수학교 과대 운영 및 특수학급 과밀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이 필요함
- ▶ 매년 증가하는 천안·아산지역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초·중·고 특수학급에 신설 및 증설하여 배치하거나 기존 특수학교에 특별교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하여 배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해소했으나, 특수학교 배치 가능 한계를 초과하고 특수학급의 과밀 운영, 원거리 학교 배치로 인한 장시간 통학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대상 학생들의 학부모 역시 이러한 어려움으로 특수학교 신설에 대한 요구가 있어 가칭 한여울 학교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 다만, 가칭 한여울학교 설립 부지의 매입에 있어 소재지가 천안·아산 2개 지역에 걸쳐 있어 행정구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가칭 한여울학교 설립 위치

주 소 지	비고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647, 645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2182	

5 충청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안

- 사업기간: 2021. 12. ~ 2027. 2.(5년 3개월)
- 위 치: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매죽헌길 5(홍북초등학교 부지)
- 규 모: 건물 8,630㎡(지하 1층, 지상 3층)
- 현 황: 2개 부서(교육운영부, 행정지원부), 인원 29명
 ※ 개원 예정일 : 2027년 3월
- 사 업 비: 총 38,212백만 원(건축비 38,212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10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38,212	6,000	31,762	450	
보통교부금	38,212	6,000	31,762	45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완성기준(인력)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원장	교육 운영부	행 정 지원부	계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신축	1	21	7	29	2027.02.	25,243	8,630	0	38,212	38,212

※ 총사업비 38,662백만 원(건축비 38,212백만 원, 기자재 구입비 450백만 원)

○ 필요성

- ▶ 충청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만의 차별화된 특수교육 사업을 수행하여 한국 특수교육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선도적 특수교육 기관 운영
- ▶ 개별 성장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으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개인 역량 향상은 물론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복합 체험영역 운영으로 사회적 통합 실현

○ 추진경과

- ▶ 2021.12.31. 충청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 ▶ 2022.01.27. 2022년도 정기 1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조건부)
(부대의견) 홍북초 부지에 충청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활용 결정
- ▶ 2022.06.~08. 충청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홍북초등학교 정밀 안전진단 실시(정밀 진단결과 C등급)
(진단결과) 충청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계획에 따라 용도변경 및 증축 시 D등급으로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 보강 필요
- ▶ 2022.10.14. 정밀안전진단 평가 실시
- ▶ 2022.12.12. 충청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 추진단 구성 및 활동
- ▶ 2023.02.20. 충청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전담팀 협의회
- ▶ 2023.03.03. 2023년 제1차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 위원회(원안가결)
 - 홍북초등학교 교사, 다목적 강당 철거 및 개축 결정
- ▶ 2023.03.~04. 충청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 교육수요자 요구조사
- ▶ 2023.04.25. 충청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 세부 운영 계획(안) 수립
- ▶ 2023.08.10. 충청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
- ▶ 2023.10.25. 충청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 기본계획 수정(안) 수립
- ▶ 2023.11.10. 2023년도 정기4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적정)
- ▶ 2024.01.25. 2024년도 정기1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적정)
- ▶ 2024.02.14.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검토의견

- ▶ 충남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당면한 특수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특수교육대상 중심의 정책을 개발하며

맞춤형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충남 특수교육의 종합지원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시행하는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⑥ 천안가람초등학교 교사동 증축안

- 사업기간: 2024. 2. ~ 2026. 2.(2년 1개월)
- 위 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828
- 규 모: 건물 1,938.15㎡
- 학교현황: 학급수 53학급(특수 2학급 포함), 학생수 1,262명(특수 11명 포함)
- 사 업 비: 총 6,861백만 원(건축비 6,861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1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 고
계	6,861	230	6,631	0	0	
보통교부금	6,861	230	6,631	0	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4.01.05. 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증축	1,251	11	51	2	2026.02.	0	1,938.15	0	6,861	6,861

○ 필요성

- ▶ 충청남도교육청의 학급당 기준 인원이 31명에서 28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천안가람초등학교 설립 당시 43학급(1,300명) 보다 17학급이 증가한 60학급(1,513명)으로 예상되어 교사동

증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학교용지의 추가 확보가 어려워 유치원 앞 주차장 및 회차지를 활용하여 교사동을 증축하고자 함

○ 추진경과

- ▶ 2023.07.~12. 사전기획용역 추진
- ▶ 2024.02.06.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 2024.02.07. 2024년도 정기1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적정)

○ 검토의견

- ▶ 천안가람초등학교는 2026년 최대 43학급의 규모로 예상하여 2023년 3월 1일 개교하였으나, 충청남도교육청의 학급당 기준 인원이 31명에서 28명으로 축소하였으며 천안가람초 인근은 공동주택이 밀집하고 있어 학생수 또한 설립 당시 1,300명으로 추정하였으나 1,513명으로 증가하여 60학급이 예상되는 바, 과밀 해소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사동을 증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 다만, 학교용지의 추가 확보가 어려워, 교내 유치원 앞 주차장 및 회차지를 활용하여 필로티 구조로 교사동을 증축하는 것이 문제가 없더라도, 필로티 구조물 사이로 차량이 이동하는 등 회차로 조성에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점과 유치원 남쪽 방향으로 교사동이 증축되어 학습환경 침해 소지(일조량 부족, 공사중 안전사고 등)가 예상되는 점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7 천안용곡중학교 교사동 증축안

- 사업기간: 2024. 2. ~ 2026. 2.(2년 1개월)
- 위 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476-9
- 규 모: 토지 1,382㎡, 건물 1,911.86㎡
- 학교현황: 학급수 38학급(특수 2학급 포함), 학생수 1,121명(특수 10명 포함)
- 사 업 비: 6,591백만 원(토지매입비 719백만 원, 건축비 5,872백만 원)

◇ 사업비 분담: 기부채납(사업시행자 부담)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 고
계	6,591	0	6,591	0	0	
기부채납	6,591	0	6,591	0	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4.01.05. 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증축	1,111	10	36	2	2026.02	1,382	1,911.86	719	5,872	6,591

※ 총사업비 8,642백만 원(부지비 719백만 원, 증축 5,872백만 원, 리모델링 등 2,051백만 원)

○ 필요성

- ▶ 2026~2028년 천안2학군 서남부구역 내에 신규 공동주택 3,235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431명의 학생 유입이 예상되며 인근 3개 중학교의 교육시설 부족으로 신규 유입이 예상되는 학생들의 배치가 불가하므로 천안용곡중학교에 교육시설 확충이 필요함

○ 추진경과

- ▶ 2017.02.07. 민간공원 조성 제안 특례사업 관련 업무협약(행정과-1786)
- ▶ 2017.12.01. 천안 도시관리계획(일봉공원 조성)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업무협약(행정과-18243, 용곡중 학교용지 확보, 증축계획 필요)
- ▶ 2018.08.16. 천안 도시관리계획(일봉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업무협약(행정과-12657, 용곡중 12실 외 부대시설 확충 필요)
- ▶ 2019.02.15. 일봉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관련 확보계획(안) 업무협약(행정과-2687)
- ▶ 2021.10.13. 용곡동 474-4번지 일원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업무 협약(일봉근린공원 비공원시설 1BL, 2BL)
- ▶ 2021.11.19. 천안용곡중학교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기부채납 협약 체결 [일봉근린공원](행정과-22052)
- ▶ 2022.02.04.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봉근린공원](행정과-1965)
- ▶ 2024.02.06.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 2024.02.07. 2024년도 정기1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적정)

○ 검토의견

- ▶ 2026~2028년 천안2학군 서남부구역 내에 공동주택 3,235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431명의 학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천안용곡중학교와 인근 2개 중학교의 교육시설 부족으로 학생 배치가 불가함에 따라, 천안용곡중학교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학생 증가에 따른 보통교실 12실과 급식실 증축 등을 통해 유입되는 학생들을 배치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교사동 증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8 서산중앙고등학교 보통교실 증축안

- 사업기간: 2023. 1. ~ 2024. 10.(1년 10월)
- 위 치: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173-2 외 2필지
- 규 모: 건물 945㎡(지상 2층)
- 학교현황: 학급수 34학급(특수 6학급 포함), 학생수 774명(특수 45명 포함)
- 사업비: 총 2,337백만 원(건축비 2,337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1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계	2,337	181	2,156	0	
보통교부금	2,337	181	2,156	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4.03.05. 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증축	729	45	28	6	2024.10.	0	945	0	2,337	2,337

※ 총사업비 2,422백만 원(증축비 2,337백만 원, 비품구입비 85백만 원)

※ 당초 사업비 1,968백만 원, 변경 사업비 2,337백만 원, 증가 369백만 원

○ 필요성

- ▶ 2023학년도부터 서산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수 증가*에 따라 보통교실 증축을 통해 증가하는 학생 배치 여건 조성

* 2023학년도 신입생 대비 2024년 113명, 2025년 69명, 2026년 149명, 2027년 188명, 2028년 290명 증가

- ▶ 서산지역의 안정적인 학생 배치, 적정 학급당 학생 수 유지를 위한 학급증설과 보통교실 확보가 시급함

○ 추진경과

- ▶ 2022.06.15. 보통교실 확보를 위한 서산중앙고 방문 협의
- ▶ 2022.07.08. 2023학년도 이후 학급증설에 따른 보통교실 확보 및 교실증축 계획 제출 안내(학교지원과-4899)
- ▶ 2022.07.13. 2023학년도 이후 학급증설에 따른 교실증축 계획 제출 (서산중앙고-11832)
- ▶ 2022.07.14. 2023학년도 서산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정원 의견수렴회 개최(학교지원과-4887, 2022. 7. 7., 고등학교 교감 대상)
- ▶ 2022.08.18.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보통교실 6실 증축)
- ▶ 2022.12.18. 2023년 본예산 확정(금1,027,699천 원)
- ▶ 2023.05.24. 공공건축심의 운영 결과 적정(행정과-15325)
- ▶ 2023.06.19. 설계용역 착수(용역기간: 120일)
- ▶ 2023.10.16. 설계용역 완수(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검토)
- ▶ 2023.12.11. 계약심사요청(행정과-36972)
- ▶ 2024.01.11. 서산중앙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입찰공고
- ▶ 2024.01.30. 교실 증축공사 적격심사결과 보고 및 계약결의
- 안전성평가 진행중이며, 평가 종료 후 착공 예정
- ▶ 2024.02.14.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검토의견

- ▶ 서산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수 증가에 따라 서산중앙고등학교 교사동 본관 옆 주차장 부지에 보통교실 6실을 포함한 지상 2층의 교사동을 증축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보통교실 증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 다만, 사업기한이 2024년 10월까지로 촉박한데 공사기간에 문제는 없는지, 또한 공사로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주차장 공간을 활용하여 교사동을 증축하는데 주차면적에는 지장이 없는지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9]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삼봉초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안

- 사업기간: 2023. 3 ~ 2026. 2.(3년)
- 위 치: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1722-1
- 규 모: 건물 978.32㎡[개축 916.43㎡(1동, 6동, 7동), 증축 61.89㎡]
- 학교현황: 학급수 7학급(특수 1학급 포함), 학생수 71명 (특수 5명 포함)
- 사 업 비: 총 4,153백만 원(건축비 4,153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70.0%, 국고보조금 3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4,153	160	3,197	796	
보통교부금	2,906	112	2,237	557	
국고보조금	1,247	48	960	239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4.03.05. 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증개축	66	5	6	1	2026.02.	0	978.32	0	4,153	4,153

※ 총사업비 7,713백만 원(증개축비 4,153백만 원, 리모델링비 3,560백만 원)

○ 필요성

- ▶ 삼봉초등학교 주1동 본관동은 54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로 교육부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선정되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기획하고 미래교육과정에 대응하는 공간 구축이 요구되어 개축 및 리모델링을 통하여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진입 동선 및 수직 동선을 개선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형 학교시설을 구축하고자 함

○ 추진경과

- ▶ 2022.09.29.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대상학교 선정 결과 알림
(교육부 미래교육추진담당관-3006)
- ▶ 2023.03.27.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전기획 용역 착수
- ▶ 2023.06.30. 삼봉초등학교 주1동 본관동 정밀안전진단 용역 완료
- ▶ 2023.09.26. 2023년도 제6회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 2023.10.27. 2023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 구조안전위원회
(원안가결)(안전총괄과-9888)
- ▶ 2023.12.19. 2023년도 제4회 충청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원안가결)
(시설과-7817)
- ▶ 2024.02.07. 2024년도 정기1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적정)

○ 검토의견

- ▶ 삼봉초등학교는 54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로 교육부 그린 스마트미래학교로 선정되었음.
- ▶ 본관동 중앙 좌측 8실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내진보강이 불가능한 안전등급 D등급으로 확정되어, 진입동선과 건물 활용도를 위해 화장실동 및 엘리베이터실과 함께 처분(철거)하고, 건물 배치와 활용도를 고려하여 개축할 예정임
- ▶ 본관동 중앙 우측과 2동 교사는 리모델링과 재구조화를 통해 편의성과 공간 효율성을 고려한 공간 조성을 할 계획으로 삼봉초등학교의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 다만, 공사기간 중 학생 배치와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10 천안지역 교직원 공동숙소 매입안

○ 사업기간: 2024. 1. ~ 2026. 12. (3년)

○ 위 치

- ▶ 2024년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479-2
- ▶ 2025년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61-5
- ▶ 2026년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1054

○ 규 모: 건물 4,562.4㎡(90세대, 1세대 계약면적 44.44㎡ ~ 57.08㎡,
전용면적 20.96㎡ ~ 26.81㎡)

○ 사 업 비: 총 10,500백만 원(건물매입비 10,500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100.0%

(단위: 백만 원)

구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고
계	10,500	3,900	3,900	2,700	0	
보통교부금	10,500	3,900	3,900	2,700	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m², 백만 원)

구분	세대수	완료 시기	입주 시기	규모		소요액		
				부지	건축연면적	부지비	매입비	합계
매입	90세대	2026.12.	2024. 7. ~ 2026. 12.	0	4,562.4	0	10,500	10,500

※ 건물 기준가격: 6,244백만 원(시가표준액)

○ 필요성

- ▶ 2023년 천안지역 공무원 거주실태 조사 결과(2023. 5. 1. 기준), 타지역 거주자 1,186명 중 269명(22.7%)이 공동숙소 입주를 희망(전체 공무원 5,161명 중 269명(5.2%)이 입주 희망)하고, 저경력자 및 장거리 출퇴근 교직원, 순환보직이 불가피한 소수 직렬 등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근무환경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공동숙소 마련이 필요함

○ 추진경과

- ▶ 2021.03.01. 교직원 근무환경 및 공동숙소 수요 조사(재무과-3493)
- ▶ 2021.05.12. 2021~2023년 교직원 숙소 중기 개선 계획 안내(재무과-9189)
- ▶ 2022.08.10.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 ▶ 2022.08.27. 교직원 주거시설(숙소) 확보방향 안내(재무과-15528)
- ▶ 2022.09.07. 생활 안정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교직원 주거시설(숙소) 확충 계획 수립(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23997)
- ▶ 2022.10.13. 교직원 주거시설(숙소) 중기 확충 계획 안내(재무과-19202)
- ▶ 2022.12.21. 2022년도 제7회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 2023.04.0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가결(목록삭제)(재무과-7746)
- ▶ 2023.05.01. 천안 관내 각급학교(기관) 공무원 거주실태 조사 (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13319)
- ▶ 2023.08.02. 교직원 공동숙소 확충 변경계획 수립
- ▶ 2023.08.10. 2023년도 제3회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23560)
- ▶ 2023.08.21. 교직원 공동숙소 매입 관련 재정투자심사 등 절차 이행 안내 (재무과-16320)
- ▶ 2023.11.29. 2023년도 제4회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34682)
- ▶ 2024.02.07. 2024년도 정기1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적정)

○ 검토의견

- ▶ 2024~2026년까지 3년간 오피스텔 형태의 교직원 공동숙소를 연차적으로 30세대씩 총 90세대를 매입하여 저경력자 및 장거리 출퇴근 교직원, 순환보직이 불가피한 소수 직렬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근무환경 만족도 제고를 위해 교직원 숙소를 매입하는 것으로 천안지역 교직원 공동숙소 매입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11 아산지역 교직원 공동숙소 매입안

- 사업기간: 2024. 1. ~ 2025. 12.(2년)
- 위 치: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17번지
- 규 모: 건물 2,179.84㎡(계약면적 기준) 32세대, 1세대 계약 68.12㎡, 전용 28.93㎡
- 사 업 비: 총 5,440백만 원(건물 매입비 5,440백만 원)

◇ 사업비 분담 : 보통교부금 10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5,440	2,550	2,890	0	
보통교부금	5,440	2,550	2,890	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매입세대수 (총 32세대)	입주 시기	규 모		소 요 액		
			부지	매 입 연면적	부지비	매입비	합 계
매입	15세대	2024.09.	0	2,179.84	0	2,550	2,550
	17세대	2025.03.	0		0	2,890	2,890

○ 필요성

- ▶ 사회적 생활기반이 미약한 신규공무원 및 저경력자는 작은 급여 대비 높은 주거비용으로 주거 불안정에 노출되어 있고, 순환보직자는 출퇴근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할애하게 되어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워 교직원 근무여건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공동숙소의 필요성 제기

○ 추진경과

- ▶ 2022.08.08. 교직원 숙소 확충 계획에 따른 지역별 협의회
(충남교육청 재무과 주관)

- ▶ 2022.08.10.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 ▶ 2022.08.23. 교직원 주거시설(숙소) 확보 방향 안내(재무과-15528)
- ▶ 2022.09.06. 교직원 공동숙소 확보 계획(안) 수립 및 확보계획 제출
(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19149)
- ▶ 2022.10.13. 교직원 주거시설(숙소) 중기 확충 계획 안내
(재무과-19202)
- ▶ 2023.08.09. 2023년도 제4회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 2024.02.07. 2024년도 정기1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적정)

○ 검토의견

- ▶ 2024~2025년까지 2년간 오피스텔 형태의 교직원 공동숙소를 연차적으로 총 32세대를 매입하여 저경력자 및 장거리 출퇴근 교직원, 순환보직이 불가피한 소수 직렬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근무환경 만족도 제고를 위해 교직원 숙소를 매입하는 것으로 아산지역 교직원 공동숙소 매입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12 신창중학교 이전적지 처분안

- 사업기간: 2024. 1. ~ 2024. 8. (8개월)
- 위 치: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 268-4번지 외 2필지
- 규 모: 토지 35,995㎡, 건물 5,174.9㎡
- 학교현황: 2024. 9. 1. 신설대체이전 개교 예정(2024.1.1.자 12학급, 315명)
- 추정금액: 12,890백만 원

◇ 재산의 표시

(단위: m², 백만 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명칭	면적/수량	기준가격	추정금액
토지	아산시 신창면	268-4	학교용지	28,482	2,711	6,717
		산105-4	임 야	7,240	141	
		산102-3	임 야	273	5	
소계(3필지)				35,995	2,857	6,717
건물	아산시 신창면	268-4	A동 본관	2,592.24	1,500	6,173
			B동 교사	432.15	151	
			C동 교사	558.32	256	
			D동 강당	491.98	180	
			E동 강당/급식실	996.71	577	
			F동 골프연습장	103.50	37	
소계(6동)				5,174.90	2,701	6,173
합계					5,558	12,890

○ 필요성 (처분사유)

- ▶ 2022년도 정기 2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이전적지 매각대금을 사업비에 투자하는 조건부로 신창중학교 신설대체이전 심사를 통과하여 이전사업 추진 및 매각 기한(2024. 8. 31.) 이전에 신창중학교 이전적지를 처분하고자 함

※ 신창중학교 신설대체이전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4번지

○ 추진경과

- ▶ 2022.04.23. 2022년도 정기2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조건부)
 - 신창중학교 신설대체이전적지 매각대금 사업비 투자
- ▶ 2022.08.10. 신창중학교 이전적지 매각 기본계획 수립(재무과-17258)

- ▶ 2022.09.26. 신창중학교 이전적지 매각 관련 아산시와 1차 협의
- ▶ 2022.11.30. 아산시 신창면 열린 간담회(신창중 이전적지 활용계획 협의)
- ▶ 2022.12. 간담회 결과 관련 검토사항 회신(10년 이내 분할 상환, 일부 사용)
- ▶ 2023.01.04. 신창중학교 이전적지 매각 관련 아산시와 2차 협의
- ▶ 2023.08.10. 2023년도 제4회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 가결)
- ▶ 2023.11.23. 신창중학교 이전적지 매각 관련 아산시와 3차 협의
- ▶ 2023.12.05. 신창중학교 이전적지 매각 관련 현장 확인 (아산교육장, 아산시장)
- ▶ 2024.01.18. 아산시 ‘신창중 이전적지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이자 면제’ 검토 의뢰
- ▶ 2024.01.30. 신창중 이전적지 매각대금 10년 분할상환 시 이자 면제에 관한 사항 회신
 - 매각대금 일시 납부 곤란하다 인정되는 경우 이자 붙여 10년 이내 분할납부 가능³⁾
 - 신창중학교 이전적지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이자 면제 불가⁴⁾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매각재산 일부 사용 시 이자 면제 불가하고 점유·사용 범위 고려하여 이자 징수범위 결정⁵⁾

▶ 2024.01.~02. 신창중 이전적지 매각 추진상황 보고·협의

- 지역구 국회의원, 아산시의회, 지역 도의원

○ 검토의견

- ▶ 2022년도 정기2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신창중 이전적지 매각대금을 신창중 신설대체이전 사업비로 투자하는 조건부 승인에 따라, 매각 기한인 2024. 8. 31.까지 신창중학교 이전적지를 처분하려는 것으로 매각 계획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 다만, 아산시에서 다문화 교육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매각이 불가할 경우, 향후 추진 계획과 매각 기한까지 처분 미완료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13 화양초등학교 울타리 밖 토지 매각안

- 사업기간: 2023. 7. ~2024. 5.(11개월)
- 위 치: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447번지 등 총 19필지
- 규 모: 토지 19필지 13,830㎡
- 관리기관: 화양초등학교(학급수 7학급, 학생수 30명)
- 추정금액: 419백만 원(토지매각비 419백만 원)

5) 각주 2)와 동일

◇ 재산의 표시

(단위: m², 백만 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토지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447	답	2,596	43.61	85.66
		447-1	답	19	0.10	0.20
		447-2	답	28	0.15	0.30
		447-3	답	216	1.18	2.37
		447-4	답	37	0.52	1.22
		448-3	답	70	0.38	1.05
		448-4	학교용지	233	1.27	3.49
		451-1	답	1,805	30.32	59.56
		451-3	답	97	0.53	1.45
		452-1	답	4	0.02	0.06
		453-1	답	3,051	49.12	97.63
		453-3	답	11	0.06	0.16
		482-4	답	47	0.25	0.70
		482-5	학교용지	91	0.49	1.36
		482-7	학교용지	70	0.38	1.05
		482-8	학교용지	167	0.91	2.50
		483-1	답	5,151	81.90	159.68
		483-8	답	54	0.29	0.54
		484-3	답	83	0.45	0.83
합계(19필지)				13,830	211.93	419.81

○ 필요성

- ▶ 서천군은 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소멸을 방지하고, 귀농·귀촌, 초·중학교 전입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고, 화양초등학교 관리토지를 사업부지로 희망하고 있음
- ▶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시기적절한 대안사업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완공으로 마을과 학교의 동반 성장 사례로 돋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매각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경과

- ▶ 2022.08.23. 서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확정
- ▶ 2023.08.01. 토지 매입(화양면 옥포리 447 등 총 6필지) 협조 요청
(서천군 도시건축과-7143)
- ▶ 2023.08.02. 매각 후 효용가치 하락 예상되는 잔여지 추가적 필지 매각 협의 필요 회신(서천교육지원청 행정과-17458)
- ▶ 2024.01.11. 화양면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추진계획 및 편입용지 조서 송부(서천군 도시건축과-1670)
 - 화양면 옥포리 447 등 총 19필지(잔여지 포함)
- ▶ 2024.01.26.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검토의견

- ▶ 화양초등학교 울타리 밖 토지는 교육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고,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유휴부지로 관리되고 있었으나,
서천군에서 도시민의 농촌형 교육 요구 대응 모델 및 농촌학교 살리기 대안정책을 추진하는 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을 추진 중 해당 토지를 사업 시행부지로 희망하고 있어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 또한, 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 완료 시 임대주택 10호가 공급 되어 약 10~15명의 학생이 유입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마을과 학교가 연계하여 농촌학교 살리기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5. 참고 사항

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나. 관련법령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다.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추계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

변경

- 건물

(단위: m², 백만 원)

순	안건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비고
1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기숙사 및 급식실 증축 변경안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351번길 21	변경 전	1,496.0	3,690	3,690	기준가격 : 155.2% 증
			변경 후	2,715.6	9,417	9,417	

취득

- 토지

(단위: m², 백만 원)

순	안건명	소재지	면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비고
1	가칭 탕정8초등학교 신설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산61-1번지 일원	14,279	1,774	18,325	
2	가칭 탕정4중학교 신설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863번지 일원	14,000	2,687	19,404	
3	가칭 한여울학교 신설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647번지 일원	16,000	14,742	23,768	
4	천안용곡중학교 교사동 증축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476번지 일원	1,382	323	719	
토지 취득계			45,661	19,526	62,216	

- 건물

(단위: m², 백만 원)

순	안 건 명	소 재 지	면 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비 고
1	가칭 탕정8초등학교 신 설	아 산 시 탕 정 면 매곡리 산61-1번지 일 원	20,032.0	46,840	46,840	
2	가칭 탕정4중학교 신 설	아 산 시 탕 정 면 매곡리 863번지 일 원	13,886.0	32,909	32,909	
3	가칭 한여울 학교 신 설	아 산 시 배 방 읍 휴대리 647번지 일 원	17,518.0	41,251	41,251	
4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설 립	홍 성 군 홍 북 읍 매 죽 현 길 5	8,630.0	38,212	38,212	
5	천안가람초등학교 교사동 증축안	천 안 시 서 북 구 성 성 동 8 2 8	1,938.1	6,861	6,861	
6	천안용곡중학교 교사동 증축안	천 안 시 동 남 구 용 곡 동 4 7 6 - 9	1,911.8	5,872	5,872	
7	서산중앙고등학교 보통교실 증축안	서 산 시 동 문 동 173-2 외 2필지	945.0	2,337	2,337	
8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삼봉초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 개축안	당 진 시 석 문 면 대호만로 1722-1	978.3	4,153	4,153	
9	천 안 지 역 교직원 공동 숙소 매 입	천 안 시 서 북 구 불당동 1479-2번지 등	4,562.4	6,244	10,500	
10	아 산 지 역 교직원 공동 숙소 매 입	아 산 시 배 방 읍 장재리 1717번지	2,179.8	5,440	5,440	
건물 취득계			72,581.4	190,119	194,375	

○ 처분

- 토지

(단위: m², 백만 원)

순	안 건 명	소 재 지	면 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비 고
1	신창중학교 이전적지 처 분 안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 268-4번지 일 원	35,995	2,857.0	6,717.0	
2	화양초등학교 울타리 밖 토지 매 각 안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447번지 일 원	13,830	211.9	419.8	
토지 처분계			49,825	3,068.9	7,136.8	

- 건물

(단위: m², 백만 원)

순	안 건 명	소 재 지	면 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비 고
1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설 립 안	홍성군 홍북읍 매죽현길 5	3,360.0	824.2	3,114.6	
2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삼봉초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안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1722-1	916.4	112.1	371.6	
3	신창중학교 이전적지 처 분 안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 268-4번지 일 원	5,174.9	2,701.0	6,173.0	
건물 처분계			9,451.3	3,637.3	9,659.2	

- 공작물

(단위: 종, 백만 원)

순	안 건 명	소 재 지	수 량	기준가격	추정금액	비 고
1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청	홍성군 홍북읍 매죽현길 5	23	251.8	251.8	

- 입목죽

(단위: 종, 백만 원)

순	안 건 명	소 재 지	수 량	기준가격	추정금액	비 고
1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청	홍성군 홍북읍 매죽현길 5	4	3.1	3.1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기숙사 및 급식실 증축 변경안

1. 사업기간: 2021. 9. ~ 2026. 2. (4년 6개월)
2. 위 차: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351번길 21
3. 규 모: 건물 2,715.62㎡ (지상 4층)
4. 학교현황: 학급수 12학급(특수 1학급 포함), 학생수 181명(특수 4명 포함)
5. 사 업 비: 총 9,417백만 원(건축비 9,417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68.2%, 국고보조금 23.8%, 지자체지원금 8%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계	9,417	129	240	9,048	
보통교부금	6,419	129	0	6,290	
국고보조금	2,240	0	240	2,000	
지자체지원금	758	0	0	758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4.03.04. 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증축	177	4	11	1	2026.02.	0	2,715.62	0	9,417	9,417

※ 총사업비 9,739백만 원(증축비 9,417백만 원, 비품구입비 322백만 원)

※ 당초면적: 1,496㎡, 증가면적: 1,219.62㎡, 변경면적: 2,715.62㎡

6. 사업목적(필요성)

- 현재 급식실은 '97년 구축된 노후 급식시설로 급식종사자의 안전사고 우려 및 대량의 식재료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조리·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 현대화 필요

- 기존 기숙사생 정원(92명)에서 마이스터고 전환에 따른 학생 전원(14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며, 우수학생 유치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이 요구됨

7. 사업내용

- 2009년 7월 기숙사 준공(지상 2층지하 1층, 15실, 60명) 후 2014년 11월 부족한 8실을 증축하여 총 23실로 92명을 수용하고 있음
- 2021학년도 기숙사 증축사업 계획에 따라 2024. 12. 준공 목표로 1층 급식실과 2~3층 기숙사 12실(총 35실(기존 23실 포함)로 4인 1실 기준 140명 수용) 증축 규모로 설계를 진행하였으나, 마이스터고 지정 관련 당초 기숙사 2~3층 증축계획을 수정하여 기숙사 2층(12실)으로 설계변경(2023. 10.)
- 최종 2023학년도 마이스터고 지정(2023. 9.)에 따른 전교생 수용과 3인1실 기준으로 추가 증축하고자 사업계획 변경(1층 급식실, 2~4층 기숙사 30실)
- 전교생 기숙사 25실, 여유 기숙사 5실(남녀 학생 공간 분리와 정원 외 학생 수용 및 감염병 등으로 인한 격리와 산학겸임교사 등의 용도) 등 총 30실을 추가 확보하고자 함

※ 사업 전후 침실수 및 최대수용인원 현황

구분	여기숙사		남기숙사		여유실		합계	
	총실수	최대 수용인원	총실수	최대 수용인원	총실수	최대 수용인원	총실수	최대 수용인원
사업 전 (4인/1실)	3실	12명	20실	80명	0실	0명	23실	92명
사업 후 (3인/1실)	8실	24명	40실	120명	5실	15명	53실	159명
증감	5실	12명	20실	40명	5실	15명	30실	67명

○ 세부 증축 내역

구분	용도	수량(실)	면적(m ²)	비고
4층	기숙사	10	239.40	실당 23.94m ²
	세탁실	1	20.00	
	다용도복합시설	1	56.30	
	열람실	1	84.93	
	사감실	1	23.94	
	린넨실	1	20.00	
	복도 등 공용면적	1	226.90	
	소계			671.47
3층	기숙사	10	239.40	실당 23.94m ²
	세탁실	1	20.00	
	체력단련실	1	100.24	
	열람실	1	84.93	
	복도 등 공용면적	1	226.90	
	소계			671.47
2층	기숙사	10	239.40	실당 23.94m ²
	세탁실	1	20.00	
	다용도복합시설	1	55.29	
	열람실	1	84.93	
	사감실	1	23.94	
	린넨실	1	20.00	
	복도 등 공용면적	1	257.65	
	소계			701.21
1층	급식실	1	300.00	
	조리실	1	172.94	
	관리실	1	21.06	
	휴게실	1	40.50	
	방풍실	1	27.84	
	홀	1	62.79	
	화장실	1	23.83	
	계단 등 공용면적	1	22.51	
	소계			671.47
총계			2,715.62	

○ 기숙사 층별 실 배치도

(단위: m²)

(4층 671.47m²)

호실 23.94	호실 23.94	호실 23.94	호실 23.94	호실 23.94	세탁실 20.00	열람실 84.93	엘 리 베이터	
복도 204.39								
호실 23.94	호실 23.94	호실 23.94	호실 23.94	호실 23.94	다용도 복합시설 56.30	린넨실 20.00	사감실 23.94	계단 22.51

(3층 671.47m²)

호실 23.94	호실 23.94	호실 23.94	호실 23.94	호실 23.94	세탁실 20.00	열람실 84.93	엘 리 베이터
복도 204.39							
호실 23.94	호실 23.94	호실 23.94	호실 23.94	호실 23.94	체력단련실 100.24		계단 22.51

(2층 701.21m²)

호실 23.94	호실 23.94	호실 23.94	호실 23.94	호실 23.94	세탁실 20.00	열람실 84.93	엘 리 베이터	
복도 204.39								
호실 23.94	호실 23.94	호실 23.94	호실 23.94	호실 23.94	다용도 복합시설 55.29	린넨실 20.00	사감실 23.94	연결복도 /계단 53.26

(1층 671.47m²)

급식실 300.00	조리실 172.94	관리실 21.06	방풍실 27.84	
		홀 62.79		
		휴게실 40.50	화장실 23.83	계단 22.51

8. 주요 변경 내역

- (1층 급식실) 마이스터고 전환으로 기존 기숙사생 정원 92명에서 144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학생 전원이 동시 급식(조식·석식)이 가능하도록 급식실 증축 (당초 536㎡ → 변경 671.47㎡)
- (2층~4층 기숙사) 당초 2층, 3층 기숙사 12실(4인 1실)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마이스터고 지정으로 학생 전원 수용을 위해 25실(3인 1실), 추가 여유실 5실 등 총 30실을 확보하고자 4층으로 변경(당초 960㎡ → 변경 2,044.15㎡)
- 기준가격(금액) 당초 3,690백만 원 대비 9,417백만 원으로 155.2% 증가
- 사업변경 주요 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당초 (12실 증축)		변경 (30실 증축)		증감		
	면적	금액(A)	면적	금액(B)	면적	금액(B-A)	증감률 (B-A)/A×100
1층	536.00	3,690	671.47	9,417	135.47	5,727	155.2%
2층	480.00		701.21		221.21		
3층	480.00		671.47		191.47		
4층	0		671.47		671.47		
계	1,496.00	3,690	2,715.62	9,417	1,219.62	5,727	

9. 추진경과

- 2021.06.28. 기숙사 확충 사업 계획 제출(예산전자공업고-8535)
- 2021.09.30. 예산전자공업고 기숙사 증축 관련 예산군 대응투자사업 예산편성 확정 알림(예산군 교육체육과-18862)
- 2021.10.18.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2021.12.16. 2022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가결)

- 2022.04.26. 2022년도 대응투자 사업계획서 수정 제출(예산전자공업고-5406)
- 2023.07.04. 제18차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동의 신청에 대한 교육부 의견 통보(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2726)
- 2023.08.08. 마이스터고 지정에 따른 기숙사 증축[변경안] 9차 설계 협의회 실시
- 2023.08.18. 마이스터고 지정에 따른 기숙사 증축[변경안] 10차 설계 협의회 실시
- 2023.08.18. 2023학년도 기숙사 증축 사업계획서 수정(예산전자공업고-11494)
- 2023.11.14. 2023년도 정기4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조건부승인)
 - 보고 후 추진: 종합계획배치도 수립, 남녀공간 분리, 모듈러 공법 제시
- 2024.02.07. 2024년도 정기1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 보고(적정)
 - 보고결과: (적정) 모듈러 건축 반영 검토 결과, 급식실 환경개선 설계 기준 부적합 및 사용자 안전성 및 편의성 미검증, 철근콘크리트 공사 대비 공사비 높음
- 2024.02.14.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위치도

1. 위 치: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351번길 21



2. 위성사진



3. 증축 위치(건물 배치 계획)



가칭 탕정8초등학교 신설안

1. 사업기간: 2023. 10. ~ 2027. 2.(3년 5개월)
2. 위 치: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산61-1 일원
3. 규 모: 토지 14,279㎡, 건물 20,032㎡(지하주차장 조성)
4. 학교현황: 학급수 50학급(특수 3학급 포함), 학생수 1,232명(특수 18명 포함)
(개교 예정일: 2027년 3월 1일)
5. 사 업 비: 총 65,165백만 원(토지매입비 18,325백만 원, 건축비 46,840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86%, 지자체지원금 14%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65,165.0	8,340.0	47,199.0	9,626.0	
보통교부금	56,002.5	8,340.0	38,036.5	9,626.0	
지자체지원금	9,162.5	0	9,162.5	0	토지매입비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신축	1,214	18	47	3	2027.02.	14,279	20,032	18,325	46,840	65,165

※ 총사업비 66,451백만 원(부지비 18,325백만 원, 건축비 46,840백만 원, 개교경비 1,286백만 원)

※ 토지매입(9필지 14,279㎡):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 예정

6. 사업목적(필요성)

-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869번지 일원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총 4,670세대(A1~A4블럭 공동주택, 단독주택 262세대 포함)의 주택건설 사업이 계획되어 2026년 12월부터 입주가 예정됨
- 이순신대로 북쪽에 위치한 A1블럭 공동주택 891세대와 단독주택 195세대 입주로 인해 유입되는 학생은 2023년 9월 개교한 아산갈산초등학교에 배치할 예정이나, 이순신대로 남쪽에 위치한 A2~A4블럭 공동주택 3,517세대와 단독주택 67세대 입주로 인한 유입학생은 배치할 학교가 없는 상황임
- 인근 반경 1.5km 이내 탕정초등학교 외 3개 학교도 학생배치시설이 부족하고, 통학환경이 열악(원거리 통학, 대로 횡단 등)하여 분산 배치가 불가능함
- 따라서,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A2~A4블럭 공동주택 3,517세대와 단독주택 67세대 등 총 3,584세대 입주로 인한 유입학생은 신설학교로 배치해야 하며, 사업지 내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가칭) 탕정8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자 함

7. 사업내용

- 토지(민영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

(단위: m², 백만 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산61-1 일원	임야 외	14,279	1,774	18,325

※ 기준가격: 2023년 개별공시지가

※ 추정금액: 매입시점 지가 상승을 고려하여 탁상감정가의 110% 적용

- 토지 세부 필지 내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준가격(원)
1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산61-1	임야	11,639	954,398,000
2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878-1	전	108	31,676,400
3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878-4	대	256	109,030,400
4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878-3	전	689	224,338,400
5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869	전	562	151,627,600
6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879-2	답	132	40,906,800
7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02	전	557	163,368,100
8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01-4	답	14	4,173,400
9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01-13	답	322	94,442,600
계(9필지)				14,279	1,773,961,700

○ 건축비 소요액

(단위: m², 백만 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설 계 비		115천 원 × 20,032m ² =	2,304
공사비	건축공사	2,085천 원 × 16,312m ² =	34,010
	지하주차장	2,029천 원 × 3,720m ² =	7,548
	건설사업관리(감리비)	2,818,000천 원 × 1식 =	2,818
	부 대 비	159,584천 원 × 1식 =	160
	소 계		
합 계			46,840

8. 추진경과

- 2021.10.14. 교육환경평가 승인 [학교지원과-7372(2021.10.15.)]
- 2023.02.2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탕정포스코 A2블럭]
- 2023.03.2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탕정포스코 A3, A4블럭]
- 2023.11.10. 2023년도 정기4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적정)
- 2023.11.14. 2023년도 제5회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2024.01.25. 2024년도 정기1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적정)

(붙임) 학교용지 추정금액(공급가액) 산정기준

(근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개정일자 (시행일자)	공급가액		부칙
	공영개발 사업시행자	민영개발 사업시행자	
1995.12.29. (1996.1.29.)	조성원가 ※초·중 용지는 개발이익 범위 안에서 무상공급가능 (개발면적 1천만㎡이상, 09.25.58.삭제)		
2000.1.28. (2000.2.28.)	감정평가액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분부터
2006.7.19. (2006.7.19.)	· 2천 세대 미만: 조성원가 · 2천 세대 이상 - 초·중: 조성원가의 50% - 고: 조성원가의 70%	감정평가액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택지 공급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2009.5.28. (2009.5.28.)	무상공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 · 2천 세대 미만: 조성원가 · 2천 세대 이상: - 초·중: 조성원가의 50% - 고: 조성원가의 70%	<u>감정평가액</u>	2009.5.28.개정으로 소급적용 · 대상: ‘06.7.19.~09.5.28.’ 동안 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 - 초·중: 조성원가의 20% - 고: 조성원가의 30% ※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제외

가칭 탕정8초 학교용지는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 추진

□ 위치도

1.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산61-1 일원



2. 위성사진

가칭 탕정4중학교 신설안

1. 사업기간: 2024. 1. ~ 2027. 2. (3년 2개월)
2. 위 치: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863 일원
3. 규 모: 토지 14,000㎡, 건물 13,886㎡(지하주차장 조성)
4. 학교현황: 학급수 31학급(특수 2학급 포함), 학생수 789명(특수 12명 포함)
(개교 예정일: 2027년 3월 1일)
5. 사 업 비: 총 52,313백만 원(토지매입비 19,404백만 원, 건축비 32,909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81%, 지자체지원금 19%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52,313	6,582	39,149	6,582	
보통교부금	42,611	6,582	29,447	6,582	
지자체지원금	9,702	0	9,702	0	토지매입비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신축	777	12	29	2	2027.02.	14,000	13,886	19,404	32,909	52,313

※ 총사업비 53,386백만 원(부지비 19,404백만 원, 건축비 32,909백만 원, 개교경비 1,073백만 원)

※ 토지매입(13필지 14,000㎡):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 예정

6. 사업목적(필요성)

- 아산시는 대기업 입지에 따른 배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주택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조성 중인 지역이고, 충남 인구가 정체된 것 대비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탕정면은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대규모 개발로 인해 공동주택이 활발히 조성되고 있으며, 2022년 이후 공동주택 개발 등으로 인구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향후 개발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탕정면 갈산리, 매곡리, 호산리 일원 탕정학구 내에는 2023년 입주한 탕정일반산업단지 공동주택 3,027세대 외에, 2028년까지 13,579세대가 추가 입주 예정이며, 2030년 이후에는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약 22,151호 세대 개발계획이 있음

※ 탕정일반산업단지(2023년/3,027세대),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2026년~2027/3,040세대)
탕정도시개발사업(2026년~2028년/4,670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2027년/1,712세대)
아산신도시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2028년/4,157세대)

- 탕정중학교 과밀을 해소하고, 2023년 입주한 탕정호반아파트 및 2026년 입주 예정인 아산탕정테크노산업단지 공동주택에서 유입되는 학생 배치를 위해 2025년 3월 개교 목표로 아산갈산중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 2026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입주가 예정된 탕정도시개발사업 4,670세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1,712세대가 유입될 경우, 탕정학군 완성학급 기준 보유교실* 대비 2027년 24실, 2028년 31실, 2029년 37실 부족에 따른 학생배치가 불가하여 (가칭) 탕정4중학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함

* 완성학급 기준 보유교실 현황: 총72실 (탕정중학교 36실, 아산갈산중학교 36실)

7. 사업내용

○ 토지(민영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

(단위: m², 백만 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863 일원	전 외	14,000	2,687	19,404

※ 기준가격: 2023년 개별공시지가

※ 추정금액: 매입시점 지가 상승을 고려하여 탁상감정가의 110% 적용

- 토지 세부 필지 내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준가격(원)
1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877-1	답	1,227.6	327,400,920
2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878-1	전	75.9	22,056,160
3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879-2	답	60.9	18,872,910
4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869	전	1,989.2	536,686,160
5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830-5	전	1,358.1	362,205,270
6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863	전	1,640.9	437,628,030
7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산61-1	임야	5,388.8	441,881,600
8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878-4	대	355.4	151,364,860
9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산62-4	임야	580.0	45,124,000
10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830-6	전	656.9	183,932,000
11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830-3	전	517.1	137,910,570
12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830-9	묘지	53.4	14,241,780
13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830-8	임야	95.8	7,299,960
계(13필지)				14,000.0	2,686,604,220

○ 건축비 소요액

(단위: m², 백만 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설 계 비		115천 원 × 13,886m ² =	1,597
공사비	건축공사	2,085천 원 × 10,686m ² =	22,280
	지하주차장	2,029천 원 × 3,200m ² =	6,493
	건설사업관리(감리비)	2,408,000천 원 × 1식 =	2,408
	부 대 비	130,178천 원 × 1식 =	131
	소 계		
합 계			32,909

8. 추진경과

- 2021.10.15. 충청남도교육청교육환경평가 승인(학교지원과-7372)
- 2022.09.2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공공지원민간임대 S-1BL]
- 2023.02.2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포스코 2BL]
- 2023.03.2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포스코 3BL, 포스코 4BL]
- 2024.01.29. 2024년 제1회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2024.02.07. 2024년도 정기1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적정)

(붙임) 학교용지 추정금액(공급가액) 산정기준

(근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개정일자 (시행일자)	공급가액		부칙
	공영개발 사업시행자	민영개발 사업시행자	
1995.12.29. (1996.1.29.)	조성원가 ※초·중 용지는 개발이익 범위 안에서 무상공급가능 (개발면적 1천만㎡이상, 09.25.58.삭제)		
2000.1.28. (2000.2.28.)	감정평가액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분부터
2006.7.19. (2006.7.19.)	· 2천 세대 미만: 조성원가 · 2천 세대 이상 - 초·중: 조성원가의 50% - 고: 조성원가의 70%	감정평가액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택지 공급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2009.5.28. (2009.5.28.)	무상공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 · 2천 세대 미만: 조성원가 · 2천 세대 이상: - 초·중: 조성원가의 50% - 고: 조성원가의 70%	<u>감정평가액</u>	2009.5.28.개정으로 소급적용 · 대상: ‘06.7.19.~09.5.28.’ 동안 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 - 초·중: 조성원가의 20% - 고: 조성원가의 30% ※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제외

가칭 탕정4중 학교용지는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 추진

□ 위치도

1. 위 치: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863 일원



2. 위성사진

가칭 한여울학교 신설안

1. 사업기간: 2024. 1. ~ 2027. 2.(3년 2개월)
2. 위 치: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647 일원
3. 규 모: 토지 16,000㎡, 건물 17,518㎡(지하1층, 지상4층)
4. 학교현황: 학급수 29학급(유 1, 초 12, 중 6, 고 6, 전공학급 4), 학생수 166명
(학교설립 예정일: 2027. 3. 1.)
5. 사업비: 총 65,019백만 원(토지매입비 23,768백만 원, 건축비 41,251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10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 고
계	65,019	1,542	32,063	24,886	6,528	
보통교부금	65,019	1,542	32,063	24,886	6,528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7.03.01. 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 급 수						부지	건 축 연 면 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유	초	중	고	전							계
신축	166	1	12	6	6	4	29	2027.02.	16,000	17,518	23,768	41,251	65,019

※ 총사업비 66,786백만 원(부지비 23,768백만 원, 건축비 41,251백만 원, 개교경비 1,767백만 원)

※ 토지매입(3필지, 16,000㎡): 조성원가로 매입 예정

6. 사업목적(필요성)

- (특수교육대상 학생 지속적 증가) 최근 5년간 충남지역 전체 학생수는 3.8% 감소하고 있으나 특수교육대상 학생수는 21.6% 증가
 - 천안아산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수는 천안시 23.9%, 아산시 25.5% 증가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용을 위한 특수학교 신설 필요

<최근 5년 간 천안·아산 지역 학생수 현황>

(기준: 매년 3.5.자 학교현황)

구분	2019년 (a)	2021년	2023년 (b)	증감 현황		
				인원(c=b-a)	비율(d=c/a×100)	
충남	전체 학생수	267,537	261,456	257,375	△10,162	△3.8%
	특수교육대상 학생수	4,519	4,853	5,496	977	21.6%
천안시	학생수	92,667	91,161	89,184	△3,483	△3.8%
	특수교육대상 학생수	1,198	1,345	1,484	286	23.9%
아산시	학생수	47,016	47,559	50,730	3,714	7.9%
	특수교육대상 학생수	733	794	920	187	25.5%

○ (배치 가능 한계 초과) 지속적인 학급 증설로 배치 가능 인원을 초과하여 개별 성장 맞춤형 특수교육 추진을 할 수 있는 특수학교 설립 필요

- 천안·아산지역 특수학교 3교 개교 이후 59학급 251명 증가
- 학교 설립을 통한 적정규모 학교 운영으로 개인별 특성에 맞는 특수교육 추진 가능

○ (특수교육 여건 개선) 천안·아산지역 특수학교의 과대운영에 따른 열악한 교육환경과 특수교육 여건 개선 필요

- 천안인애학교는 2021년 대비 6학급 33명의 학생이 증가하여 47학급으로 운영 중이며,
- 학생 수 증가로 특별교실과 직업교육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함에 따라 학생 특성에 맞는 특성화 교육을 위한 교실 부족
- 학교신설을 통한 교실 확보로 학교별 특성에 맞는 특별교실 및 직업교육실을 설치하여 학생 개개인에 맞는 다양한 특수

교육 확대 필요

<최근 3년간 천안·아산 지역 특수학교 학급수·학생수 현황>

(기준: 매년 3.5.자 학교현황/단위: 학급, 명)

학교명	2021년(a)		2022년		2023년(b)		증감 현황			
							증감(c=b-a)		비율(d=c/a×100)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천안인애학교	41	227	41	243	47	260	6	33	14.6%	14.5%
아산성심학교	36	193	36	191	38	201	2	8	5.6%	4.0%
천안늘해랑학교	13	83	14	85	13	70	0	△13	0.0%	△15.7%
나사렛새꿈학교	31	136	29	127	31	123	0	△13	0.0%	△9.6%
합 계	121	639	120	646	129	654	8	15	6.6%	2.3%

○ (타 시도 특수교육대상자 유입) 타 시도에서 천안·아산지역으로 많은 학생들이 유입되어 특수학교 과대 운영·특수학급 과밀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 필요

- 최근 3년간(2021~2023년) 타 시도에서 유입된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총 272명이며, 그 중 천안·아산지역은 35.7%인 97명이 유입

※ 최근 3년간 천안·아산지역 타 시도 유입 비율: ('21)36.7% → ('22)35.9% → ('23)34.6%

- 지속적인 특수교육대상 학생 유입에 따른 특수학교 배치 가능 한계 초과 및 특수학급 과밀 운영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학교 설립 필요

<최근 3년간 타 시도 특수교육대상자 유입 현황>

(단위: 명, %)

지역	타 시도 특수교육대상자 유입 현황																							
	2021						2022						2023						합 계					
	유	초	중	고	소계	비율	유	초	중	고	소계	비율	유	초	중	고	소계	비율	유	초	중	고	소계	비율
천안	2	13	6	2	23	25.6	0	9	2	3	14	17.9	0	17	2	1	20	19.2	2	39	10	6	57	21.0
아산	0	5	4	1	10	11.1	1	8	1	4	14	17.9	5	7	1	3	16	15.4	6	20	6	8	40	14.7
소계	2	18	10	3	33	36.7	1	17	3	7	28	35.9	5	24	3	4	36	34.6	8	59	16	14	97	35.7
그 외 지역	8	34	14	1	57	63.3	8	25	11	6	50	64.1	3	46	13	6	68	65.4	19	105	38	13	175	64.3
계	10	52	24	4	90	100	9	42	14	13	78	100	8	70	16	10	104	100	27	164	54	27	272	100

※ 작성기준: 2021, 2022년(매년 3.1.~2.28.), 2023년(2023.3.1.~12.15.)

○ (특수학급 신·증설의 한계) 매년 증가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요 충족을 위해 지속적인 학급 신·증설을 추진하였으나,

- 특수학교에서도 교실을 증축할 공간이 없는 실정
-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공간 확보가 어려워 소폭의 학급 신·증설만 가능한 실정으로 특수학교 신설을 통한 특수학급 확대 필요

<최근 5년 간 천안·아산 지역 일반학교 특수학급 신·증설 현황>

(기준: 매년 3.5.자 학교현황)

지역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최근 5년간 신·증설 학급수
	학급	전년 대비									
천안시	142	8	151	9	160	9	176	16	188	12	54
아산시	99	11	105	6	116	11	126	10	136	10	48
합 계	241	19	256	15	276	20	302	26	324	22	102

○ (특수학교 설립 요구) 특수교육 대상학생 학부모 중심으로 특수 학교 설립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

- 국민신문고, 전화, 기관 및 단체와의 협의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학교설립 요구
- 천안·아산지역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 교직원의 93.3%, 보호자의 98.8%가 특수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

〈천안·아산 지역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설문조사]

- 조사주체: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
- 조사대상: 교원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 보호자
- 참여인원: 총 1,314명 (교직원 627명, 보호자 687명)
- 조사기간: 2023. 11. 2. ~ 11. 9.
-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목적: 천안·아산 지역 특수학교 설립 수요 및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

〈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

(단위: 명)

필요성 정도	교직원		보호자	
	응답자	응답비율	응답자	응답비율
매우 필요하다	478	76.2%	610	88.8%
필요하다	107	17.1%	69	10.0%
보통이다	19	3.0%	6	0.9%
필요하지 않다	9	1.5%	0	0%
전혀 필요하지 않다	7	1.1%	0	0%
기 타	7	1.1%	2	0.3%

- (특수학교 적정규모 유지) 개별 성장 맞춤형 특수교육을 위한 천안인애학교·아산성심학교의 적정학교 규모로 유지하기 위하여 특수학교를 설립하여 분산배치 필요
 -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의 전국 평균은 31.8%이나 천안·아산지역은 29.5%만이 재학 중이며,
 - 천안·아산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5년 전과 비교해 24.5%가 증가하였으나, 특수학교 과대화에 따른 공간 부족으로 특수학교 재학생 비율은 9.7% 증가에 불과
 -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31.5% 증가
 - 특수학교 학급증가의 한계로 특수학교 입학 희망 장애학생들에 대한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 신설 필요

<2023년 전국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기준: 2023.4.1.자 특수교육통계/단위: 명)

지역	특수학교			특수학급		합계
	학교수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서울	32	4,483	38.5%	7,167	61.5%	11,650
부산	15	2,022	38.0%	3,297	62.0%	5,319
대구	11	1,908	46.4%	2,205	53.6%	4,113
인천	10	1,946	32.2%	4,096	67.8%	6,042
광주	5	1,170	42.5%	1,582	57.5%	2,752
대전	6	1,122	36.9%	1,922	63.1%	3,044
울산	4	775	32.3%	1,621	67.7%	2,396
세종	2	229	25.8%	659	74.2%	888
경기	38	5,419	23.6%	17,535	76.4%	22,954
강원	9	866	32.6%	1,789	67.4%	2,655
충남	10	1,342	26.5%	3,716	73.5%	5,058
충북	11	1,384	34.9%	2,584	65.1%	3,968
전북	10	1,119	33.5%	2,220	66.5%	3,339
전남	9	1,197	29.7%	2,832	70.3%	4,029
경북	8	1,501	32.2%	3,159	67.8%	4,660
경남	11	1,914	29.4%	4,604	70.6%	6,518
제주	3	545	35.2%	1,005	64.8%	1,550
합계	194	28,942	31.8%	61,993	64.8%	90,935
천안·아산	4	656	29.5%	1,566	70.5%	2,222

※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완전통합학생) 제외

<최근 5년 간 천안·아산지역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기준: 매년 3.5.자 학교현황/단위: 명)

지역	배치유형	2019년 (a)	2021년	2023년 (b)	증감(b-a)		비고(특수학교)
천안	특수학급	775	872	1,002	227	29.3%	천안인애 학교 천안늘해랑학교 나사렛새꿈학교 (3개교)
	일반학급	20	27	29	9	45%	
	특수학교	403	446	453	50	12.4%	
	소계	1,198	1,345	1,484	286	23.9%	
아산	특수학급	518	580	698	180	34.7%	아산성심학교 (1개교)
	일반학급	22	21	21	△1	△4.5%	
	특수학교	193	193	201	8	4.1%	
	소계	733	794	920	187	25.5%	
합계		1,931	2,139	2,404	473	24.5%	

○ (지역 복합문화 공간 확보) 장애학생들의 학습권과 편익을 위한 교육공간을 넘어 일상생활과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와 상생하는 공간 확보 필요

- 특수학교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인식전환 기회 제공
-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 (부지선정의 적정성) 접근성, 분산배치 효과, 통학여건 개선 등을 고려하여 설립 위치 선정

- (지리적 접근성)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는 천안아산의 경계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천안시 불당동, 아산시 배방읍이 인접하고 있어 다수의 특수교육학생들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근거리 등하교가 가능함
- (분산배치 적합성) 기존 특수학교와의 적절한 거리로 인해 특수학교 과대운영 해소를 위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분산배치에 적합함
- (배치 조정으로 과대학교 해소) 도심 중심지에 특수학교를 설립하여 기존의 특수학교들과 적절한 배치조정으로 과대학교 해소

〈(가칭) 한여울학교 개교 이후 배치 조정 예상〉

(기준: 2023~2028 중기학생배치계획/단위: 명)

지역	교명 (개교년도)	급별											
		유		초		중		고		전공		계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아산	(가칭) 한여울학교	1	3	12	65	6	36	6	38	4	24	29	166
천안	천안인애학교	1	3	13	61	10	46	3	20	3	17	30	147
천안	천안늘해랑학교			6	32	6	24	3	18	2	13	17	87
아산	아산성심학교			11	50	6	36	6	34	4	29	27	149
계		2	6	42	208	28	142	18	110	13	83	103	549

- (통학여건 개선) (가칭) 한여울학교 설립 이후 배치구역 조정을 통해 원거리 및 장시간 통학 여건 개선

7. 사업내용

○ 학급 편제 및 학생 수 [총 29학급, 166명]

구분	유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전1	전2	계
학급수	1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9
학생수(명)	3	9	9	10	11	12	14	12	12	12	13	13	12	12	12	166
정원(명)	4	12	12	12	12	12	12	12	12	12	14	14	14	16	16	186

○ 토지(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조성원가로 매입) (단위: m², 백만 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647	대지	16,000	14,742	23,768
	645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2182				

※ 기준가격: 2023년 개별공시지가(m²당 921,400원)

※ 추정금액: 지구단위계획 등 인허가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착공시기(2025.7.) 조성원가(m²당 1,382,126원) 및 가산이자 반영

○ 건축비 소요액 (단위: 백만 원)

구분	산출기초	소요액	
설계비	88천 원 × 17,518m ² =	1,542	
공사비	교사동	2,206천 원 × 12,733m ² =	28,089
	지하주차장	2,085천 원 × 3,600m ² =	7,506
	지하주차장(흙막이공사)	500,000천 원 × 1식 =	500
	실내체험시설	1,000,000천 원 × 1식 =	1,000
	건설사업관리(감리비)	2,466,696천 원 × 1식 =	2,467
	부대비	147,678천 원 × 1식 =	147
	소계		39,709
합계		41,251	

8. 추진경과

- 2023.07.17.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LH 미매각토지 용도변경 및 매각요청→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일원(학교지원과-5541)
- 2023.08.31.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 매각 협의→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일원 조성원가 매입 제안(LH)
- 2023.10.12. 특수학교 설립부지 협의→향후 진행절차, 토지매입비, 추가 구입 가능 여부, 학교진입로 개설 등 협의
- 2023.10.20. 특수학교 설립 관련 유관기관 협의→특수학교 설립 관련 인허가, 토지매입비 등 협의(아산시청, LH)
- 2023.10.25. 특수학교 설립 관련 협조 요청→LH 미매각토지(휴대리 일원) 매각 가능 여부 회신 요청(학교지원과-8792)
- 2023.10.31. 특수학교 설립 관련 회신→인허가변경 선행을 전제로 매각 가능, 준공일로부터 2년 경과 이후부터 민법상 이자 가산(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충남판매부-5430)
- 2024.01.11. 학교 신설 용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 실시(승인)
(충청남도교육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5)
- 2024.01.15. (가칭) 한여울학교 학교설립 계획 수립(학교지원과-380)
- 2024.02.07. 2024년도 정기1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적정)
- 2024.02.14.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2024.04. 2024년도 정기2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예정)

[붙임] 학교용지 추정금액 산정기준

(근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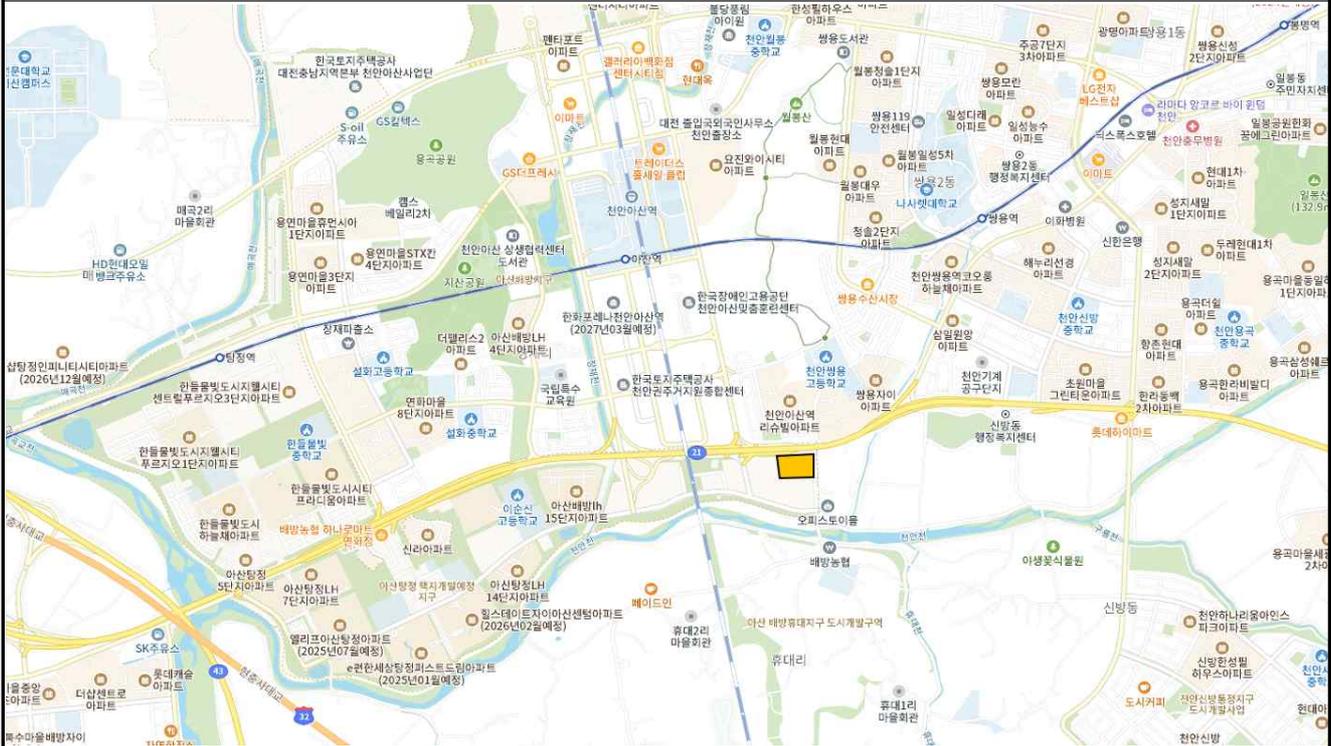
구 분	용 도 별	공 급 지 역		
		수도권 · 부산권	광역시	기타지역
조성원가 이하	○ 임대주택건설용지 - 60㎡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	· 수도권 : 60(85) · 부산권 : 60(80)	60(80)	60(70)
	- 60㎡초과 85㎡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지	· 수도권 : 85(100) · 부산권 : 80(90)	70(90)	60(80)
	○ 공립학교용지(공립 유치원 · 초 · 중 · 고)	무상	무상	무상
조성원가 수준	○ 공공용지	100	100	<u>100</u>
	○ 협의양도인택지(단독주택건설용지)	· 수도권 : 감정평 가액 · 부산권 : 110	110	110
	○ 사립학교용지(초 · 중 · 고)	100	100	110
감정평가액	○ 단독주택건설용지(점포겸용 단독주택건설용지 제외)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 분양주택건설용지	〃	〃	〃
	○ 임대주택건설용지	〃	〃	〃
	- 85㎡초과 149㎡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지	〃	〃	〃
	○ 공공용지	〃	〃	〃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주거부분)	〃	〃	〃
	○ 주상복합용지(주거부분)	〃	〃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 가격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비주거부분)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 주상복합용지(비주거부분)	〃	〃	〃
	○ 도시계획시설용지	〃	〃	〃
	○ 근린생활시설용지	〃	〃	〃
	○ 상업 · 업무시설용지	〃	〃	〃

주 : 2. 공공시설용지와 그 밖의 공공시설용지(학교포함)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주체 및 영리성에 따라 구분하여 결정

특수학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조성원가(100%)로 매입 추진

□ 위치도

1. 위 치: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647 일원



2. 특수학교간 거리



3. 현장사진



충청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안

□ 교사동 등 처분(안)

1. 관련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2023년도 제3회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2023. 7. 18.)

2. 처분 사유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946번지 일원에 2024년 3월 개교 목표로 홍북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이 확정됨
- 홍북초등학교 이전적지에 충청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해 37년 이상 경과한 교사동 등을 처분하고자 함
 - 교사동 외 3개동 철거: 3,360.02㎡
 - 공작물(지정 외 22개) 및 입목죽(4종 51주) 철거 또는 처분

3. 처분 내역

○ 건물

(단위: ㎡, 백만 원)

소재지	명칭	취득일자	면적	기준가격	대장가격
홍북읍 매죽현길 5	교사+다목적강당	1985.10.21.	3,231.99	792.5	3,074.8
	창고	1976.08.28.	26.04	0.8	1.0
	조례+창고	2000.06.03.	95.58	30.7	14.8
	옥외화장실	2009.10.23.	6.41	0.2	24.0
계(4개동)			3,360.02	824.2	3,114.6

※ 다목적강당(1,527.71㎡): 2008.12.18. 취득 후 2009. 12. 19. 교사동으로 합병 정리

○ 공작물

(단위: m², 개, 백만 원)

소재지	명칭	취득일자	면적 /수량	기준가격	대장가격
홍북읍 매죽헌길 5	지정	1989.12.11.	1	11.2	11.2
	하수구	1996.12.31.	1	23.5	23.5
	계양대	2000.06.03.	1	3.2	3.2
	포장	2009.01.14.	1,100	44.3	44.3
	캐노피	2013.12.09.	1	10.9	10.9
	정글짐	2014.03.18.	1	4.1	4.1
	구름사다리	2014.02.26.	1	2.5	2.5
	그네	2014.03.18.	1	3.0	3.0
	시소	2014.02.26.	1	2.1	2.1
	철봉	2014.02.26.	1	3.0	3.0
	석상	2015.01.01.	1	10.0	10.0
	발전장치	2016.03.28.	1	17.7	17.7
	계양대	2016.10.25.	1	4.0	4.0
	보도블럭	2016.05.30.	250	17.6	17.6
	CCTV	2017.01.26.	4	2.2	2.2
	계단	2018.11.23.	195	49.8	49.8
	급수대	2018.11.29.	8	10.8	10.8
	그네	2019.09.25.	1	3.8	3.8
	파고라	2019.08.26.	1	8.3	8.3
	안내실	2020.04.22.	5	5.6	5.6
	미세먼지신호등	2021.12.01.	1	9.9	9.9
	접이식어닝	2020.08.21.	2	2.8	2.8
	그네	2022.01.18.	1	1.5	1.5
계(23종)				251.8	251.8

※ 일부 공작물(미세먼지신호등 및 석상 등)은 홍북초 신설대체이전지에 설치 활용 예정

○ 입목죽

(단위: 주, 백만 원)

소재지	명칭	취득일자	수량	기준가격	대장가격
홍북읍 매죽헌길 5	옥향	2003.10.28.	40	1.0	1.0
	해송	2003.10.28.	2	0.4	0.4
	은행나무	2003.10.28.	1	0.1	0.1
	소나무	2003.10.28.	8	1.6	1.6
계(4종)				3.1	3.1

※ 일부 입목죽(소나무 등)은 홍북초 신설대체이전지에 이식 활용 예정

□ 충청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안)

1. 사업기간: 2021. 12. ~ 2027. 2.(5년 3개월)
2. 위 치: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매죽헌길 5(홍북초등학교 부지)
3. 규 모: 건물 8,630㎡(지하 1층, 지상 3층)
4. 현 황: 2개 부서(교육운영부, 행정지원부), 인원 29명
(개원 예정일 : 2027년 3월)
5. 사 업 비: 총 38,212백만 원(건축비 38,212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10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38,212	6,000	31,762	450	
보통교부금	38,212	6,000	31,762	45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완성기준(인력)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원장	교육 운영부	행 정 지원부	계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신축	1	21	7	29	2027.02.	25,243	8,630	0	38,212	38,212

※ 총사업비 38,662백만 원(건축비 38,212백만 원, 기자재 구입비 450백만 원)

6. 사업목적(필요성)

- 충남 특수교육 대상학생과 모든 학교구성원의 성장을 도모하고, 당면한 특수교육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미래 충남교육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충남의 특수교육 역량 증대
- 기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특수교육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특수교육 종합 지원 허브 역할 수행

- 충청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만의 차별화된 특수교육 사업을 수행하여 한국 특수교육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선도적 특수교육 기관 운영
- 개별 성장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으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개인 역량 향상은 물론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복합 체험영역 운영으로 사회적 통합 실현

7. 사업내용

○ 조직 구성

원장	부서	부장	교육 연구사	교사		행정직			교육공무직			소계	합계
				과견 교사	기간제 교사	6급	7급	8급	시설 관리	청소원	취업 지원관		
1	교육 운영부	1	7	2	10						1	21	29
	행정 지원부	1 (5급)				1	2	1	1	1		7	

○ 주요업무(기능 및 역할)

구분	내용
특수교육지원 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자 발견 정보 관리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및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장애학생인권지원단」운영
정책 연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 연구 및 정책 개발 ▶ 특수교육 통계 조사 ▶ 특수교육 장학자료 개발 ▶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

구분	내용	
통합교육 연수 지원	특수교육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 지원인력 및 가족(부모·형제) 연수 ▶ 연구회 및 학습공동체 운영 ▶ 특수교육 교원 연수 지원 ▶ 전문가 연수 및 현장연수 지원
	통합교육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교육(관리자 및 일반교사) 및 특수교육 교원 연수 ▶ 통합교육 원격연수, 집합연수 지원 ▶ 찾아가는 장애 이해교실 운영 ▶ 장애인식개선 콘서트 및 연수
취업·창업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전환교육 지원센터 운영의 특성화 및 내실화 ▶ 인력 활용으로 취업·창업 교육 지원 ▶ 취업·창업교육 담당자 연수 	
행동중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중재지원 전문가(교원) 연수 운영 ▶ 행동중재 자문상담 지원단 구성, 운영 ▶ 특수학교(급) 행동중재 지원 ▶ 행동중재지원실 및 행동관찰실 운영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지원 계획 수립 및 홍보 ▶ 치료지원 대상학생 선정 및 예산 지원 ▶ 치료지원 관계 기관 연계 및 인증을 위한 추수지도 ▶ 통합편의 제공 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 ▶ 가족캠프 개최 및 가족지원 연수 ▶ 장애학생 부모 자조모임 지원 ▶ 대학진학 정보 제공 및 장애인 특례입학 제도 홍보 ▶ 특수교육 교재·교구 지원 ▶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AAC 포함) 지원 ▶ 특수교육 지원인력 대상학생 파악 및 선정 ▶ 특수교육 지원인력 소양교육 및 연수 지원 ▶ 특수교육 지원인력 현장 점검을 통한 운영 내실화 ▶ 정규교육과정 이후의 방과후 활동 지원 	

○ 시설 규모

(단위: m²)

영역	세부시설	소요 실수	소요 면적	비고	
업무 및 관리 영역	안내실	1	30		
	행정실	1	60		
	사무실	1	210		
	원장실	1	45		
	상담실	1	45		
	강사대기실(학부모 대기실)	1	45		
	보건실	1	60		
	교재교구실	1	60		
	직원휴게실	2	90	남/여 구분	
	창고	1	45		
	소계			690	
연수 영역	연수실(대)	1	160		
	연수실(중)	1	100		
	연수실(소)	2	60		
	미디어실(가족미디어실)	1	60		
	소계			380	
체험 영역 (일상 생활)	AI 인공지능 미래 체험관	창의과학관	1	90	장애·비장애 비교체험 가정생활 환경 재현 및 베리어프리 적용 공간 보조공학기기체험 (체험 및 훈련 유기적 운영)
		게임문화관	1	90	
		실감형체험실	1	90	
		SW교육	1	90	
	장애이해 체험관	인권나눔실	2	90	
		보조공학기기체험	1	90	
		장애공감체험	2	180	
소계			720		

영역	세부시설	소요 실수	소요 면적	비고	
체험 영역 (진로 직업)	성인지교육관	1	90		
	진로평가실	1	60		
	진로상담실	1	60		
	직업 체험관	편의점	1	108	직무체험 프로그램
		병원	1	108	
		호텔오피스	1	108	
		제조포장	1	108	
도시농부		1	108		
소계			750		
문화 복합 영역	체육관 (체육활동실 겸)	1	820	장애인농구, 좌식배구, 골볼, 보치아 등 경기 가능, 장애인스포츠 도구 보관창고 포함	
	다목적강당	1	720	350석 규모	
	카페테리어	1	150		
	실내놀이터	1	150		
	소계			1,840	
영역별 면적 합계			4,380		
공용 영역	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창고, 기계실, 전기실 등		3,050		
지하주차장			1,200	(법정 주차대수 25대 이상)	
연면적			8,630		

8. 추진경과

- 2021.12.31. 충청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 2022.01.27. 2022년도 정기 1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조건부)
(부대의견) 홍북초 부지에 충청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활용 결정
- 2022.06.~08. 충청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홍북초등학교 정밀
안전진단 실시(정밀 진단결과 C등급)

(진단결과) 충청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계획에 따라 용도변경 및
증축 시 D등급으로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 보강 필요

- 2022.10.14. 정밀안전진단 평가 실시
- 2022.12.12. 충청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 추진단 구성 및 활동
- 2023.02.20. 충청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전담팀 협의회
- 2023.03.03. 2023년 제1차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
위원회(원안가결)
 - 흥북초등학교 교사, 다목적 강당 철거 및 개축 결정
- 2023.03.~04. 충청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 교육수요자 요구조사
- 2023.04.25. 충청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 세부 운영 계획(안) 수립
- 2023.08.10. 충청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
- 2023.10.25. 충청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 기본계획 수정(안) 수립
- 2023.11.10. 2023년도 정기4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적정)
- 2024.01.25. 2024년도 정기1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적정)
- 2024.02.14.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위치도

1. 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매죽헌길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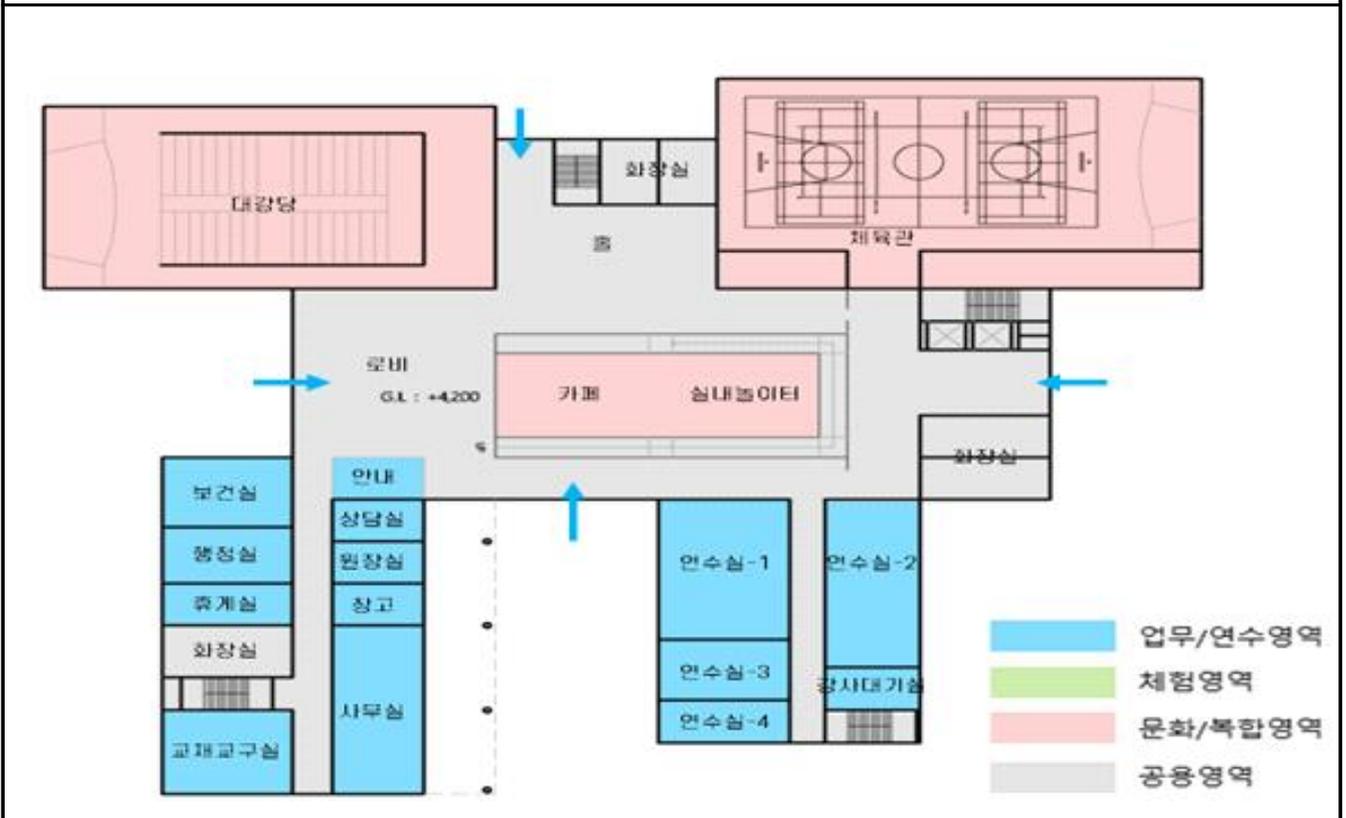
2. 전경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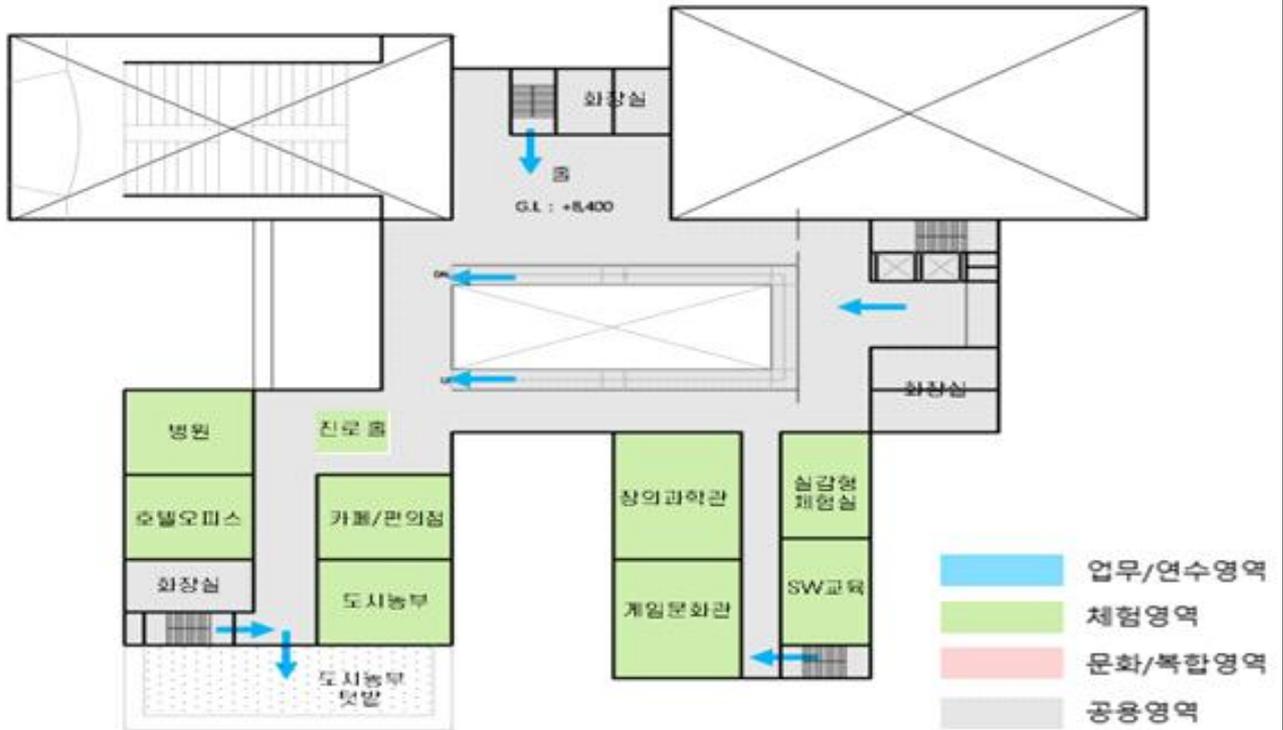
3. 배치도(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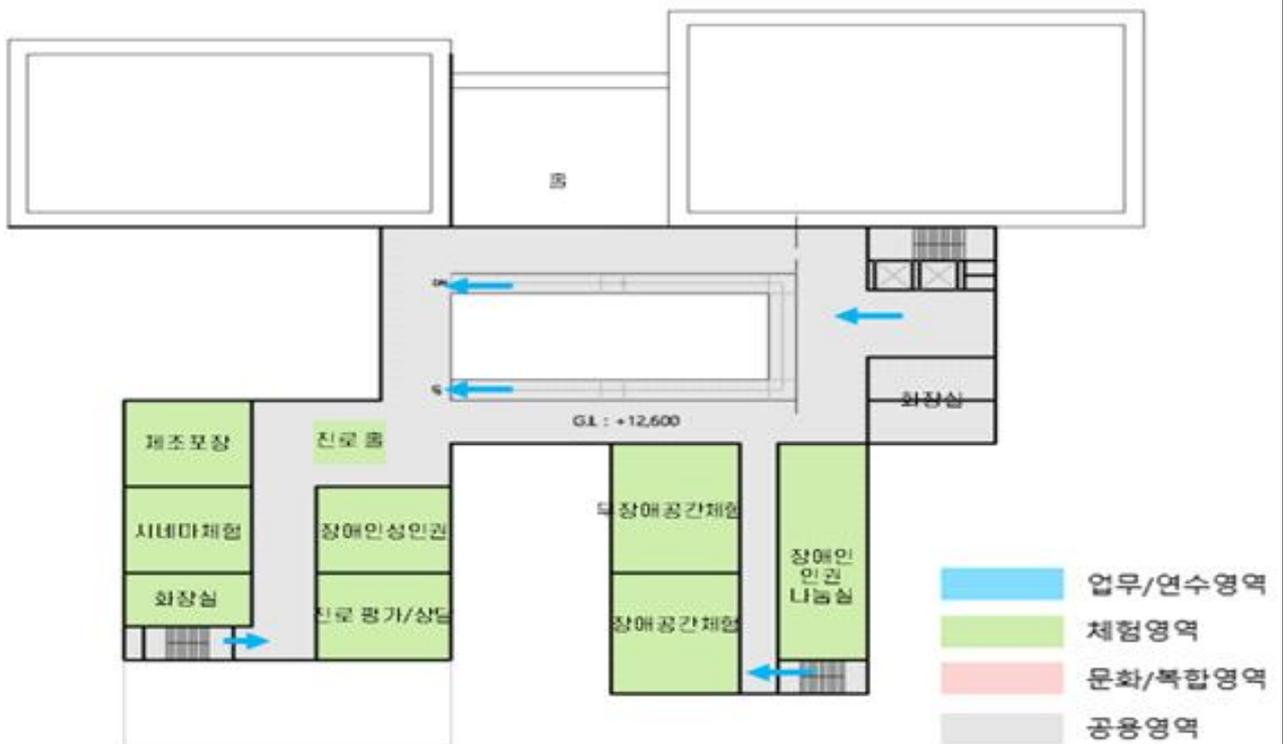
4. 배치도(1층)



5. 배치도(2층)



6. 배치도(3층)



7. 철거대상 건물(교사동)



8. 철거대상 건물(다목적강당)



9. 철거대상 건물(창고)



10. 철거대상 건물(조례+창고)



11. 철거 대상 건물(옥외 화장실)



천안가람초등학교 교사동 증축안

1. 사업기간: 2024. 2. ~ 2026. 2.(2년 1개월)
2. 위 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828
3. 규 모: 건물 1,938.15㎡
4. 학교현황: 학급수 53학급(특수 2학급 포함), 학생수 1,262명(특수 11명 포함)
5. 사 업 비: 총 6,861백만 원(건축비 6,861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1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 고
계	6,861	230	6,631	0	0	
보통교부금	6,861	230	6,631	0	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4.01.05. 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증축	1,251	11	51	2	2026.02.	0	1,938.15	0	6,861	6,861

6. 사업목적(필요성)

- 천안가람초등학교는 성성지구 내 공동주택 3,736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 학생을 배치하기 위해 2023. 3. 1. 개교하였으며, 개교 당시 2026년 최대 43학급 규모 예측
- 그러나, 충청남도교육청의 학급당 기준 인원이 31명에서 28명으로 하향하여 당시 예측보다 학급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해당 지역은 학생 밀집 거주 지역으로 배치 대상 학생수 또한 설립 당시 1,300명에서 1,513명으로 증가하게 됨

- 그 결과, 천안가람초등학교 최대학급은 설립 당시 43학급보다 17학급이 증가한 60학급으로 검토되어 교사동 증축이 불가피한 실정
- 천안가람초등학교는 공동주택 단지 및 도로와 인접하여 학교용지의 추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사전 기획 용역을 통하여 유치원 앞 주차장 및 회차지를 활용하는 교실확충을 검토한 결과 법적 기준에 맞는 교사 면적, 체육장 면적 등을 고려하여 교사동을 증축하고자 함

7. 사업내용 (증축 1,938.15㎡)

- 교사동 증축

구분	층별	용도	면적(㎡)
교사	1층	필로티	74.34
	2층	보통교실 4실, 특별교실 1실	504.45
	3층	보통교실 4실, 특별교실 1실, 스포츠활동실	679.68
	4층	보통교실 4실, 특별교실 1실, 스포츠활동실	679.68
합계			1,938.15

※ 구체적 실별 용도는 사전 기획 및 사용자 참여 설계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8. 추진경과

- 2023.07.~12. 사전기획용역 추진
- 2024.02.06.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2024.02.07. 2024년도 정기1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적정)

□ 위치도

1. 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828



2. 조감도(1)



3. 조감도(2)



4. 배치계획도(1층)

최종안 - 평면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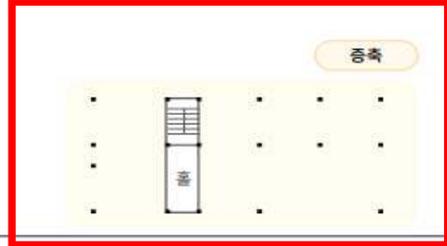
1층 평면도

중축면적	
1층	74.34
2층	504.45
3층	679.68
4층	679.68
5층	-
합계	1,938.15

층별 배치 학급수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5학년	-
6학년	-
합계	-



1층: 필로티



5. 배치계획도(2층)

최종안 - 평면계획(안)

2층 평면도

증축면적	
1층	74.34
2층	504.45
3층	679.68
4층	679.68
5층	-
합계	1,938.15

층별 배치 학급수	
1학년	13
2학년	-
3학년	-
4학년	3
5학년	-
6학년	-
합계	16



2층: 보통교실4실,
특별교실 1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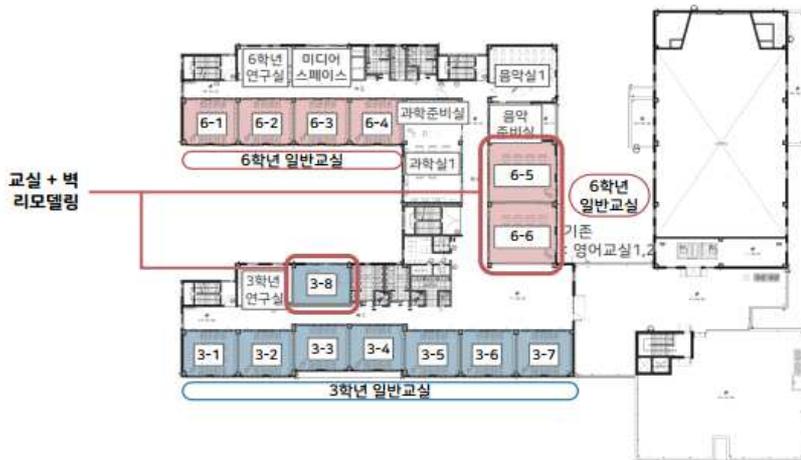
6. 배치계획도(3층)

최종안 - 평면계획(안)

3층 평면도

증축면적	
1층	74.34
2층	504.45
3층	679.68
4층	679.68
5층	-
합계	1,938.15

층별 배치 학급수	
1학년	-
2학년	-
3학년	8
4학년	3
5학년	-
6학년	6
합계	17



3층: 보통교실4실,
특별교실 1실, 스포츠활동실
1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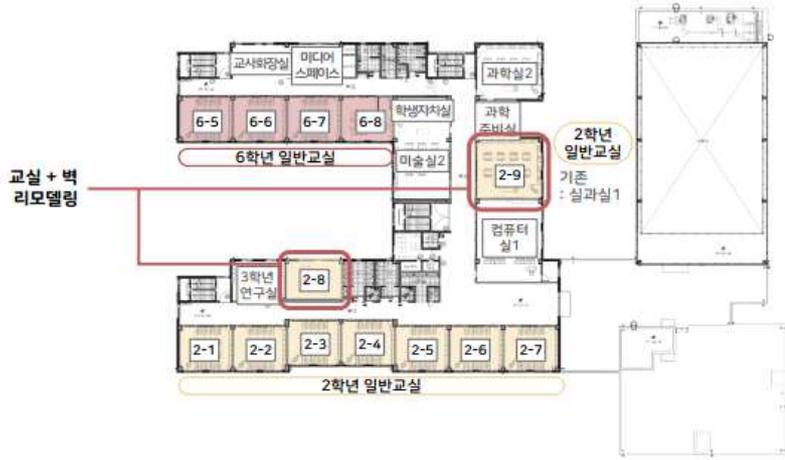
7. 배치계획도(4층)

최종안 - 평면계획(안)

4층 평면도

층축면적	
1층	74.34
2층	504.45
3층	679.68
4층	679.68
5층	-
합계	1,938.15

층별 배치 학급수	
1학년	-
2학년	-
3학년	9
4학년	3
5학년	-
6학년	4
합계	16



4층: 보통교실4실,
특별교실 1실, 스포츠활동실
1실



천안용곡중학교 교사동 증축안

1. 사업기간: 2024. 2. ~ 2026. 2.(2년 1개월)
2. 위 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476-9
3. 규 모: 토지 1,382㎡, 건물 1,911.86㎡
4. 학교현황: 학급수 38학급(특수 2학급 포함), 학생수 1,121명(특수 10명 포함)
5. 사 업 비: 6,591백만 원(토지매입비 719백만 원, 건축비 5,872백만 원)

◇ 사업비 분담: 기부채납(사업시행자 부담)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 고
계	6,591	0	6,591	0	0	
기부채납	6,591	0	6,591	0	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4.01.05. 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증축	1,111	10	36	2	2026.02	1,382	1,911.86	719	5,872	6,591

※ 총사업비 8,642백만 원(부지비 719백만 원, 증축 5,872백만 원, 리모델링 등 2,051백만 원)

6. 사업목적(필요성)

- 천안2학군 서남부구역 내에 신규 공동주택 3,235세대가 2026~2028년 입주 예정이며, 이에 따라 431명의 학생 유입이 예상됨

2026	2027	2028
일봉공원호반써밋센트럴파크(1BL) (453세대)	일봉공원호반써밋센트럴파크(2BL) (1,284세대)	쌍용지구 주상복합 (1,498세대)

- 서남부구역 3개 중학교의 교육시설 부족으로 신규 유입이 예상되는 학생들의 배치가 불가하므로 천안용곡중학교에 교육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함

7. 사업내용 (토지매입 1,382㎡, 증축 1,911.86㎡)

- 신규 공동주택 입주로 유입이 예상되는 학생들을 배치하기 위해 천안용곡중학교에 인접한 토지 1,382㎡를 매입하여 보통교실 12실 증축
-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다목적실, 기계실 등 증축
- 지하 1층과 지상 1층의 급식실, 조리실에 대한 증축 및 리모델링을 함께 실시해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교 급식 여건 개선
- 지하 1층의 기존 활동실을 리모델링하여 특별교실 2실 확충
- 토지 취득

(단위: ㎡, 백만 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476	답	19	9	17
	476-25	임야	199	32	173
	476-26	임야	543	129	171
	476-27	임야	480	133	314
	476-52	임야	141	20	44
합 계			1,382	323	719

○ 교사동 및 급식실 증축

(단위: m²)

구분	층별	용도	면적
급식실	1층	급식실	189
교사동	1층	다목적실, 기계실, 물탱크실	378.04
	2층	보통교실 3실	313.31
	3층	보통교실 3실	313.31
	4층	보통교실 3실	313.31
	5층	보통교실 3실	404.89
계			1,911.86

※ 구체적 실별 용도는 사전 기획 및 사용자 참여 설계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8. 추진경과

- 2017.02.07. 민간공원 조성 제안 특례사업 관련 업무협약(행정과-1786)
- 2017.12.01. 천안 도시관리계획(일봉공원 조성)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업무협약(행정과-18243, 용곡중 학교용지 확보, 증축계획 필요)
- 2018.08.16. 천안 도시관리계획(일봉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업무협약(행정과-12657, 용곡중 12실 외 부대시설 확충 필요)
- 2019.02.15. 일봉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관련 확보 계획(안) 업무협약(행정과-2687)
- 2021.10.13. 용곡동 474-4번지 일원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업무협약(일봉근린공원 비공원시설 1BL, 2B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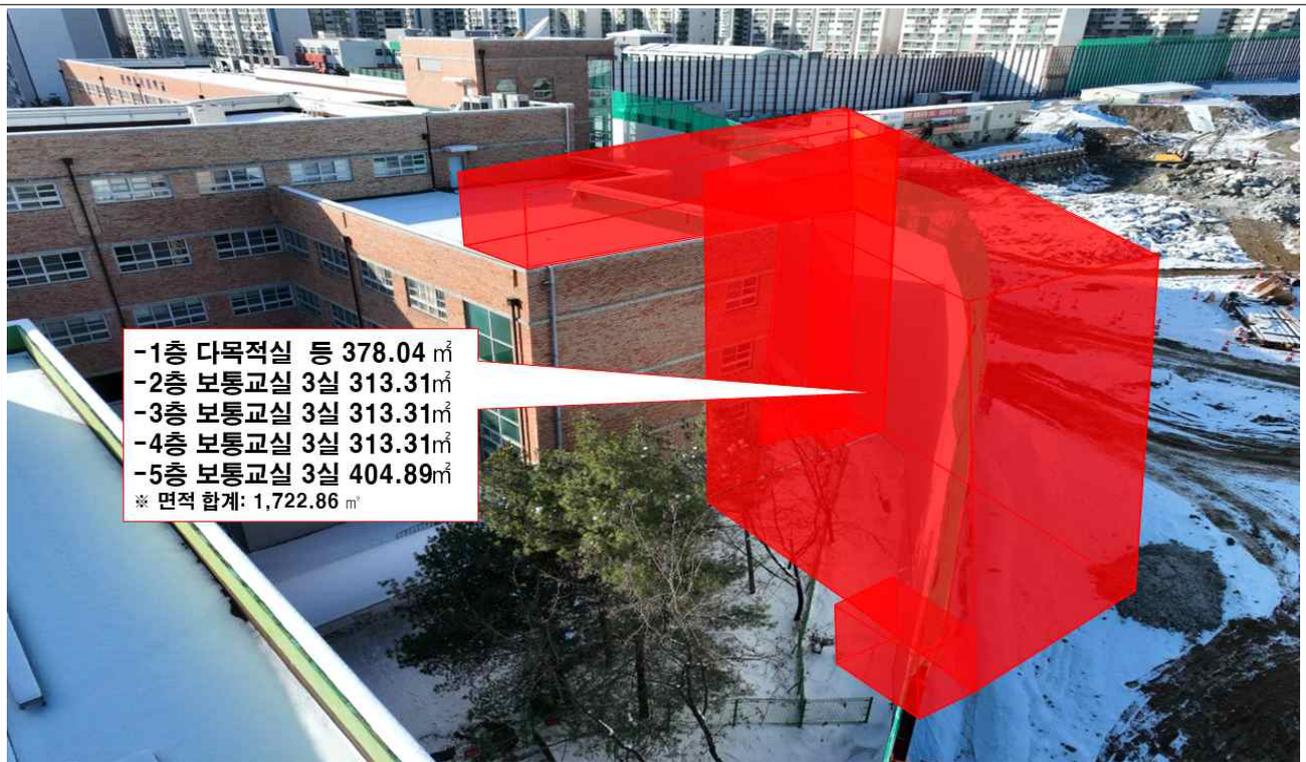
- 2021.11.19. 천안용곡중학교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기부채납 협약 체결
[일봉근린공원](행정과-22052)
- 2022.02.04.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봉근린공원](행정과-1965)
- 2024.02.06.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2024.02.07. 2024년도 정기1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적정)

□ 위치도

1. 위 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47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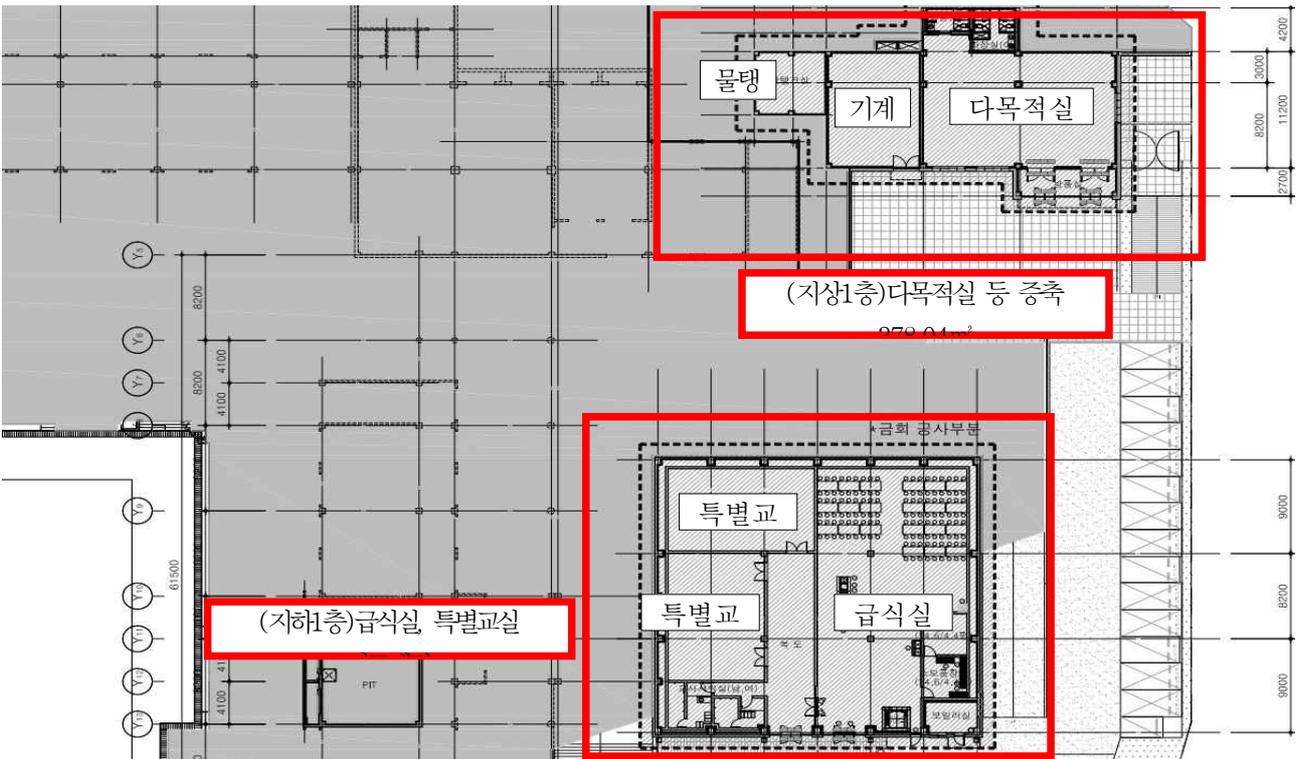
2. 보통교실 증축 부분 전경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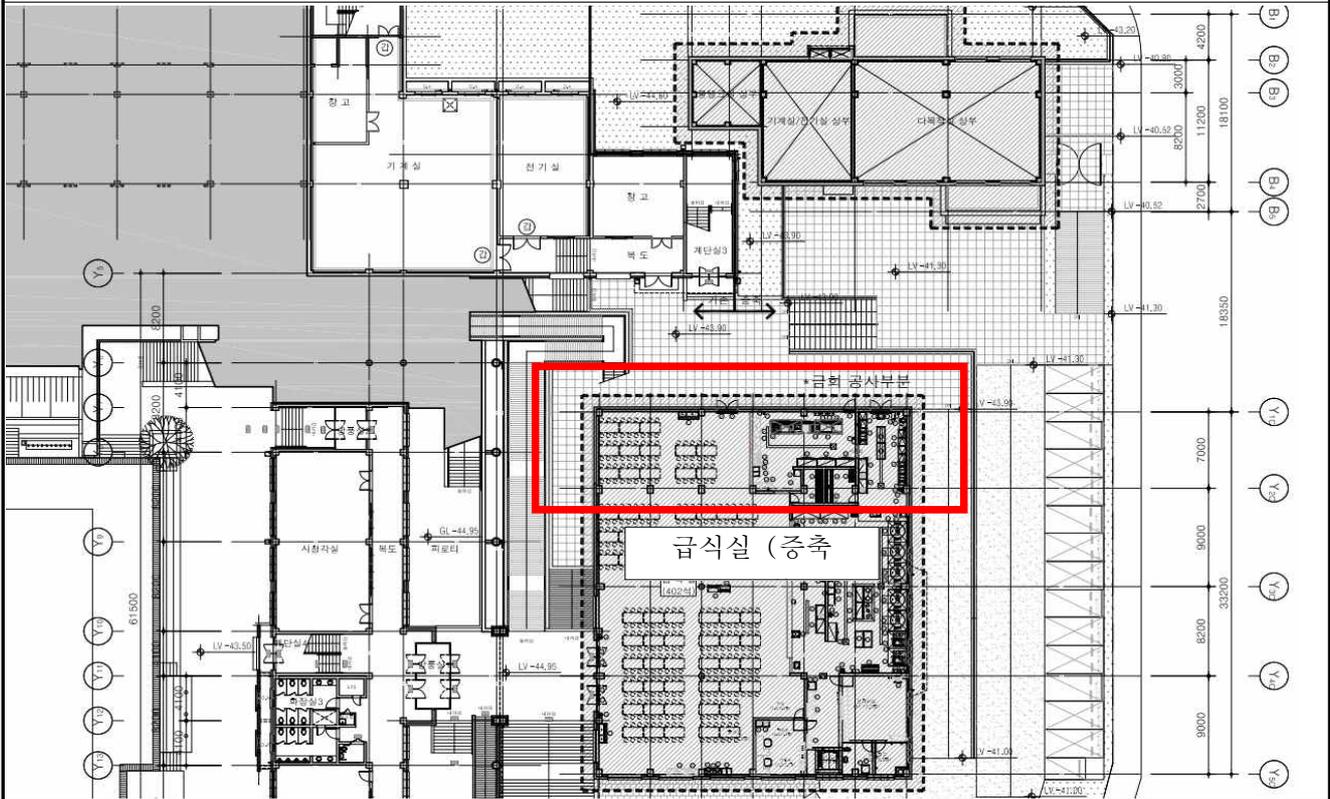
3. 급식실 증축 부분 전경사진



4. 평면도(지하 1층 급식실, 특별교실 리모델링)(지상 1층 다목적실, 기계실 증축) ※ 교사동 증축부지와 급식실 증축부지의 높낮이 차이로 인한 층수 차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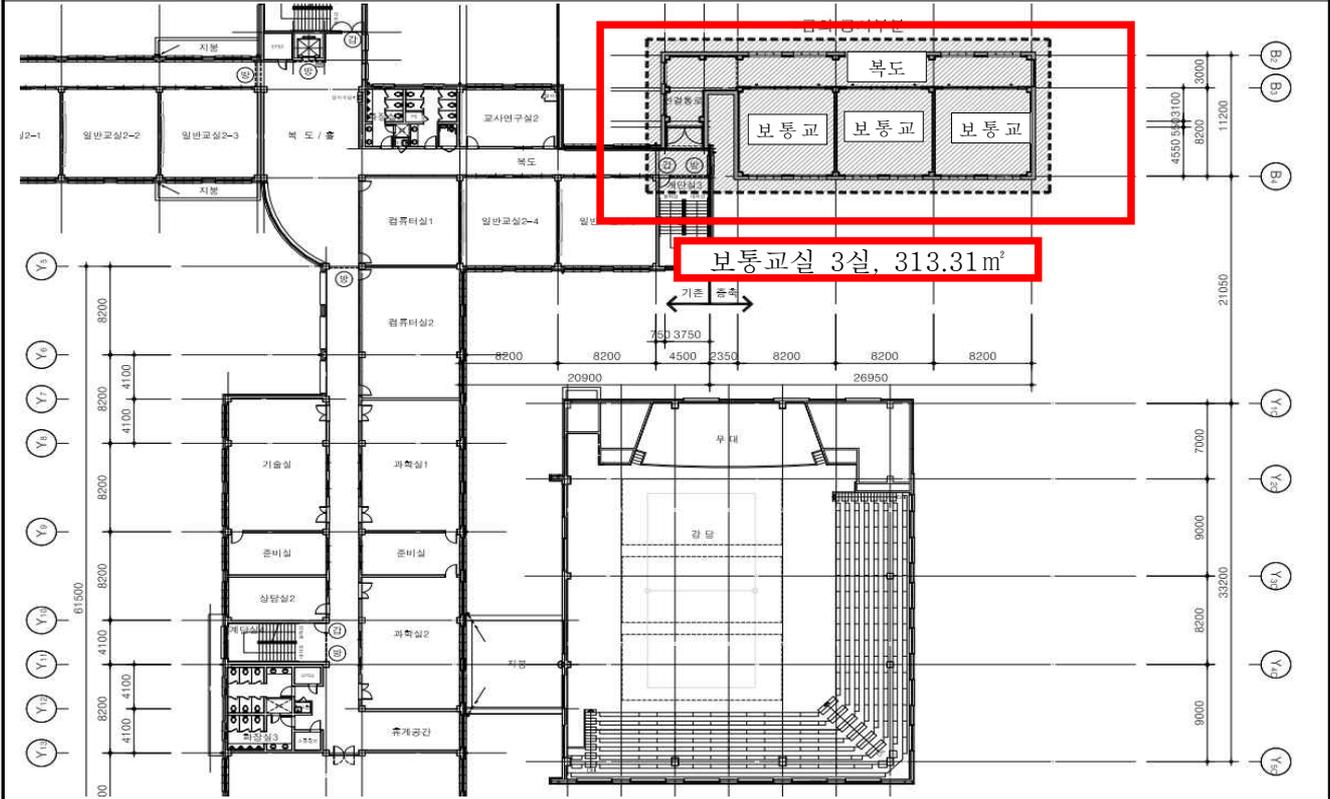
5. 평면도(1층 급식실 증축, 리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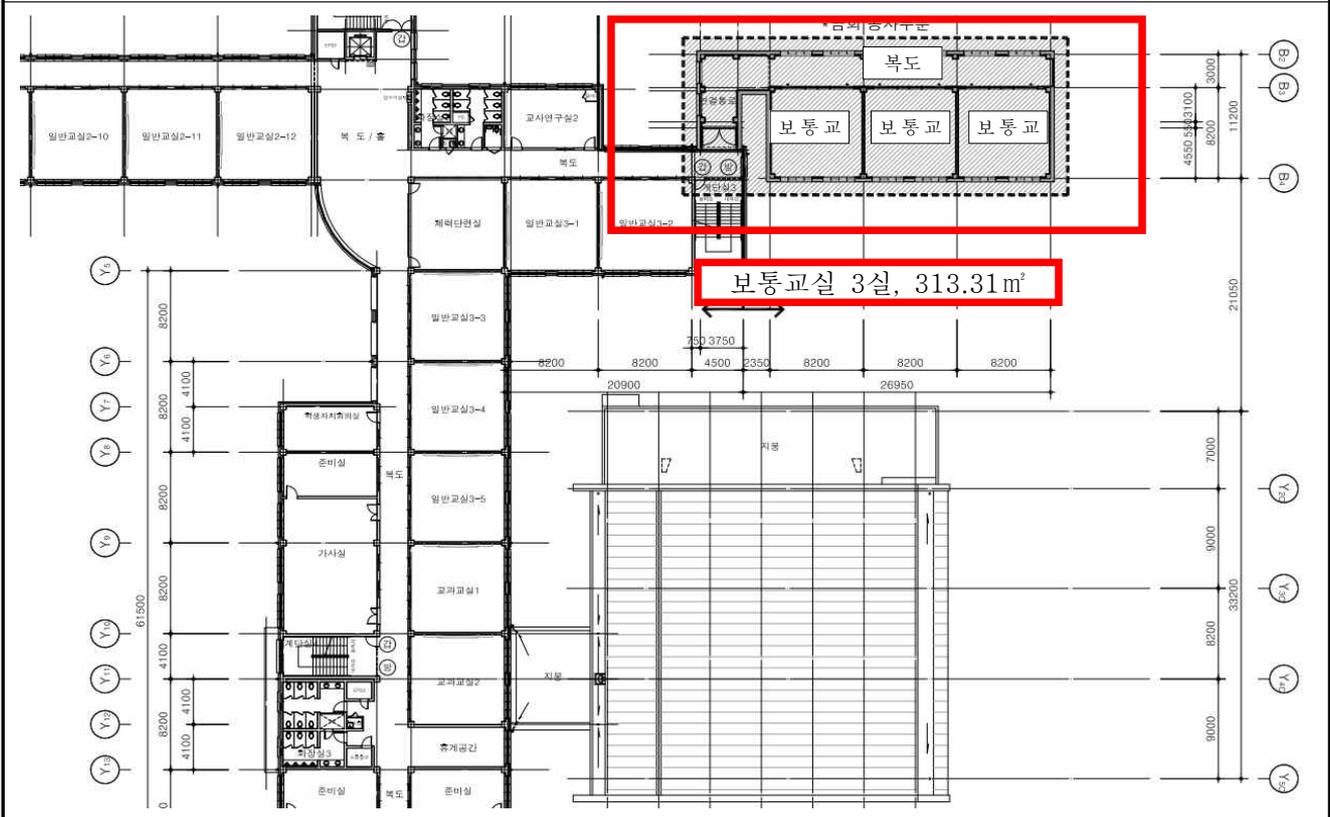
6. 평면도 2층(보통교실 3실 증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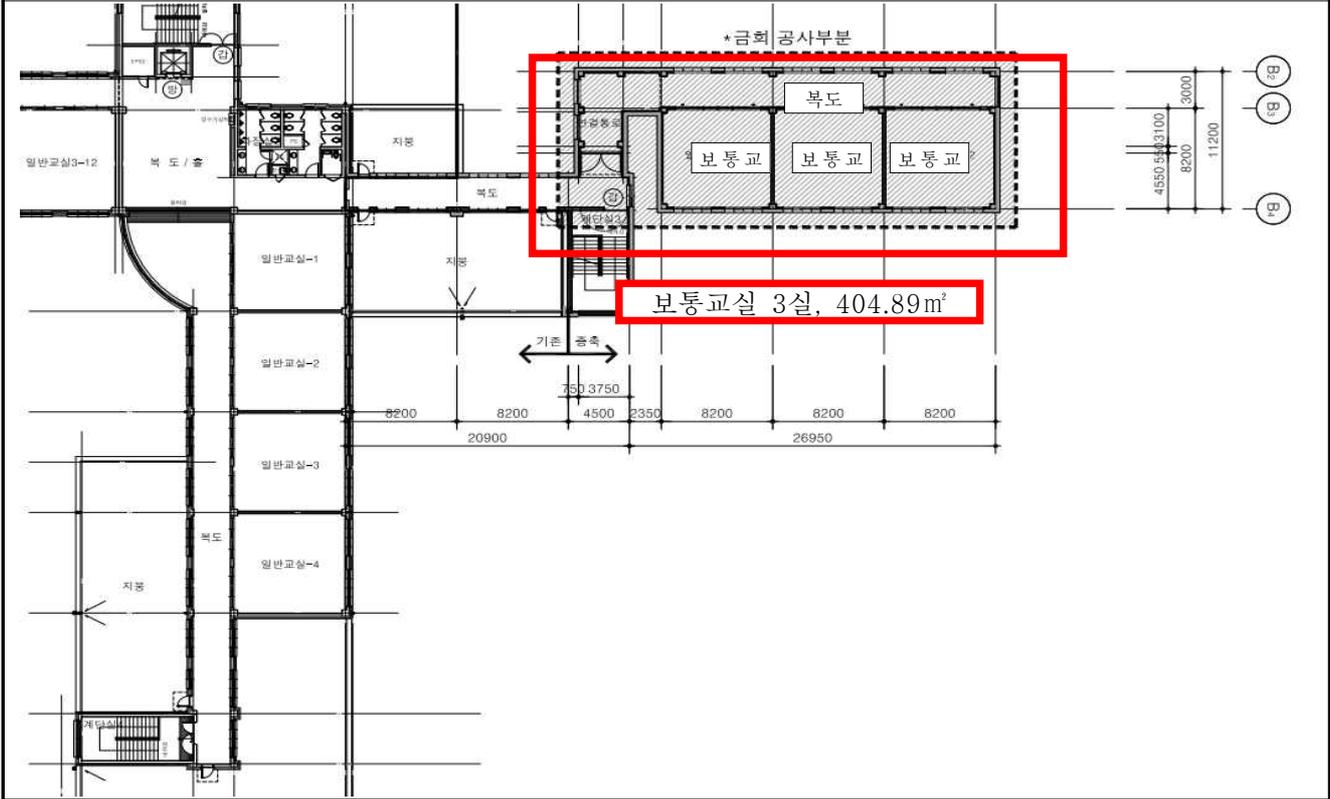
7. 평면도 3층(보통교실 3실 증축)



8. 평면도 4층(보통교실 3실 증축)



9. 평면도 5층(보통교실 3실 증축)



서산중앙고등학교 보통교실 증축안

1. 사업기간: 2023. 1. ~ 2024. 10.(1년 10월)
2. 위 치: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173-2 외 2필지
3. 규 모: 건물 945㎡(지상 2층)
4. 학교현황: 학급수 34학급(특수 6학급 포함), 학생수 774명(특수 45명 포함)
5. 사 업 비: 총 2,337백만 원(건축비 2,337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1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계	2,337	181	2,156	0	
보통교부금	2,337	181	2,156	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4.03.05. 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증축	729	45	28	6	2024.10.	0	945	0	2,337	2,337

※ 총사업비 2,422백만 원(증축비 2,337백만 원, 비품구입비 85백만 원)

※ 당초 사업비 1,968백만 원, 변경 사업비 2,337백만 원, 증가 369백만 원

6. 사업목적(필요성)

- 2023학년도부터 서산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수 증가*에 따라 보통교실 증축을 통해 증가하는 학생 배치 여건 조성

* 2023학년도 신입생 대비 2024년 113명, 2025년 69명, 2026년 149명, 2027년 188명, 2028년 290명 증가

-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은 학교장 전형(천안, 아산 제외)으로, 인근 지역(당진, 홍성, 예산) 신입생도 지속적 증가 추세임

【참고 1】 연도별 고등학교 신입생 증가 추이

(2023~2028 중기학생배치계획 기준)

구분	현재학년	고1	중3	중2	중1	초6	초5	초4	초3	초2	초1
	입학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서산	학생수	1,598	1,711	1,667	1,747	1,786	1,888	1,706	1,717	1,733	1,582
	현 고1 대비		113	69	149	188	290	108	119	135	-16
당진	학생수	1,497	1,580	1,647	1,850	1,895	1,881	1,821	1,821	1,887	1,833
	현 고1 대비		83	150	353	398	384	324	324	390	336
홍성	학생수	889	878	820	931	1,047	1,125	1,019	1,003	961	1,007
	현 고1 대비		-11	-69	42	158	236	130	114	72	118
예산	학생수	844	584	679	681	726	677	600	579	589	465
	현 고1 대비		-260	-165	-163	-118	-167	-244	-265	-255	-379

※ 홍성 예산지역은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입주 계획에 따라 학생 수 지속 증가 예상

- 또한, 서산지역 중학교 졸업생은 관내 고등학교 진학 비율이 높고,
- 서산 동지역 3개 고등학교 중 단성인 서산여자고등학교와 서령 고등학교(사립)에 비해 서산중앙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함
- 서산지역의 안정적인 학생 배치, 적정 학급당 학생 수 유지를 위한 학급증설과 보통교실 확보가 시급함

【참고 2】 최근 5년 간 서산지역 고등학교 입학생 분석

입학연도	신입생 (매년 3.5)	유입학생			관내진학 인원(비율)
		타시군 인원	타시도 인원	소계 인원(비율)	
2023	1,627	75	5	80(4.9%)	1,547(95.1%)
2022	1,413	90	8	98(6.9%)	1,315(93.1%)
2021	1,260	67	11	78(6.2%)	1,182(93.8%)
2020	1,414	58	14	72(5.1%)	1,342(94.9%)
2019	1,389	65	10	75(5.4%)	1,314(94.6%)

* 충남 서북부 동일시군 진학률: 천안(90.2%), 아산(89.9%), 당진(97%), 예산(65.4%), 홍성(74.1%), 태안(88.5%)

7. 사업내용

- 서산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증가에 따라 서산중앙고 교사동 본동 옆 주차장 부지에 보통교실 6실 증축
- 2023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연도별 일반계(보통과) 2학급씩 총 6학급을 증설하기 위해 기존 특별교실을 보통교실로 우선 전환하고, 2024년 10월까지 보통교실 6실 준공 후 활용 예정
- 서산중앙고등학교 보통교실 증축(안)이 2022년 제3회 충청남도 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증축면적 945㎡, 사업비 1,968백만 원)
- 그러나, 2023년 본예산에 보통교실 6실 증축비용을 반영하여 교실 증축을 위한 공공건축심의 등을 거쳐 2023년 10월 설계완료되었으나, 설계도서 검토 및 계약심사 등의 절차 이행으로 입찰공고 시점인 2024년 시설사업 기준단가로 사업비를 변경하여 증축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
- 사업(시설)규모 변경내역

시기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면적	보통교실 6실(945㎡)	보통교실 6실(945㎡)	
사업비	1,968백만 원	2,337백만 원	369백만 원

- 시설규모(보통교실 6실, 지상 2층)

구분(층)	내용
1	보통교실 3실, 화장실 1실, 계단실 1.5실, 필로티
2	보통교실 3실, 화장실 1실, 계단실 2실
계	보통교실 6실

8. 사업비(기준가격) 변경 내역

- (시설사업 기준단가 변경) 최초 예산 편성시 2022년 시설비 예산편성 단가 기준으로 2023년 본예산 편성
- 기준가격(금액) 당초 1,968백만 원 대비 369백만 원이 증가한 2,337백만 원으로 변경(18.7% 증가)
- 사업비 증액에 따라 20억 원 초과 ⇒ 중요재산에 해당(공유재산관리 계획 대상)
- 사업비(단가) 변경 주요 내역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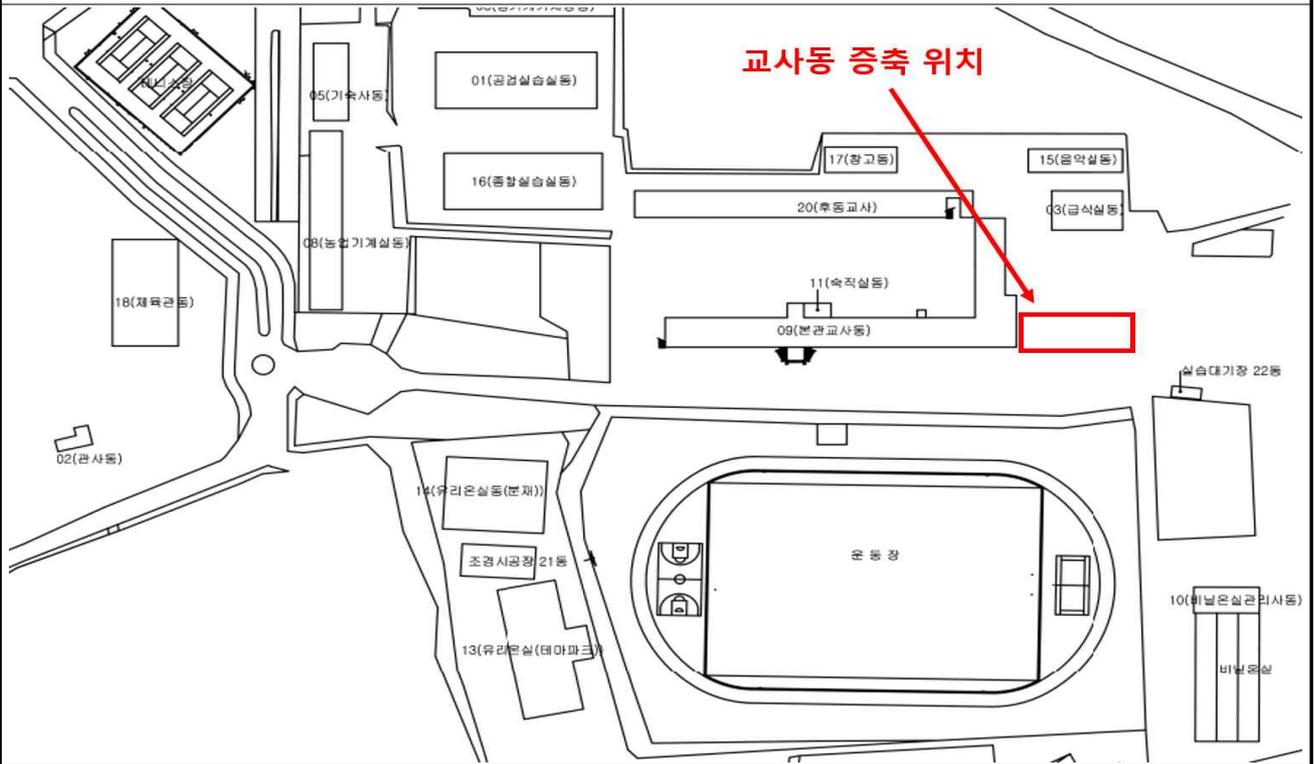
구 분	당초(6실 증축)		변경(6실 증축)		증감		
	물량	금액(A)	물량	금액(B)	물량	금액(B-A)	증감률(B-A)/A×100
보통교실	6실	955	6실	1,151	변동 없음	369	18.7%
계단실	3.5실	454	3.5실	539			
화장실	2실	285	2실	339			
옥내소화전	2개소	9	2개소	11			
포장(블록)	1,000m ²	83	1,000m ²	100			
배수로 (콘크리트)	200m	73	200m	88			
설계비 등 부대비		109		109			
계		1,968		2,337			

9. 추진경과

- 2022.06.15. 보통교실 확보를 위한 서산중양고 방문 협의
- 2022.07.08. 2023학년도 이후 학급증설에 따른 보통교실 확보 및 교실증축 계획 제출 안내(학교지원과-4899)
- 2022.07.13. 2023학년도 이후 학급증설에 따른 교실증축 계획 제출 (서산중양고-11832)
- 2022.07.14. 2023학년도 서산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정원 의견수렴회 개최(학교지원과-4887, 2022. 7. 7., 고등학교 교감 대상)
- 2022.08.18.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보통교실 6실 증축)
- 2022.12.18. 2023년 본예산 확정(금1,027,699천 원)
- 2023.05.24. 공공건축심의 운영 결과 적정(행정과-15325)
- 2023.06.19. 설계용역 착수(용역기간: 120일)
- 2023.10.16. 설계용역 완수(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검토)
- 2023.12.11. 계약심사요청(행정과-36972)
- 2024.01.11. 서산중양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입찰공고
- 2024.01.30. 교실 증축공사 적격심사결과 보고 및 계약결의
- 안전성평가 진행중이며, 평가 종료 후 착공 예정
- 2024.02.14.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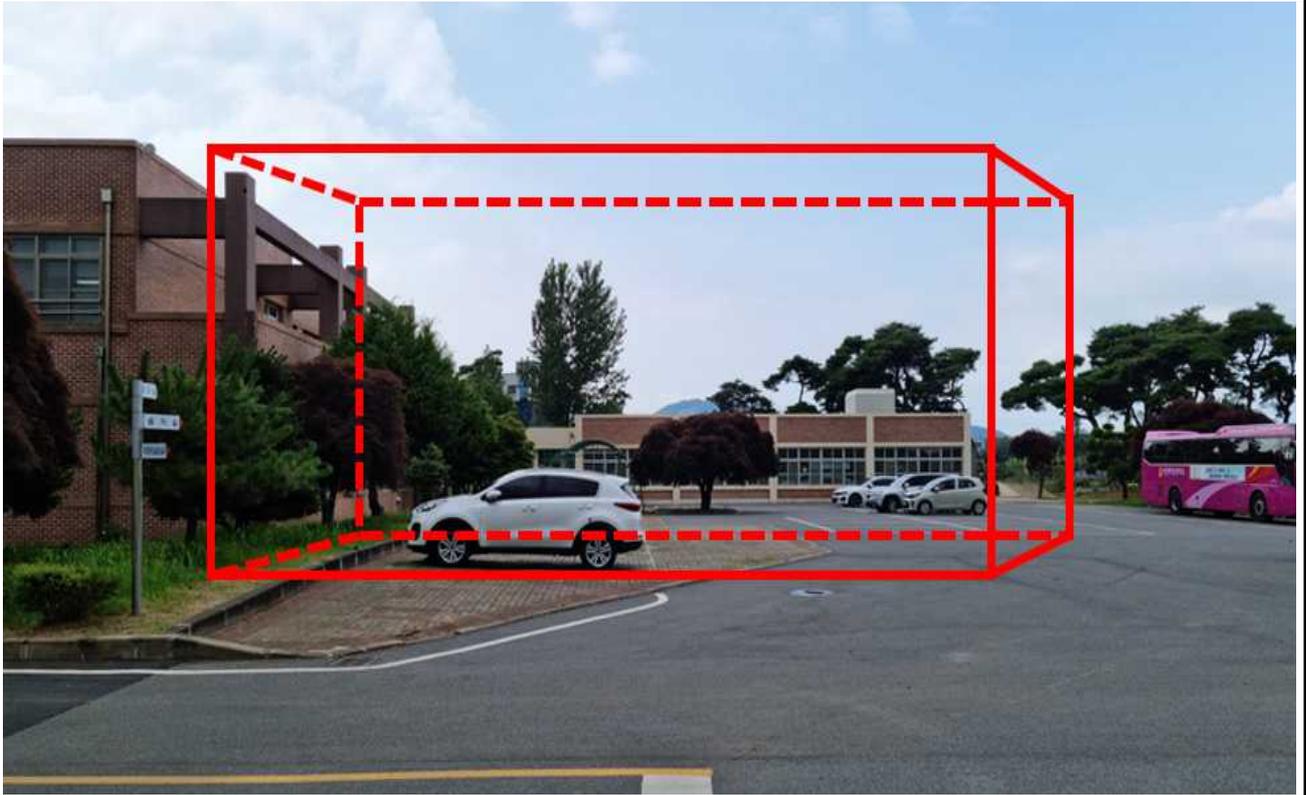
1. 배치도: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173-2 외 2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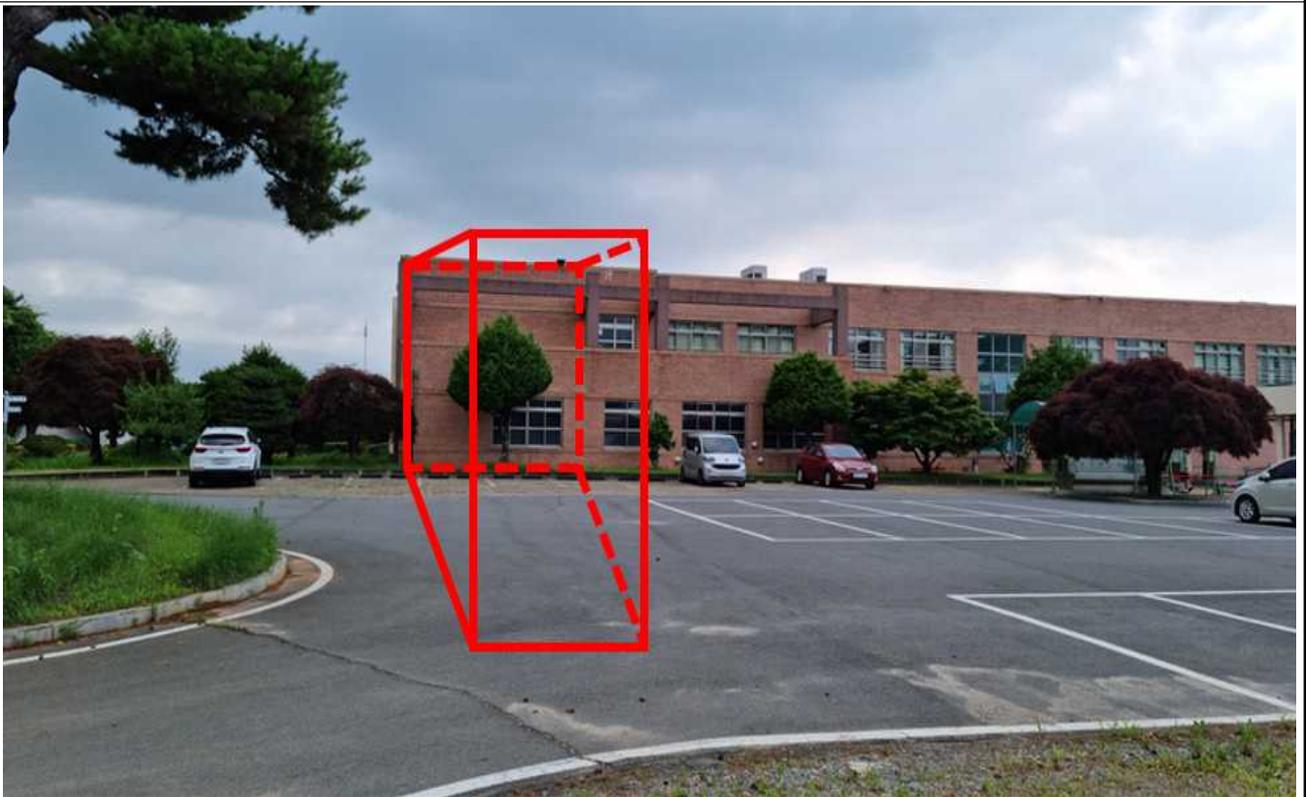
2. 위성사진



3. 전경사진(1)



4. 전경사진(2)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삼봉초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안

□ 교사동 처분(안)

1. 관련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2023년도 교육부 국책사업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선정(2022.09.29.)

2. 처분 사유

- 삼봉초등학교 주1동(본관동)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좌측 8실(조적조RC, 799.2㎡) 부분은 내진보강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어 충청남도 교육청 구조안전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안전등급 D등급으로 확정 (2023. 10. 27. 구조안전 위험시설 지정)
- 주1동(본관동) D등급 확정 면적 외에, 주1동(본관동) 중앙계단(68.93㎡)과 주6동 화장실동(29.7㎡) 및 주7동 엘리베이터실(18.6㎡)은 개축 시 적정 배치에 장애가 되고 부지활용에 지장을 초래하여 D등급 구간과 함께 철거 후 개축하고자 함

3. 처분 내역

○ 건물

(단위: ㎡, 백만 원)

소재지	명 칭	취득일자	전체면적	처분면적	기준가격	대장가격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1722-1	1동	1969.12.30.	2,097.9	868.1	101.5	161.8
	6동	2000.12.22.	29.7	29.7	6.8	30.3
	7동	2011.09.07.	18.6	18.6	3.8	179.5
	계			2,146.2	916.4	112.1

□ 교사동 증·개축(안)

1. 사업기간: 2023. 3 ~ 2026. 2.(3년)
2. 위 치: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1722-1
3. 규 모: 건물 978.32㎡[개축 916.43㎡(1동, 6동, 7동), 증축 61.89㎡]
4. 학교현황: 학급수 7학급(특수 1학급 포함), 학생수 71명 (특수 5명 포함)
5. 사 업 비: 총 4,153백만 원(건축비 4,153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70.0%, 국고보조금 3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4,153	160	3,197	796	
보통교부금	2,906	112	2,237	557	
국고보조금	1,247	48	960	239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4.03.05. 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증개축	66	5	6	1	2026.02.	0	978.32	0	4,153	4,153

※ 총사업비 7,713백만 원(증개축비 4,153백만 원, 리모델링비 3,560백만 원)

6. 사업목적(필요성)

- 삼봉초등학교 주1동 본관동은 54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로 교육부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선정되어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기획하고 미래교육과정에 대응하는 공간 구축이 요구됨
- 삼봉초등학교는 난지분교를 함께 운영하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학교로, 개축 및 리모델링을 통하여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진입 동선 및 수직 동선을 개선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형 학교시설을 구축하고자 함

7. 사업내용

가. 그린스마트스쿨 기획: 전체면적 2,718.15㎡(증·개축 978.32㎡, 리모델링 1,739.83㎡)

○ 주1동 본관동 증·개축

- 1969년 준공 후 총 7회에 걸쳐 증축하였으며 연면적 2,097.96㎡ 중 D등급 영역 868.13㎡ 개축, 그 외 부분 1,229.83㎡은 리모델링 추진
- 안전등급 D등급으로 평가받은 본관동 좌측 8실(조적조+RC, 799.2㎡) 구간 개축을 통해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진입 동선과 수직동선을 개선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 삼봉초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서실을 본관동으로 옮겨 1층에 복합공간 조성(독서+놀이+휴게공간)
- 주1동과 주2동을 연결하는 통로(계단) 증축(61.89㎡)을 통해 이용 편의성과 공간 효율성을 고려한 공간 조성

○ 1동 및 2동 교사 리모델링[1동 1,229.83㎡, 2동 510.0㎡]

- 마루, 복도창호, 내부도장, 통신시설 보수, 냉난방 및 환기 설비 설치 및 외벽 마감재 교체 및 창호 개선
- 주2동 후관동 1층의 식당 일부 공간 구분을 통해 실과실(카페겸용) 및 관리실로 변경하고 2층의 도서실 및 컴퓨터실을 3개의 특별 교실로 재구조화

나. 사업량

(단위: ㎡)

구 분	동 별	개 축	증 축	리모델링	비 고
그린스마트 스쿨	1동(본관동)	868.13	0	1,229.83	
	2동(후관동)	0	0	510.00	
	6동(화장실)	29.70	0	0	
	7동(E/V 실)	18.60	0	0	
	연 결 통 로	0	61.89	0	
합 계		916.43	61.89	1,739.83	총 2,718.15

○ 시설규모 (삼봉초등학교 사전기획 Space program 결과)

- 1) 금차 사업 범위 연면적은 2,718.15㎡로 계획
- 2) 증·개축: 978.32㎡, 리모델링: 1,739.83㎡
- 3) 존치시설
 - 강당+식당+조리실+유치원+관사공용면적: 1,586.09㎡
- 4) 사전기획 최종 연면적: 4,304.24㎡(2,718.15㎡ + 1,586.09㎡)
- 5) 시설별 현황

구 분		실수	면적(㎡)	비고	
교수 학습 공간	스마트공용교실	종합교실	6	394.20	
		일반교실			
	특수학급	교실	1	65.70	
	과학실		1	90.00	
	음악실		1	70.88	
	미술실(메이커스페이스 통합)		1	90.00	
	실과실(요리교실, 카페 통합)		1	85.00	
	다목적교실(방과후교실)		1	57.94	
	유치원		1	180.00	
교수 학습 지원 공간	드라마실		1	70.88	
	컴퓨터실(시청각실 통합)		1	65.70	
	도서실		1	90.72	
	실내체육관		1	710.67	

	구 분	실수	면적(m ²)	비고
생활 및 복지 지원 공간	교사휴게실	1	43.56	
	학생자치회실	1	32.85	
	식당	1	219.81	
	조리실	1	120.50	
	동아리실	1	44.89	
	들봄교실	1	60.48	
관리 및 행정 공간	교장실	1	30.24	
	행정실	1	32.85	
	교무지원센터	1	60.48	
	방송실	1	60.48	
	보건실	1	30.24	
	전산(성적처리)실	1	17.63	
	문서보관실	1	17.63	
	상담실	1	30.24	
	관리실	2	35.00	
	창고	3	82.26	
	관사	1	70.04	
공용 공간	출입+통행+위생+서비스 등		1,048.37	
	커먼스+러닝허브		295.00	
계			4,304.24	

8.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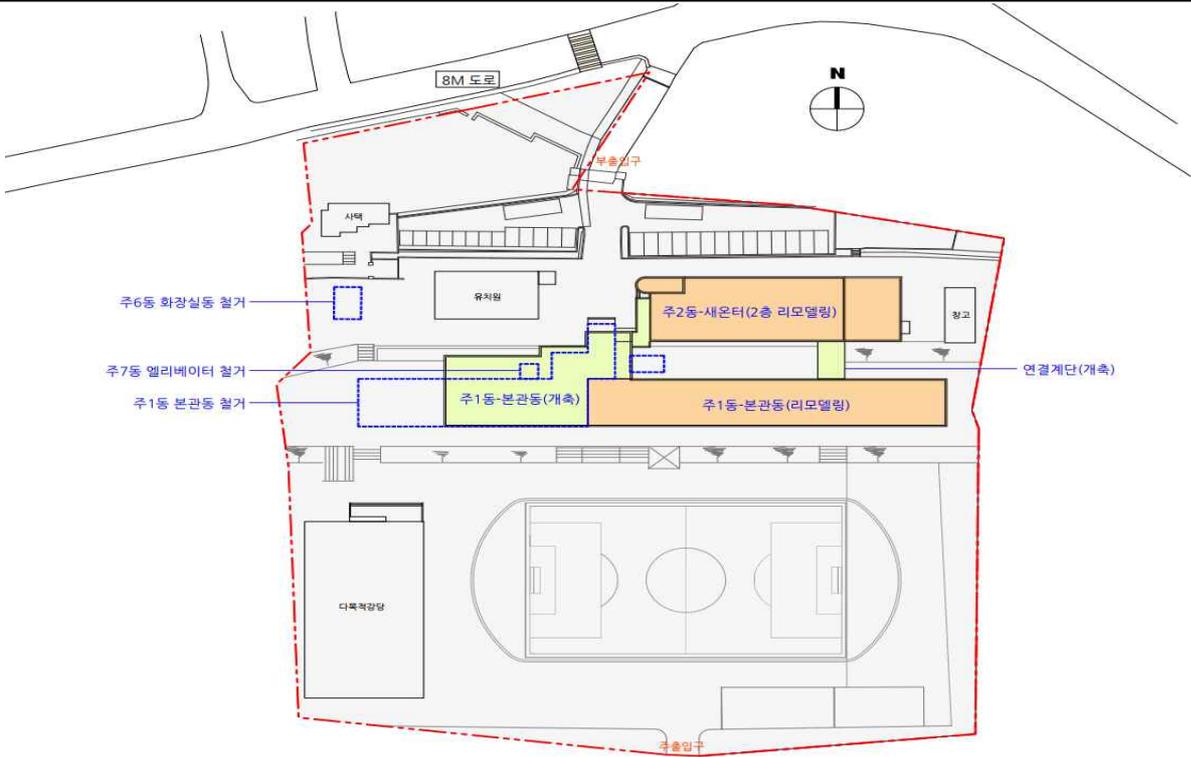
- 2022.09.29.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대상학교 선정 결과 알림
(교육부 미래교육추진담당관-3006)
- 2023.03.27.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전기획 용역 착수
- 2023.06.30. 삼봉초등학교 주1동 본관동 정밀안전진단 용역 완료
- 2023.09.26. 2023년도 제6회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2023.10.27. 2023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 구조안전위원회
(원안가결)(안전총괄과-9888)
- 2023.12.19. 2023년도 제4회 충청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원안가결)
(시설과-7817)
- 2024.02.07. 2024년도 정기1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적정)

□ 위치도

1. 위치: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1722-1



2. 배치도



3. 전경사진(본관동 정면)



4. 전경사진(본관동 후면1)



5. 전경사진(본관동 후면2)



6. 전경사진(주6동 화장실)



천안지역 교직원 공동숙소 매입안

1. 사업기간: 2024. 1. ~ 2026. 12. (3년)
2. 위 치
 - 가. 2024년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479-2
 - 나. 2025년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61-5
 - 다. 2026년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1054
3. 규 모: 건물 4,562.4㎡(90세대, 1세대 계약면적 44.44㎡ ~ 57.08㎡)
4. 사 업 비: 총 10,500백만 원(건물매입비 10,500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10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 고
계	10,500	3,900	3,900	2,700	0	
보통교부금	10,500	3,900	3,900	2,700	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세대수	완료 시기	입주 시기	규 모		소 요 액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매입비	합 계
매입	90세대	2026.12.	2024. 7. ~ 2026. 12.	0	4,562.4	0	10,500	10,500

※ 건물 기준가격: 6,244백만 원(시가표준액)

5. 사업목적(필요성)

- (공동숙소 보유 근거 마련)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2022. 8. 10.)에 따른 시지역 공동숙소 보유 근거가 마련되어 천안지역 교직원 공동숙소 연차적 확충

- (교직원 근무환경 만족도 제고) 저경력자 및 장거리 출퇴근 교직원, 순환보직이 불가피한 소수 직렬 등 교직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1인 세대 숙소를 확보하여 교직원 근무환경 만족도 제고
- (천안지역 공무원 거주실태 조사) 2023년 천안지역 공무원 거주실태 조사 결과(2023. 5. 1. 기준), 타지역 거주자 1,186명 중 269명(22.7%)이 공동숙소 입주를 희망(전체 공무원 5,161명 중 269명(5.2%)이 입주 희망)

(2023. 5. 1. 기준, 단위: 명)

공무원 수			생활근거지				타지역 공무원 거주 형태			입주 희망 인원		
교원	일반직	전체	천안 관내	타지역			관외 출퇴근	임차 (전·월세)	기타	교원	일반직	계
				교원	일반직	계						
4,484	677	5,161	3,975	1,017	169	1,186	968	197	21	215	54	269
87%	13%		77%	20%	3%	23.0%	81%	17%	2%	80%	20%	(22.7%)

※ 거주 형태 중 기타: 친척 집, 지인 집, 단독관사 거주

6. 사업내용

- 편리한 생활 인프라와 쾌적한 환경을 갖춘 지역에 위치한 오피스텔 형태의 교직원 공동숙소를 2024년~2026년(3년간)까지 연차적으로 30세대씩 총 90세대를 동남구와 서북구에 균형 있게 매입하고자 함

○ 연차별 공동숙소 매입 대상

(단위: 백만 원)

매입 시기	구분	위치	건축년도	시세 (1세대당)	물량	총액
2024	DM센텀시티	서북구 불당동	2019.10.	130	30	3,900
2025	까뮤이스테이트 엔트리움	동남구 문화동	2022.11.	130	30	3,900
2026	천안백석 하우스스토리엔시티	서북구 백석동	2020.02.	90	30	2,700
합 계					90	10,500

7.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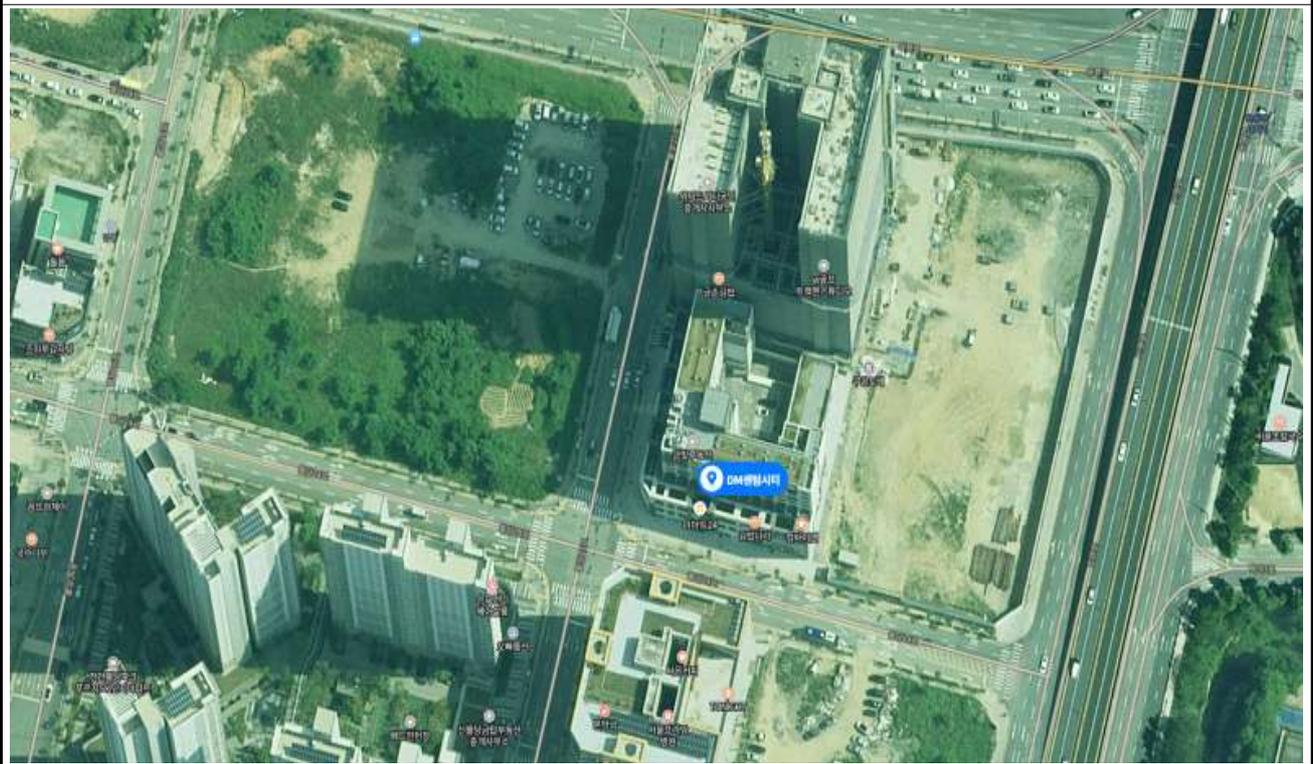
- 2021.03.01. 교직원 근무환경 및 공동숙소 수요 조사(재무과-3493)
- 2021.05.12. 2021~2023년 교직원 숙소 중기 개선 계획 안내
(재무과-9189)
- 2022.08.10.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 2022.08.27. 교직원 주거시설(숙소) 확보방향 안내(재무과-15528)
- 2022.09.07. 생활 안정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교직원 주거시설(숙소) 확충 계획 수립(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23997)
- 2022.10.13. 교직원 주거시설(숙소) 중기 확충 계획 안내(재무과-19202)
- 2022.12.21. 2022년도 제7회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2023.04.0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가결(목록삭제)(재무과-7746)
- 2023.05.01. 천안 관내 각급학교(기관) 공무원 거주실태 조사
(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13319)
- 2023.08.02. 교직원 공동숙소 확충 변경계획 수립
- 2023.08.10. 2023년도 제3회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23560)
- 2023.08.21. 교직원 공동숙소 매입 관련 재정투자심사 등 절차 이행
안내(재무과-16320)
- 2023.11.29. 2023년도 제4회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34682)
- 2024.02.07. 2024년도 정기1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적정)

□ 위치도

1. 위 치: DM센텀시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479-2



2. 위성사진(DM센텀시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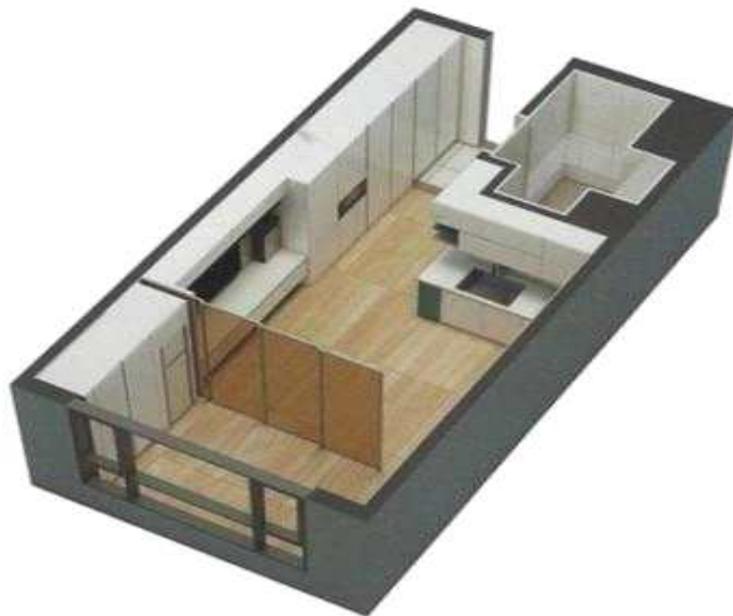
3. 전경사진(DM센텀시티)



4. 평면도(DM센텀시티)-계약면적 57.08㎡, 전용면적 26.81㎡ (약 8.1평, 1.5룸)

26m²A

전용면적 26.816㎡
공용면적 11.960㎡
공급면적 38.776㎡
기타공용 18.311㎡
계약면적 57.0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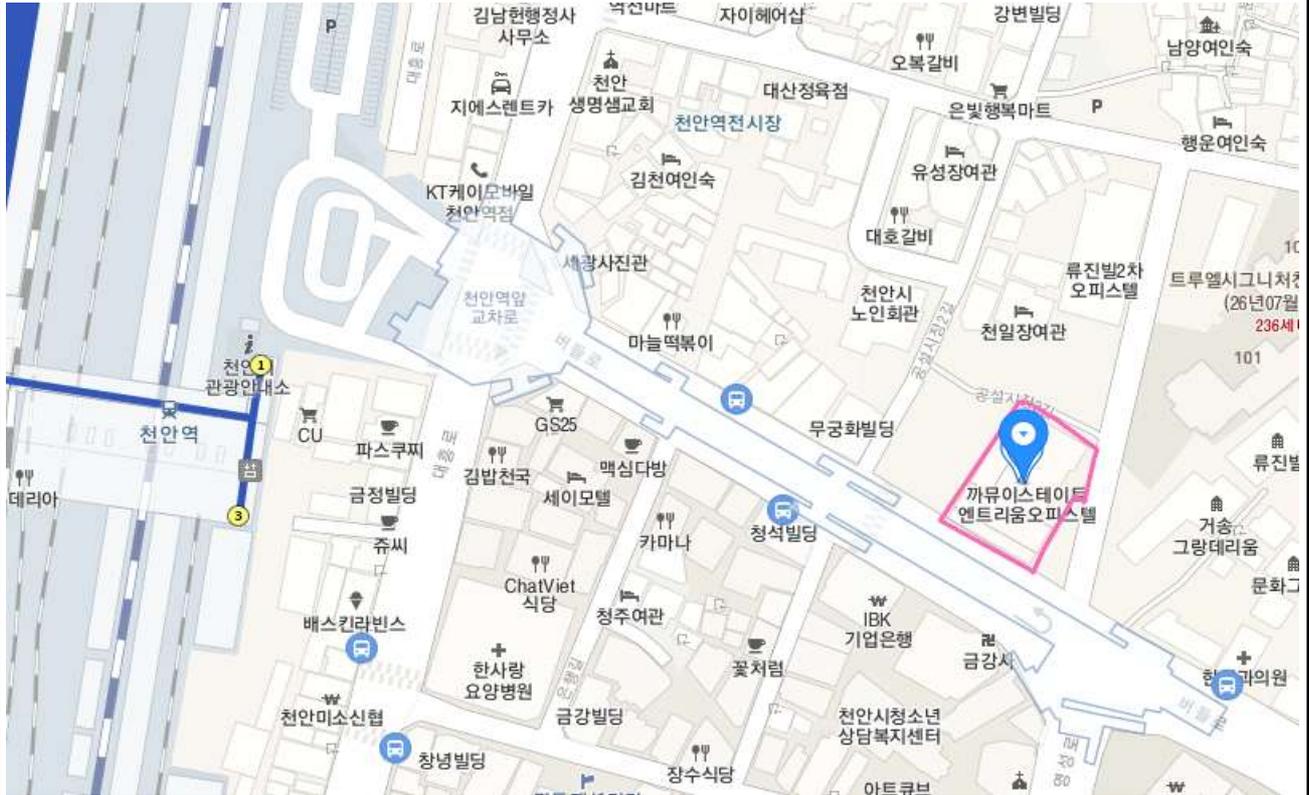
5. 내부사진(DM센텀시티)



6. 내부사진(DM센텀시티)



7. 위 치: 까뮤이스테이트엔트리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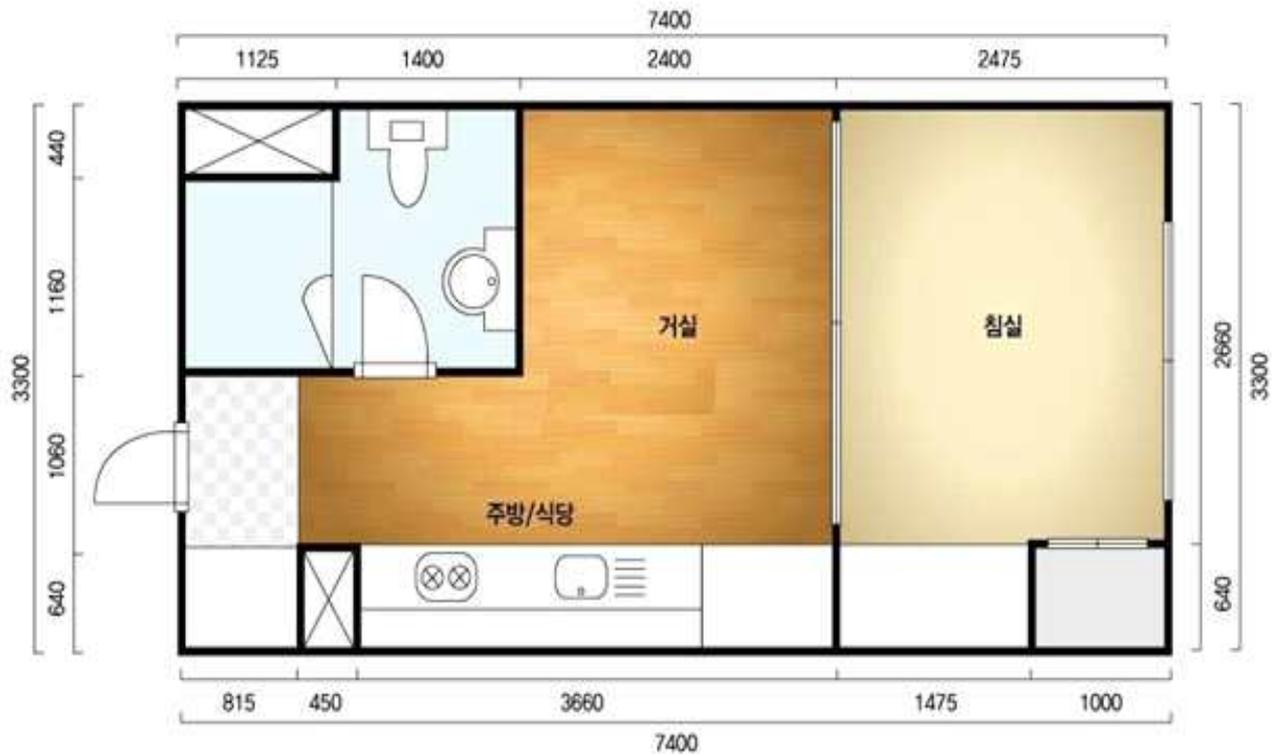
8. 위성사진(까뮤이스테이트엔트리움)



9. 전경사진(까뮤이스테이트엔트리움)



10. 평면도(까뮤이스테이트엔트리움)-계약면적 50.56㎡, 전용면적 21.05㎡(약 6.3평, 15룸)



11. 내부사진(까뮤이스테이트엔트리움)



12. 내부사진(까뮤이스테이트엔트리움)



15. 전경사진(천안백석하우스토리엔시티)



16. 평면도(천안백석하우스토리엔시티)-계약면적 444㎡, 전용면적 20.96㎡(약 6.3평, 1룸)



17. 내부사진 (천안백석하우스토리엔시티)



18. 내부사진 (천안백석하우스토리엔시티)



아산지역 교직원 공동숙소 매입안

1. 사업기간: 2024. 1. ~ 2025. 12.(2년)
2. 위 치: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17번지
3. 규 모: 건물 2,179.84㎡(계약면적 기준) 32세대, 1세대 계약 68.12㎡, 전용 28.93㎡
4. 사 업 비: 총 5,440백만 원(건물 매입비 5,440백만 원)

◇ 사업비 분담 : 보통교부금 10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5,440	2,550	2,890	0	
보통교부금	5,440	2,550	2,890	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매입세대수 (총 32세대)	입주 시기	규 모		소 요 액		
			부지	매 입 연면적	부지비	매입비	합 계
매입	15세대	2024.09.	0	2,179.84	0	2,550	2,550
	17세대	2025.03.	0		0	2,890	2,890

5. 사업목적(필요성)

- 사회적 생활기반이 미약한 신규공무원 및 저경력자는 작은 급여 대비 높은 주거비용으로 주거 불안정에 노출
- 순환보직자는 출퇴근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할애하게 되어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움
- 2022. 8. 10.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도시지역 공동숙소 보유 근거 마련

- 신설학교 설립에 따른 교직원 증원 등 잠재적 수요자의 근무여건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공동숙소의 필요성 제기

6. 사업내용

- 교직원 설문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은 원룸형 공동숙소* 확보를 위하여 1인 1세대의 오피스텔 매입

* 충남교육청 조사 결과(참여인원 4,902명): 원룸형 88%, 다인실 12% 선호

- 현재 최저주거기준 행정규칙⁶⁾에 의하면 1인 최저주거면적은 14㎡로 이를 고려하여 약 2배의 전용면적 28.93㎡(8.8평)을 매입하여 거실 겸 주방, 화장실, 침실로 구성된 건물 매입

- 건물 감가 등을 고려하여 24년 5월 입주 예정인 신축건물 260세대중 32세대를 매입(시설관리의 효율성 및 편리성 측면에서 관리사무소가 있는 오피스텔 매입 추진)

- 2021년 타지역 거주 공무원의 공동숙소 입주 희망자 수(170명) 대비 30% 확보(50세대)를 목표로 2024년 1차 15세대, 2025년 2차 17세대 등 연차적으로 총 32세대를 매입할 예정

※ 18세대는 신축 예정(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585-4)

6) 최저주거기준 행정규칙 제2조(최소 주거면적 등)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는 <별표>와 같다.

<별표>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	실(방) 구성	총주거면적(㎡)
1	1인 가구	1K	14

K는 부엌,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 연도별 공동숙소 확충 계획

(단위: 백만 원)

구분	2024년		2025		합계
	세대수	비용	세대수	비용	
신축			18세대	2,880	2,880
매입	15세대	2,550	17세대	2,890	5,440
계	15세대	2,550	35세대	5,770	8,320

※ 연도별 공동숙소 확충 계획은 변동 가능성 있음

○ 매입대상 건물규모(지하 5층, 지상20층, 260세대)

구분	세대수	면적(m ²)	비고
지하 1층~5층			지하 주차장(323대), 전기실, 기계실
지상 1층~2층		3,488	근린생활시설
지상 3층~20층	260세대	23,584	68.12m ² 타입: 119세대 중 32세대 매입
합계	260세대	27,072	

7.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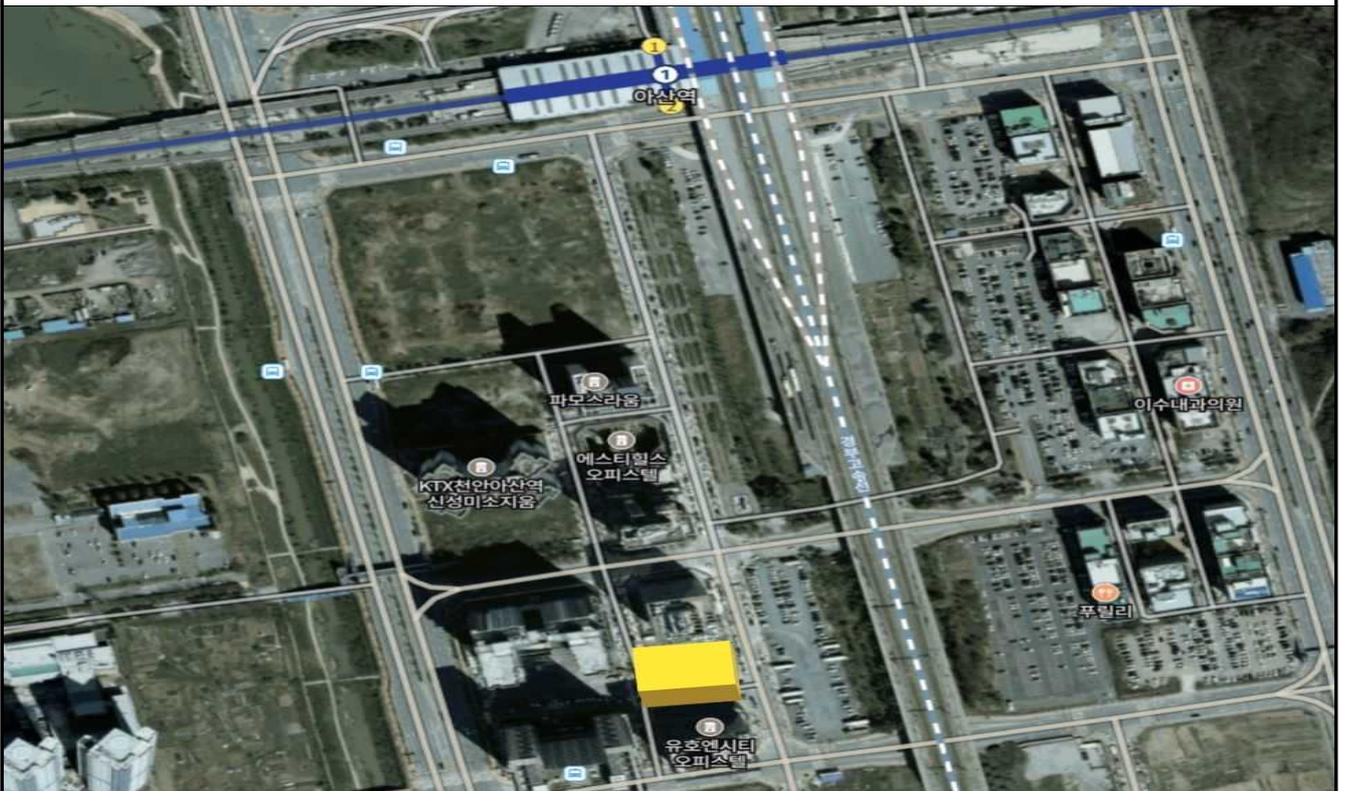
- 2022.08.08. 교직원 숙소 확충 계획에 따른 지역별 협의회
(충남교육청 재무과 주관)
- 2022.08.10.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 2022.08.23. 교직원 주거시설(숙소) 확보 방향 안내(재무과-15528)
- 2022.09.06. 교직원 공동숙소 확보 계획(안) 수립 및 확보계획 제출
(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19149)
- 2022.10.13. 교직원 주거시설(숙소) 중기 확충 계획 안내
(재무과-19202)
- 2023.08.09. 2023년도 제4회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2024.02.07. 2024년도 정기1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적정)

□ 위 치 도

1. 위 치: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17번지



2. 위성사진



3. 내부사진(1)



4. 내부사진(2)



5. 평면도: 전용면적 28.93㎡, 계약면적 68.12㎡

A-Type 전용면적 28.93㎡



신창중학교 이전적지 처분안

1. 사업기간: 2024. 1. ~ 2024. 8. (8개월)
2. 위 치: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 268-4번지 외 2필지
3. 규 모: 토지 35,995㎡, 건물 5,174.9㎡
4. 학교현황: 2024. 9. 1. 신설대체이전 개교 예정(2024.1.1.자 12학급, 315명)
5. 추정금액: 12,890백만 원

◇ 재산의 표시

(단위: ㎡, 백만 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명칭	면적/수량	기준가격	추정금액
토지	아산시 신창면	268-4	학교용지	28,482	2,711	6,717
		산105-4	임 야	7,240	141	
		산102-3	임 야	273	5	
소계(3필지)				35,995	2,857	6,717
건물	아산시 신창면	268-4	A동 본관	2,592.24	1,500	6,173
			B동 교사	432.15	151	
			C동 교사	558.32	256	
			D동 강당	491.98	180	
			E동 강당/급식실	996.71	577	
			F동 골프연습장	103.50	37	
소계(6동)				5,174.90	2,701	6,173
합계					5,558	12,890

6. 처분 사유

- 2022년도 정기 2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이전적지 매각대금을 사업비에 투자하는 조건부로 신창중학교 신설대체이전 심사를 통과하여 이전사업 추진 및 매각 기한(2024. 8. 31.) 이전에 신창중학교 이전적지를 처분하고자 함

※ 신창중학교 신설대체이전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4번지

- 현재, 신창중학교 이전적지 매각과 관련하여 아산시에서 다문화 교육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수의계약 협의 진행 중이나,
- 협의과정을 통해 아산시에 매각이 불가한 것으로 최종 판단될 경우,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매입 여부를 조회한 후 일반입찰 매각을 추진하고자 함

7. 추진경과

- 2022.04.23. 2022년도 정기2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조건부)
 - 신창중학교 신설대체이전적지 매각대금 사업비 투자
- 2022.08.10. 신창중학교 이전적지 매각 기본계획 수립(재무과-17258)
- 2022.09.26. 신창중학교 이전적지 매각 관련 아산시와 1차 협의
- 2022.11.30. 아산시 신창면 열린 간담회(신창중 이전적지 활용계획 협의)
- 2022.12. 간담회 결과 관련 검토사항 회신(10년 이내 분할 상환, 일부 사용)
- 2023.01.04. 신창중학교 이전적지 매각 관련 아산시와 2차 협의
- 2023.08.10. 2023년도 제4회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 가결)
- 2023.11.23. 신창중학교 이전적지 매각 관련 아산시와 3차 협의
- 2023.12.05. 신창중학교 이전적지 매각 관련 현장 확인 (아산교육장, 아산시장)
- 2024.01.18. 아산시 ‘신창중 이전적지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이자 면제’ 검토 의뢰
- 2024.01.30. 신창중 이전적지 매각대금 10년 분할상환 시 이자 면제에 관한 사항 회신

- 매각대금 일시 납부 곤란하다 인정되는 경우 이자 붙여 10년 이내 분할납부 가능⁷⁾
- 신창중학교 이전적지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이자 면제 불가⁸⁾
- 매각재산 일부 사용 시 이자 면제 불가하고 점유·사용 범위 고려하여 이자 징수범위 결정⁹⁾

○ 2024.01.~02. 신창중 이전적지 매각 추진상황 보고·협의

- 지역구 국회의원, 아산시의회, 지역 도의원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9) 각주 2)와 동일

□ 위치도

1.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 268-4 외 2필지



2. 위성사진



3. 전경사진(1)



4. 전경사진(2)



화양초등학교 울타리 밖 토지 매각안

1. 사업기간: 2023. 7. ~2024. 5.(11개월)
2. 위 치: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447번지 등 총 19필지
3. 규 모: 토지 19필지 13,830㎡
4. 관리기관: 화양초등학교(학급수 7학급, 학생수 30명)
5. 추정금액: 419백만 원(토지매각비 419백만 원)

◇ 재산의 표시

(단위: ㎡, 백만 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토지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447	답	2,596	43.61	85.66
		447-1	답	19	0.10	0.20
		447-2	답	28	0.15	0.30
		447-3	답	216	1.18	2.37
		447-4	답	37	0.52	1.22
		448-3	답	70	0.38	1.05
		448-4	학교용지	233	1.27	3.49
		451-1	답	1,805	30.32	59.56
		451-3	답	97	0.53	1.45
		452-1	답	4	0.02	0.06
		453-1	답	3,051	49.12	97.63
		453-3	답	11	0.06	0.16
		482-4	답	47	0.25	0.70
		482-5	학교용지	91	0.49	1.36
		482-7	학교용지	70	0.38	1.05
		482-8	학교용지	167	0.91	2.50
		483-1	답	5,151	81.90	159.68
		483-8	답	54	0.29	0.54
		484-3	답	83	0.45	0.83
합계(19필지)				13,830	211.93	419.81

6. 사업목적(필요성)

- 서천군은 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소멸을 방지하고, 귀농·귀촌, 초·중학교 전입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고, 화양초등학교 관리토지를 사업부지로 희망

- 서천군은 2023년 마산면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 국고 보조사업비 30억 원(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아 화양면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4년 화양초등학교 인근 유희부지에 공공임대주택 10호를 공급하여 도시민의 농촌형 교육 요구 대응 모델 및 농촌학교 살리기 대안정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마산면, 화양면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결과에 따라 2027년까지 서천군 내 총 9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

- 대상 토지는 화양초등학교 울타리 밖 관리 토지로, 향후 교육목적 활용 가능성이 적음
- 해당 공공임대주택은 서천군 이외 지역 거주지로 등록된 취학아동 1인 이상의 세대가 입주대상자이며, 임대주택 10호 공급 시 10~15명의 학생 유입이 예상되어 화양초등학교 학교교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인구 절벽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에 대비해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시기적절한 대안사업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완공으로 마을과 학교의 동반 성장 사례로 돋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7. 사업내용

- 서천군에서 지방소멸대응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학교 인근 임대주택 10호 공급] 부지로 활용토록 화양초등학교 울타리 밖 미활용 토지 13,830㎡ 매각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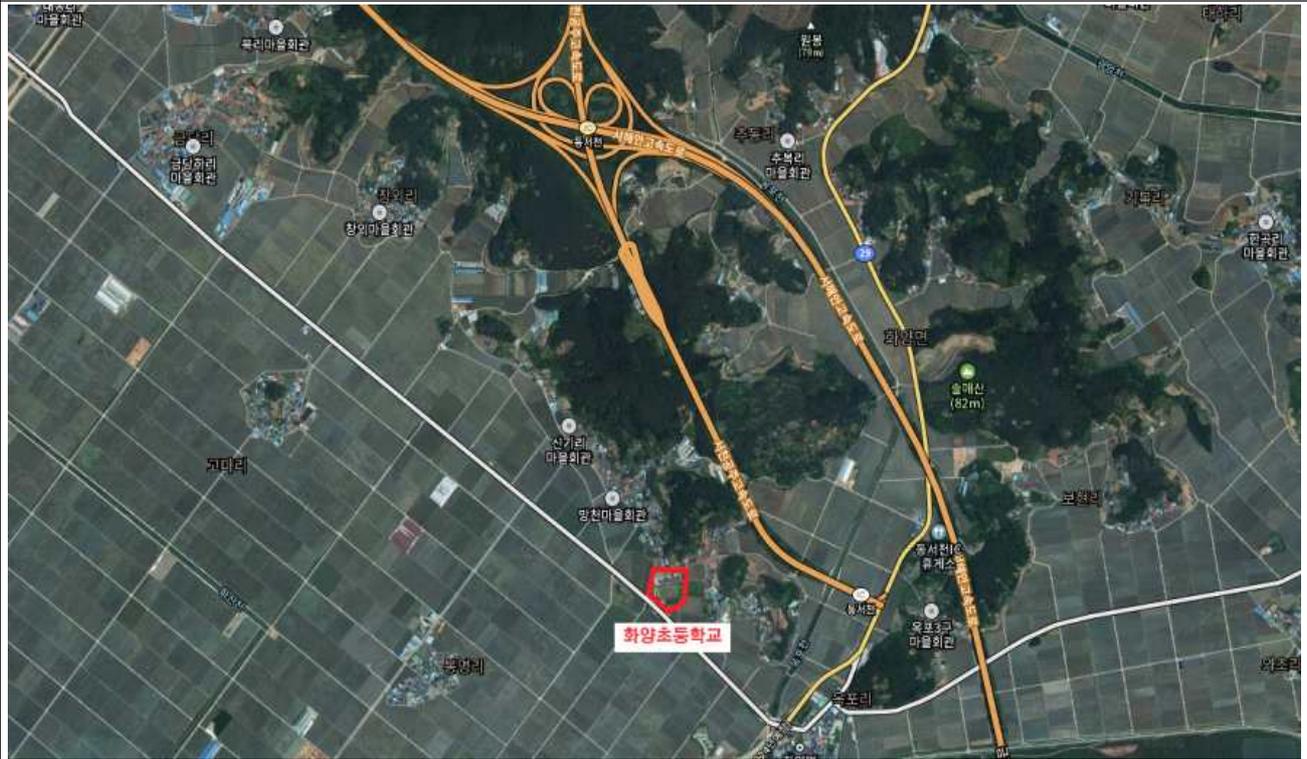
- 계약방법: 서천군과 교육지원청에서 각각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고, 2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수의계약 매각 추진

8. 추진경과

- 2022.08.23. 서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확정
- 2023.08.01. 토지 매입(화양면 옥포리 447 등 총 6필지) 협조 요청 (서천군 도시건축과-7143)
- 2023.08.02. 매각 후 효용가치 하락 예상되는 잔여지 추가적 필지 매각 협의 필요 회신(서천교육지원청 행정과-17458)
- 2024.01.11. 화양면 농촌보급자리조성사업 추진계획 및 편입용지 조서 송부(서천군 도시건축과-1670)
 - 화양면 옥포리 447 등 총 19필지(잔여지 포함)
- 2024.01.26.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위 치 도

1. 위 치: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봉명리 132-2(화양초등학교)



2. 위성사진(매각대상 토지 현황)



3. 현장사진(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447 등 총 19필지)



4. 현장사진(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447 등 총 19필지)



5. 현장사진(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447 등 총 19필지)



6. 현장사진(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447 등 총 19필지)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 ⑥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 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 가. 단독주택:「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 나. 공동주택:「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기숙사 및 급식실 증축 변경안 등 11건의 공유재산 취득

2. 비용 발생 요인

- 가칭 탕정8초등학교 등 학교 3건 신설
- 충청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1건 설립
-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기숙사 및 급식실 등 5건 증·개축
- 천안지역 교직원 공동숙소 등 2건 매입

3. 관련조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4. 비용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 1건당 기준가격 20억 원 이상 재산(토지, 건물)과 6,000㎡ 이상 토지
- 추계 결과
 - 의존재원(보통교부금, 국고보조금, 지자체전입금) 259,417백만 원
 - 사업시행자(기부채납) 6,591백만 원
- 재원조달방안
 - 보통교부금 236,307.5백만 원, 국고보조금 3,487백만 원,
지자체전입금 19,622.5백만 원, 사업시행자(기부채납) 6,591백만 원
 - 2023년도 310백만 원, 2024년도 31,700백만 원, 2025년도 182,430백만 원,
2026년도 45,040백만 원, 2027년도 6,528백만 원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6.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국 재무과장 남도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백만 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세 입	310	31,700	182,430	45,040	6,528	266,008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기숙사 및 급식실 증축 변경	129	240	9,048	0	0	9,417
가칭 탕정 8 초등학교 신설	0	8,340	47,199	9,626	0	65,165
가칭 탕정 4 중학교 신설	0	6,582	39,149	6,582	0	52,313
가칭 한여울 학교 신설	0	1,542	32,063	24,886	6,528	65,019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청원 설	0	6,000	31,762	450	0	38,212
천안가람초등학교 교사동 증축	0	230	6,631	0	0	6,861
천안용곡중학교 교사동 증축	0	0	6,591	0	0	6,591
서산중앙고등학교 보통교실 증축	181	2,156	0	0	0	2,337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삼봉초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	0	160	3,197	796	0	4,153
천안지역소 교직원공동숙 매입	0	3,900	3,900	2,700	0	10,500
아산지역소 교직원공동숙 매입	0	2,550	2,890	0	0	5,440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세 출	310	31,700	182,430	45,040	6,528	266,008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기숙사 및 급식실 증축 변경	129	240	9,048	0	0	9,417
가칭 탕정8초등학교 신설	0	8,340	47,199	9,626	0	65,165
가칭 탕정4중학교 신설	0	6,582	39,149	6,582	0	52,313
가칭 한여울학교 신설	0	1,542	32,063	24,886	6,528	65,019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청원	0	6,000	31,762	450	0	38,212
천안가람초등학교 교사동 증축	0	230	6,631	0	0	6,861
천안용곡중학교 교사동 증축	0	0	6,591	0	0	6,591
서산중앙고등학교 보통교실 증축	181	2,156	0	0	0	2,337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삼봉초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	0	160	3,197	796	0	4,153
천안지역소 직원공동숙소 매입	0	3,900	3,900	2,700	0	10,500
아산지역소 직원공동숙소 매입	0	2,550	2,890	0	0	5,440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재원 조달		310	31,700	182,430	45,040	6,528	266,008
의존 재원	소 계	310	31,700	175,839.0	45,040	6,528	259,417.0
	보통교부금	310	31,412	153,256.5	44,801	6,528	236,307.5
	특별교부금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288	2,960.0	239	0	3,487.0
	전 입 금	0	0	19,622.5	0	0	19,622.5
	기 부 금	0	0	0	0	0	0
자체 수입	소 계	0	0	0	0	0	0
	자체수입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사업시행자 (기부채납)		0	0	6,591.0	0	0	6,591.0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4년 2월 20일 박정식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4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739호
- 제 출 자: 박정식 의원
- 제출일자: 2024년 2월 20일
- 회부일자: 2024년 2월 26일

2. 제안 이유

-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는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 지방자치법 제28조를 위반하고 있음
- 현 조례에는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 교사의 권리는 없고 오직 학생의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교육기본법」에 상충되는 규정들로 인해 교육과 윤리의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 시킴

-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성소수자 학생·임신·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차별받지 않는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학교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중요한 시기의 학생에게 잘못된 인권개념을 추종하게 함
- 학생의 권리만을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함

4. 검토 의견

-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는 2020년 6월 2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수정가결되어 충청남도조례 제4780호(2020.7.10.)로 제정됨
- 이후, 2023년 12월 15일 제348회 정례회에서 폐지되었다가, 2024년 1월 3일 충청남도교육감의 재의요구로 2024년 2월 2일 제349회 임시회에서 부결 처리되어 존치되었음
- 본 조례안은 제정 이후 존치와 폐지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고 현재 조례가 제정된 타시도¹⁰⁾의 상황 역시 많은 견해차가 있으며, 다수의 전문가조차도 조례의 개정 및 존치, 폐지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10) 학생인권 관련 조례 제정 교육청: 서울, 인천, 광주, 경기, 전북, 충남, 제주 (7개 교육청)

- 또한, 헌법과 상위법령들과의 관계, 조례의 폐지로 학생 인권의 실현 가능성, 교권 침해와의 관계, 학생인권옹호관의 근거 등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주장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 이처럼 조례의 존치와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찬반 입장¹¹⁾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고, 사회적 쟁점화되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참고 사항

- 가.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 나.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2024.2.16.,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다. 부패영향평가: 평가대상 아님(2024.2.16., 감사관)
- 라. 규제심사: 해당되지 않음(2024.2.16., 정책기획과)
- 마.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2024.2.16., 예산정책담당관-577)

11) 조례안 예고(2024. 2. 26.~ 3. 4.) 결과: 찬성 211, 반대 6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유아교육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생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충청남도 내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과 같은 조 제2항의 직원,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과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학생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 중 학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② 학생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③ 학생인권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등 학교 규정으로 최소화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학칙과 학교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인권을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등은 학생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③ 보호자는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며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해 학교와 협력해야 한다.

④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자유권

제5조(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학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

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신체의 자유) ① 학생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체벌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교직원과 학생은 서로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폭언을 사용하지는 안 된다.

③ 교직원은 학생에게 교육 목적과 무관한 일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7조(양심과 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이 학생에게 대답을 요구할 경우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제8조(표현과 집회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동기와 신념을 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 방법은 비폭력·평화적이어야 하고, 학교의 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다만, 학교 내 집회의 시간·장소는 학습권 보호와 학생 안전을 위해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학생은 자신의 주장을 담은 게시물을 학교 안에서 허용된 게시공간에 자유롭게 붙일 수 있다. 다만, 게시물의 내용은 다른 학생 또는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④ 학생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방과 후 교외 문화행사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9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 대하여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제10조(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 ① 학생은 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안전 확보와 건강보호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학생에게 목적과 이유를 밝힌 후 학생의 사생활이 보호되는 곳에서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일기장, 개인수첩 등 사적기록물 제출을 요구하거나 열람해서는 안 된다.

④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 등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교직원과 학생의 안전, 학교재산 보호를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교직원과 학생의 인권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제11조(정보접근권)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도서관 이용 규정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습활동 목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해

서는 안 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의 원활한 운영 및 학습권 침해의 방지를 위하여 학칙으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12조(정보열람과 공개청구권)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의 학교기록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학생은 자신의 교육복지권 등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학교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보호를 받을 권리) ① 학생은 학교에서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구조 및 보호조치와 피해회복을 위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학생을 발견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긴급구조 및 보호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⑤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제3항 및 제4항의 폭력을 신고한 학생을 적절하게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14조(징계에 대한 적법절차의 권리) ① 학생에 대한 징계절차는 학생인권을 존중하여 학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징계사유의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와 대리인 선임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교직원은 징계요구 전에는 학생을 잠재적 징계대상자 또는 비행행위자로 간주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학교의 장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 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해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징계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고해서는 안 된다.

⑥ 학교의 장은 징계학생에 대한 지도방법을 결정·집행할 경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제2절 평등권

제1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학교에서 배움과 학습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② 학생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년, 나이,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질병 이력, 실효된 징계, 교육과정 선호도 또는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재정을 집행함에 있어 학생, 학급 및 동아리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지원해서는 안 된다.

④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16조(성인지 교육의 실시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성인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그 성과를 반영하여 교육활동에서 성평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교직원은 성폭력 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학생지도 등 교육활동에서 편견을 나타내는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차별에 대한 이의제기) 학교의 장은 차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절 참여권

제18조(학생 등의 의견제출권) ① 학생의 의견은 학년이나 나이에 상관

없이 존중되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을 실시할 경우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제공한 후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교복, 앨범, 체육복 등을 선정할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제공한 후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

제19조(학생자치활동과 참여의 보장) ①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학생회, 학급회, 동아리 등 학생조직(이하 “학생자치활동조직”이라 한다)을 민주적으로 구성·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활동조직의 자율적 구성·운영 등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에 등록된 동아리에 대하여 예산 편성, 유희시설 배정, 강사지원 등에 관한 학생의 요구를 존중하여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아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학생자치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제한사유의 사전

통지, 소명기회의 보장, 학생자치활동조직의 의견 수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업성적, 실효된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활동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⑥ 학생자치활동조직의 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⑦ 학생자치활동조직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 예산 및 시설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활동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권리

4. 학생자치활동조직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받을 권리
5. 학교축제, 체육대회, 학예회 등의 기획·운영·평가에 참여할 권리

⑧ 학생회는 학생대표 기구로서 제7항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출할 권리
2. 학생총회, 대의원회의 등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
3. 학부모부담경비,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4.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예산 및 결산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5.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사항을

- 학교의 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의결에 참관할 권리
6. 다른 학교 학생회나 학생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내용을 협의할 권리

제20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학교규칙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학교규칙소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에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제21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자치활동조직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경우 제35조에 따른 충청남도학생인권의회를 통하여 학생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2조(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 및 학생의 교육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회 대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그 발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해야 한다.

제4절 교육복지권

제23조(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① 학생은 양질의 교육을 받고 학생 인권이 보장되는 적절한 복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에게 학원수강이나 과외학습 등 사교육을 받도록 권장할 수 없다.

③ 학교의 장은 수업에 필요한 학습지원 물품을 제공하고 학생이 학습자료 등을 준비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교직원은 교육활동 중 교육내용과 관련 있는 학생의 질문기

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⑤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에 없는 학교 안팎의 행사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⑥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 위기가정 학생, 예술·체육활동 학생 등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의 복지와 인권보호를 위하여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4조(쾌적한 교육환경과 건강권) ① 학생은 쾌적한 교실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실을 운영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화장실과 휴게시설 등 학교의 각종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교의 숲·화단 등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학교의 공간과 시설의 성인지적 설계와 설치를 통해 성평등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학생이 상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보장

해야 한다.

⑧ 학교의 장은 생리로 인한 고통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5조(학교급식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학교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선호도, 영양 등을 고려한 균형 잡힌 학교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가급적 친환경 식재료와 지역 농·축·수·임산물을 사용한 학교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④ 도지사과 교육감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질 좋은 학교급식을 지원해야 한다.

제26조(안전권) ① 학생은 신체, 생명, 재산 등에 대한 안전보장의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에 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학생이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등하굣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 건물 등 시설물의 안전에 중대한 결함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에 표기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즉시 안전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7조(휴식과 문화의 권리) ① 학생은 휴식과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문화공간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학생휴게실을 학교규모와 학생 수를 고려하여 확보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원하는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양교육, 초청강연, 공연, 전시 등 문화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과정에 명시된 대로 학생들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충분하게 보장해야 한다.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빈곤가정 학생, 장애가정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학생, 성소수자 학생, 일하는 학생, 임신·출산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 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해 전문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장애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과 평가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인해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⑤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인 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교육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⑦ 교육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때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의 보장기구와 구제절차

제1절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

제29조(학생인권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충청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에 충청남도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학생인권의회 추천 학생

2.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도교육청 학생인권·생활 담당 장학관 또는 장학사

4.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추천 인사

5. 교직원단체 추천 교사

6. 학부모단체 추천 학부모

7. 시민 중에서 학생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임기는 당해 업무 담당 기간으
로 하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의 학생 신분을 상실하면 임기가 종료된
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 및 집행결과에 대한 평

가

2. 학생인권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자문 및 시행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3.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대한 자문 및 조사결과에 관한 의견 표명
4. 학생인권침해의 유형, 판단기준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 제시
5.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다른 기관과의 협력
6. 학생인권에 관련된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하기 위한 권고와 의견 표명
7. 학생인권에 관한 연간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8. 이 조례에서 정한 교육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자문
9. 학생인권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의 활동에 관한 평가
10. 기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3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한다.
2. 임시회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1명이 담당한다.

⑦ 학생인권옹호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⑨ 교육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1조(학교학생인권위원회) 학교의 장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학생인권옹호관)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중에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상당하는 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인권 신장과 관련된 실적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인권 신장과 관련된 실적이 있는 사람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했으며 그 가운데 인권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4. 인권, 성평등, 시민사회운동 등 국제기구나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은 보장되며,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때에는 위원회는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1.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더 이상 학생인권옹호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때
2. 학생인권옹호관이 금고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을 때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대한 「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제33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2. 학생인권에 관한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이를 통한 정책, 지침 등의 연구·개발
3.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직권 조사
4. 학생인권을 침해받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6.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7. 학생인권에 관한 홍보
8. 위원회 및 충청남도학생인권위원회의의 업무 지원
9.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집행
10. 학생인권영향평가서 작성
11. 소수자 학생 등을 위한 진로와 취업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 운영
12. 그 밖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결과를 교육감과 학생인권위원회에 매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제34조(학생인권센터)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으로 도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장은 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에는 상담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④ 센터는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 인권센터와 협력하여 학생인권을 보장·실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학생인권의회)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보장 및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학생인권의회(이하 “학생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학생의회는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천을 통하여 선발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학생의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절차로 교육감이 선발할 수 있다.

③ 학생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감의 학생인권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2.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3.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4. 학생인권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5. 학생인권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 제시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규정에 대한 교육감의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 제시
 7. 그 밖에 학생인권 보장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학생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학생인권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증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학생인권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학생인권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학생인권 보장 및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형성의 기본 방향
2. 제1호의 기본 방향에 따른 실천전략
3. 학생인권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4. 학생인권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연구 및 인권교육 실시 방안
5. 학생인권과 관련한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방안
6. 교육부 및 타 시·도교육청과의 협력 방안
7. 학생인권기본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 방안
8. 그 밖에 학생인권 보장 및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형성에 관한

주요 사항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지역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3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1항 연도별 시행계획 및 제36조제1항의 학생인권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하고 학교의 장을 지도·감독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8조(학생인권영향평가)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입안하거나 법령에 근거한 계획(이하 “법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인권옹호관이 실시한 학생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조례나 정책을 입안할 때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 중인 조례나 법정계획 등이 학생인권

의 보장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 또는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절 학생인권침해의 구제절차 등

제3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제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은 그 신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해학생 이외의 제3자가 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피해학생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때
2. 구제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감사기구의 감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때
3. 구제신청 사유가 뚜렷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일 때
4. 그 밖에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구제신청이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때

제40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피해학생의 동의를 얻어 사건을 조사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향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조사를 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 피해당사자의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학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보호자, 학생과 관계 공무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관을 통해 현장방문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과 조사관의 자료요청, 질의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

제41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을 조사한 후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가해자·관계인·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학생인권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2. 학생인권 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
3. 학생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 경고, 징계, 인권교육 등 적절한 조치
4.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생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의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받아 권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관계인·교육감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가해자나 관계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관계인·교육감이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알려야 한다.

⑦ 학생인권옹호관은 제5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계인, 교육감 등의 조치결과와 통보내용, 학생인권옹호관이 교육감에 대하여 한 권고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제42조(비밀유지의무) ① 학생인권옹호관, 조사관은 구제신청과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② 학생인권위원회와 학교학생인권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인권침해의 구제와 관련한 심의를 하면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

밀을 유지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인권침해의 구제와 관련한 심의를 하면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관련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위원회와 협의회가 공개 가능한 것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인권자료실) 교육감은 센터에 인권자료실을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학생인권교육과 홍보

제44조(학생인권교육)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모든 사람의 학생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학생인권교육을 해야 한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해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교육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해 교육자료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제45조(홍보) ①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의 내용 등 학생인권에 관한 학부모용,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유치원생용 설명서와 교육용 교재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조례 전문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이를 보호자와 학생에게 가정통신문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36조제2항제4호의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인권 홍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제46조(교직원과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①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모든 자격연수에서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2시간 이상 편성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교직원 직무 연수에 학생인권 관련 교육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연 2시간 이상 학생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인권 관련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1회 이상 추진해야 한다.

제47조(충청남도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충청남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충청남도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과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제4장 보 칩

제4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① 학교의 장은 학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최대한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을 위한 표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49조(유치원에 대한 특례) 유치원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9조, 제22조, 제35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칩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1년 안에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② 제29조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 3개월 안에 구성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1. 판단근거

-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이에 따른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담 당 관
예산정책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이광복

☎ 041-635-5207(buget20@korea.kr)

